

이 책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 수련활동의 기본철학과 방법론

◎ 수련활동의 기본철학

지금까지 우리는 청소년을 문제의 시각에서 그 증상을 진단하고 처방하려는 소위 원인(cause) → 결과(effect)의 환원주의적 접근으로 일관해 왔다. 물론 원인 → 결과의 정형화된 시각으로 인간현상을 밝히려는 시도가 전적으로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총체적인 시각이 요청되는 청소년문제에 원인 → 결과의 패러다임을 적용할 경우 그 패러다임에 내재된 오류가 명백히 드러남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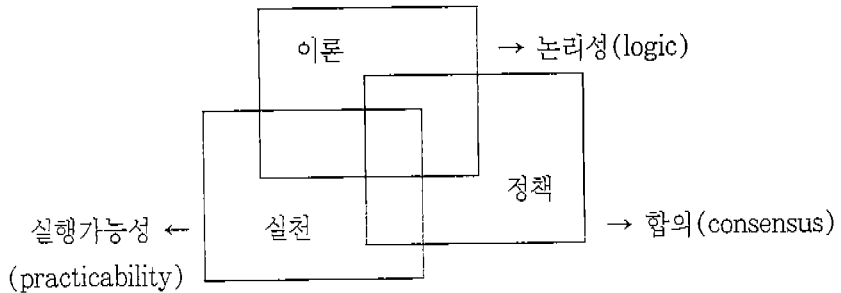
검은색 안경을 쓰면 온세상이 검게 보이는 것과 같이 청소년에 대한 이와 같은 정형화된 시각은 청소년의 삶을 왜곡시킨다. 이 패러다임으로 현상을 들여다보면, 현상을 파악하려는 주체(subject)와 파악되는 대상인 객체(object)간의 엄격한 상호분리를 전제로 인식의 과정이 시작된다. 예컨대, 청소년문제를 인식할 경우에 어른이 주체가 되고 아이들은 탐구의 객체로 분리되어 문제의 원인을 아이들에게서 찾게 되는 잘못을 범하게 된다.

수련활동은 청소년문제가 본질적으로 원인 → 결과의 정형화된 시각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기본가정을 갖는다. 청소년문제는 본질적으로 실천과 정책지향적이어서 이론적 논의를 중시하는 원인 → 결과의 접근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정말 청소년문제는 학자(이론가)들의 전문적 논의로 해결되는 문제라기 보다는 이해 당사자(청소년, 어른, 사회)들의 이해관계가 대립되어 그 조정이 요구되는 정책지향적인 동시에 실제적인 장면에서 행동이 시급히 요구되는 실천지향의 문제이다.

실천적 맥락에서 청소년에 대한 문제인식과 해결을 전제하는 수련활동의 기본철학은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청소년문제는 본질적으로 실천지향이다.

흔히 인간사는 [그림 1]과 같이 이론, 실천, 정책 등 세가지 문제영역으로 구



[그림 1] 세 영역과 해결의 준거

분된다. 대체로 이론의 영역은 해결의 관건이 논리적 타당성에, 실천의 영역은 실행가능성에 그리고 정책영역은 관련 당사자들의 합의에 있다.

청소년문제가 이론적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실천과 정책적 성격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청소년문제가 원인→결과의 단순한 인과관계로는 분석해 낼 수 없는 복잡한 인간행위라는 점에서 뿐 아니라 청소년문제의 대부분이 이해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대립되어 그들의 합의도출과 즉각적인 실천이 해결의 관건이 되는 문제라는 점에서 그렇다.

지금껏 우리 사회는 청소년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국민의 광범위한 합의와 즉각적인 실천으로 해결을 모색치 않고 선-이론적 논의, 후-실천의 잘못을 범해왔다. 실행 가능성과 합의가 청소년 문제해결의 관건이기 때문에 실천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청소년지도자)의 역할이 학자나 전문가의 역할보다 강조되어야 함은 당연한 것이다.

청소년문제는 아이들이 만들어내는 한편의 드라마와 같이 이해해야 한다.

실천의 사태는 이론적인 삶의 세계와는 달리 불확실하고 불안정하며, 독특성과 가치의 갈등을 특징으로 하는 지극히 상황지향적인 장면이다. 어떤 문제상황이 발생하면 그곳에서 즉시 대처해야 하는 일상의 삶의 사태인 것이다. 따라서 어떤 문제에 대처하는 데 유일한 해결책은 찾을 수 없다. 마치 테니스 선수가 자기 코트에 공이 넘어왔을 때 공식에 대입하여 공을 쳐 넘길 수 없는 것 처럼, 우선 넘겨 보내고 나중에 따져 보는 것과 같은 상황지향적인 것이다. 사실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판단·행동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유일한 정답(true)을 찾는 이론

의 문제가 아니라 사려깊은 판단에 따라 행동해야 하는 실천지향의 문제인 것이다. 이런 점에서 청소년문제는 사실(facts)을 만들어 내는 예술적 행위의 삶이라는 표현이 보다 적절할 것 같다.

의미는 상황지향적이며, 상황은 주체와 객체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만들어진다. 바로 청소년문제는 어른과 아이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만들어지는 한편의 드라마처럼 이해해야 하는 것이다. 청소년들의 삶을 이해한다는 것은 이미 시작된 영화를 감상하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 그들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 다음의 질문을 던지는 것이 필요하다. 이 영화의 줄거리는? 이 영화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나? 어떤 부분이 중요하고 어떤 부분은 중요치 않은가? 이런 시각으로 아이들의 삶을 들여다 볼 때 비로소 그들의 인간다운 삶을 만들어 줄 수가 있을 것이다.

청소년문제의 해결은 현장 실천가들의 몫이다.

청소년문제의 본질이 실천과 정책지향이라는 점은 바로 청소년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이 현장 실천가들의 몫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현장에서 청소년들을 지도하는 사람들은 어떤 문제상황에 부딪혔을 때, 전문가나 학자들로부터 정답을 받아 적용할 여유가 없다. 신중한 판단과 사려깊은 행동만이 불확실한 상황에 대처하는 유일한 해결책인 것이다. 실천의 상황에서 현장 지도자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지를 최첨단 기기를 갖춘 최신형 비행기의 추락사건, 즉 악천후에도 불구하고 보다 경제적인 운항을 추구하려는 기장의 판단에 의해 시설이 낙후한 비행장에 몇번의 착륙을 시도하다가 추락한 사건을 상정해 생각해보자.

이 사건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조종사의 기술이나 조종팀의 지휘 그리고 컴퓨터화된 첨단 기기들의 성능보다도 조종사가 상황에 대처하는 판단능력이 항공기 안전에 훨씬 중요한 것임을 보여준다. 조종사의 행위는 매순간마다 그가 내리는 판단에 의해 좌우되며, 또 그의 판단은 그가 처한 상황 때문에 겪는 온갖 개인적·직업적 스트레스나 걱정거리 같은 것들에 직접·간접으로 영향을 받는다. 여기서 상정한 추락사고는 조종사가 직업적으로 받게 되는 압력이 적어도 간접적 요인인 것은 분명하다. 제대로 기기도 갖추지지 않은 비행장에 몇번의 착륙을 시도하다 실패했고 사고가 일어날 징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착륙을 시도했다. 만일 그가 아무런 압력을 받고 있지 않았더라면 왜 그렇게 위험스런 착륙을 시도했겠는가? 아마 첫번째 착륙 시도에서 실패한 뒤 기상 등을 고려하여 다른 공항으로 회항했어야 했을 것이다.

악천후에도 목적지에 착륙해야 한다는 압력은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은 이를 항공사가 요구하는 「경제운항」의 압력이라고 생각한다. 조종사는 이 경우에 「이윤을 위한 비행」과 「안전을 위한 비행」의 갈등적인 사태에 처하게 된다. 안전을 위해 조종사는 무리한 비행을 하지 말아야 한다. 조종사의 판단과 상반되는 것을 항공사가 강하게 요구하더라도 최후의 상황판단과 행동의 수행은 실천의 사태에서 사려깊게 행동할 것을 요구받고 있는 조종사의 몫인 것이다.

청소년문제에 대처하는 현장지도자들에게도 그 실천자로서의 역할은 불확실한 상황에 대처하는 조종사의 역할과 마찬가지로 사려깊은 판단과 행동이 요구되는 것이다. 청소년 지도의 문제는 어떤 정형화된 정답이 있는 문제가 아닌 것이다. 이론가나 학자들이 실천의 현장지도자들에게 그 상황에 대한 유일한 해결방안을 제공해 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현장지도자들 또한 그것을 기다릴 여유가 없는 시급한 실천의 문제인 것이다. 실천의 최전선에 있는 청소년지도자를 제외하고서 실천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해도 지나친 과장은 아닐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청소년 지도자들은 수련활동의 의미와 그 적용에 관한 기본틀(안경)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청소년 지도자들은 이 틀을 바탕으로 보다 많은 창의성과 융통성을 발휘해야 한다. 실천의 장면에서 수련활동을 하는 모든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없기 때문에 수련활동을 자신이 처해있는 상황에 적절하게 변형하고 수정하는 것은 당연히 현장지도자들의 일이 되어야만 한다. 청소년들의 문제를 다루는 일은 하나의 정답을 발견해 내는 과학적인 활동이라기 보다는 그들에게 의미있는 삶을 안내해 주거나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예술과도 같은 일이기 때문이다.

◎ 수련활동의 방법론

흔히 수련활동을 지도하는 데에는 실습, 답사, 견학이나 봉사활동 등과 같은 구체적인 경험적 방법으로부터 강연이나 강좌 또는 토론과 같이 추상적이고 전달적인 방법까지 다양한 지도기법이 사용된다.

수련활동지도를 위해서 전성연(1983)이 제시한 청소년 교육기법의 분류모형 [그림 2]은 지도하는 활동의 목적과 여러 상황에 따라 다양한 기법을 활용할 것을 제안해 준다.

이 모형에 의하면, 「전달-수용적 방법」은 흔히 지적인 학습을 요하는 경우나

많은 사람들에게 동시에 정보를 전달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효과적인 방법이다. 청소년 수련활동에서 보다 많이 강조되는 「참여－탐구적 방법」은 상호작용의 역동적 맥락이 중시되며 「전달－수용적 방법」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강점을 갖고 있다. 그리고 구체적이고 정의적인 특징을 갖는 「수련－체득적 방법」은 일종의 생활훈련식 방법으로 집단활동을 통해서 인간관계 기술, 리더쉽과 멤버쉽, 가치와 창조의 순종, 자치능력의 함양 등 사회적 정의적 능력확대에 중요한 것으로 제시된다.

그러나 이 모형의 사용은 한가지 기법에만 의존하지 말고 여러 방법을 상황에 적합하게 복합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점이 중요하다.

추상적 (지 적) ←————→ 구체적 (정의적)		
전달 — 수용적	참여 — 탐구적	수련 — 체득적
• 독서 • 강연 • 강의 • 시청각매체 이용	• 토의 · 대화 • 토론 · 세미나 • 회의 • 버즈분단세미나 • 역할연기 • 실험 · 조사 • 표현활동	• 실습 • 답사 · 견학 • 야영수련회 • 봉사활동 • 행군 · 행진 • 훈련

[그림 2] 청소년 교육기법의 분류모형

상호작용의 인식론과 방법을 특히 강조하면서 본 프로그램은 수련활동의 일반적인 지도기법으로 다음의 10개의 형태를 제시한다.

- 강의
- 강연식 공개토론
- 시청각
- 게시 및 전시
- 토론
- 분임토의
- 역할연기

- 현지답사
- 워크숍
- 구안법

위 10개 지도기법에 대해 각각의 특징과 준비 그리고 진행절차를 살펴보자.

○ 강의(Lecture)

○ 특징 :

강의는 짧은 시간내에 많은 내용을 많은 사람에게 동시에 전달할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참여자들이 수동적으로 강의에 참여하는 약점이 있다. 강사는 참여자들이 강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간결한 언어 표현을 사용하고, 말의 속도와 고저를 적절히 구사하여 참여자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관심과 흥미를 갖도록 유도해야 한다. 또한 강사는 강의 내용을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정리해서 참여자들에게 전달해야 한다.

○ 사전준비 :

- 지도자는 주제를 선정하고 주제에 알맞는 강사를 선정한다.
- 강사에게 집단의 욕구와 흥미, 시간제한 등에 대해 설명한다.

○ 진행절차 :

- 강사는 주제를 소개하면서 참여자들의 관심을 모은다.
- 준비된 내용의 진행순서에 따라 정해진 시간동안 주제에 대해 이야기한다.
- 강의가 끝난 후 질의 응답 시간을 갖는다.
- 강사는 중요점을 강조하고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면서 강의를 마무리 짓는다.

○ 강연식 공개토론(Seminar)

○ 특징 :

주제나 의제에 대해 여러가지 견해를 가진 몇몇 연사들이 자기의 의견이나 준비한 내용을 발표한다. 청중은 발표자들의 발표를 듣고 난 다음 질문을 하고, 발표자는 그것에 답하는 식으로 진행시키며 토의에 청중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한다. 발표자 중에서 좌장을 선정한다. 좌장은 주제를 제시하고 강사를 소개하며 논의를 명확히 해주고 청중들의 질문을 받아 토론을 주재한다.

○ 사전준비 :

- 특정한 주제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4~5명의 발표자를 선정한다.
- 발표자 중에서 사회자를 선출한다.

○ 진행절차 :

- 좌장은 참가자들에게 강연의 진행절차를 설명한다.
- 좌장은 논의 주제를 설명하고 발표자를 소개한다.
- 발표자들은 준비된 내용을 발표하고 좌장은 발표자들의 내용이 적절히 연결되도록 사이사이 발언을 한다.
- 발표가 끝나면 좌장은 청중들로부터 질문을 받는다. 질의와 응답 이후에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 좌장이 논의된 주제의 핵심과 결론을 요약한다.

○ 시청각(Audio-Visual)

○ 특징 :

시청각교육은 눈이나 귀를 통해 전달되는 시청각자료(VTR, 슬라이드, 차트, 모형 등)를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참여자들의 흥미와 관심을 이끌어 낼 수 있다. 참여자들은 언어라는 추상적 전달매체 이외에 구체적 경험에 의해 제공되는 정보를 접함으로써 내용을 더 쉽게 이해하게 된다. 자료는 정보전달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사용해야 한다. 단순하게 참여자의 흥미를 유발한다고 관련없는 자료를 사용하는 것은 오히려 활동내용을 이해하는데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

○ 사전준비 :

- 필요한 정보를 선정한다.
- 참고자료를 검토하여 적절한 자료를 선택한다.
 - 청 각 : 녹음테이프, 음반 등
 - 시 각 : 흑판, 차트, 도표, 실물 및 모형, 환등기 등
 - 시청각 : TV, VTR, 슬라이드 등
- 발표자를 미리 선정한다.
- 장비를 설치하고 자료를 미리 검토한다.

○ 진행절차 :

- 지도자는 주제와 발표자를 소개한다.
- 발표자는 시청각자료를 소개하고, 주의해서 볼 점을 지적한다.

- 발표가 끝나면 질의 응답시간을 갖는다.
- 지도자는 논의 주제를 요약하고 모임을 마무리 짓는다.

○ 게시 및 전시(Demonstration)

○ 특징 :

게시 및 전시는 참여자들의 학습욕구를 유발시키는 방법으로 정보를 전달하고 내용을 설명하며 요약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전시장소는 참여자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곳으로 선정하고, 전시내용은 참여자들의 관심을 끌 수 있고 이후 활동과 관련되는 것으로 한다.

○ 사전준비 :

- 전시의 목적과 내용을 결정한다.
- 시각적으로 잘 전달될 수 있는 실물이나 모형·그림 등의 자료를 구한다.

○ 진행절차 :

- 전시의 목적에 따라 자료를 전시(혹은 게시)한다.
- 참여자들에게 전시의 목적과 전시물을 볼 때 유의해야 할 점 등을 알린 후 전시물을 관람하도록 한다.
- 관람후에는 참여자들이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고, 전시나 게시에 대해 평가하도록 한다.

○ 토론(Debate)

○ 특징 :

토론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집단이 해결방법을 체계적으로 모색해 가는 것이다. 참여자들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발표하고 타인의 의견을 주의깊게 들으면서 협동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가도록 한다. 토론에서는 참여자가 모두 참여하여 여러가지 생각과 정보에 대해 적극적으로 사고하고 새로운 방법을 개발하는 태도를 익히게 할 수 있지만, 참여자들이 주제에 대한 사전경험과 지식이 있어야하고, 너무 인원이 많으면 원활하게 토론이 진행될 수 없고 주제에서 자주 이탈되는 단점이 있다.

○ 사전준비 :

- 주제를 참여자들에게 알려주고 자료를 제공한다.
- 주제 발표할 사람을 선정한다.

- 의장을 선출한다.

○ 진행절차 :

- 의장은 참여자들의 관심을 환기시키고 토의목적과 진행방법 등에 관해 간단히 설명하면서 모임을 시작한다.
- 의제를 발표하게 한다.
- 주제에 관하여 참여자 전원이 토의에 참가하도록 유도한다.
- 한사람이 너무 오래 이야기하거나, 반대로 이야기하지 않는 방관자나 소의자가 없도록 참여자들을 통제한다.
- 토의가 의제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한다.
- 의견이나 제안을 정리하면서 결론을 유도한다.
- 문제의 처리방법, 실천방법들이 제시되었다면 이후의 실천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실천의욕을 고취시킨다.
- 의장은 토론의 내용을 요약하고 중요점을 강조하면서 모임을 종결한다.

○ 분임토의(Group Discussion)

○ 특징 :

소규모의 공개토론으로 모든 구성원이 토론에 참여하도록 하는 데 효과적인 방법이다. 한 집단을 3~8명의 소집단을 편성하여 각 집단별로 과제를 맡겨 토론하게 하고 그 결과를 전체집단에 발표하게 하는 방법이다. 분임토의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주제를 완전히 살펴볼 수는 없지만 짧은시간 동안 모든 참여자들이 토론에 참가하여 많은 의견을 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분임토의는 장난으로 흐르기 쉬우며 토의 내용이 주제에서 벗어나기 쉽고 넉넉한 토의장소가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다.

○ 사전준비 :

- 다른 활동방법의 일부분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지도자는 논의될 주제를 명확히 하고 질문을 준비한다.

○ 진행절차 :

- 토의 목적과 분임토의에 대해 참가자들에게 설명하며, 분임토의가 시작되면 분임토의 집단으로 모이도록 한다.
- 각 분임집단은 사회자와 서기를 선출하도록 한다.
- 토론의 주제를 소개하고 참여자들이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한다.

- 각 분임의 서기는 토론의 내용을 기록한다.
- 분임의 수가 적으면 모든 분임이 전체 앞에서 토의 내용을 간략히 보고하도록 하고, 그 수가 많으면 원하는 분임만 발표하도록 한다.
- 지도자는 전체 내용을 요약하면서 모임을 마무리 짓는다.

○ 역할연기(Role Play)

○ 특징 :

역할연기 및 극화는 집단구성원들 자신이 설정된 구체적 상황이나 희곡대본에 따라 정해진 역할을 실연해 보는 것이다. 연기자는 자신이 맡은 배역이나 역할에 따라 행동하고 반응함으로써 그 배역이나 역할의 의무나 느낌을 알 수 있게 된다. 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보다 자유롭게 감정과 태도를 표현할 수 있게 되어 개방적이 되고 참여를 즐기게 된다. 극화는 기존의 희곡대본을 사용하거나 참여자들이 짠 촌극에 따라 배역을 맡고 연기를 하지만, 역할 연기는 특정 상황이 기술되면 그 상황에 맞게 연기자들이 연기를 해낸다.

○ 사전준비 :

- 문제에 관련된 구체적 상황을 설정하거나, 희곡 대본을 선정한다.
- (극화일 경우) 배역을 선정하고 대본을 나눠주어 대본에 따라 연습을 하도록 한다.

○ 진행절차 :

- 지도자는 상황과 인물에 대해 간단히 묘사한다.
- (역할연기일 경우)지도자는 설정된 상황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고 연기자를 선출한 다음 역할과 대사를 스스로 구성해 보도록 한다.
- 극을 상연한다.
- 참여자들은 극을 본 다음 느낀 점들을 이야기하고, 주제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갖는다.
- 지도자는 토론의 내용을 정리하고 연기자들에게 감사를 표한다.

○ 관찰·현지답사(Field Trip)

○ 특징 :

관찰과 현지답사는 목표는 서로 다르지만 활동진행 절차는 유사하다. 이러한

활동은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구하므로 참여자들의 참여의욕을 높여주어야 성공적으로 활동을 이끌 수 있다. 관찰과 현지답사 전에 목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고 방문 후에는 경험을 정리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마련해야 한다.

○ 사전준비 :

- 시간과 장소를 정한다.
- 관찰대상 기관으로부터 방문 허가를 받는다.
- 관찰대상 기관에서 요구하는 절차를 숙지한다.
- 관찰해야 할 점과 배경지식에 대해 알아둔다.

○ 진행절차 :

- 방문 목표에 대해 논의하고, 지도자는 관찰대상 기관에서 요구하는 절차나 주의점 등을 참여자들에게 알린다.
- 관찰이나 현지답사를 실시한다.
- 방문경험을 논의하고 방문을 마친다.

○ 워크샵(Workshop)

○ 특징 :

워크샵은 프로그램이나 특정주제(예 : 신문만들기)의 과정을 설명하기에 유용한 방법으로, 참여자들이 직접 활동을 해보도록 하기 때문에 참여자들은 과정을 보다 쉽게 이해하게 된다. 참여자들은 하위집단별로 모여 전과정의 일부분을 맡아 수행한다. 활동이 끝나면 하위집단별로 각 과정을 설명하도록 하여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도록 한다. 워크샵은 집단이 작으므로 상호작용이 활발히 일어나고 자유로운 형태의 활동이므로 참여자들의 긴장이나 불안을 감소시킬 수 있다.

○ 사전준비 :

- 참여자들이 참여할 다양한 주제 영역을 선택한다. 참여자들이 여러과정에 참여하도록 할 경우에는 시간제한을 둔다.
- 교재와 준비물을 분배한다.
- 완성된 작품을 예시로 보여준다.

○ 진행절차 :

- 참여자들이 원하는 워크샵 내용이나 과정을 선택하도록 한다.
- 선택한 워크샵에 참여하도록 하고 시간이 허락되면 여러 워크샵에 참여해

보도록 한다. 여러 워크샷에 참여하도록 할 경우에는 시간제한을 두고 신호에 따라 다음 워크샷으로 옮겨가도록 한다.

- 워크샷이 끝나면 전체가 모여서 경험을 서로 이야기해 보도록 한다.

○ 구안법(Project Method)

○ 특징 :

참여자들이 자발적으로 과제를 선택, 계획, 추진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참여자들은 이러한 경험을 통해 스스로 과제 내용을 익히게 된다. 일종의 실습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일반적인 실습과 다른 점은 실습기간 동안 할 일을 참여자들이 자치적으로 선택하고 해결해 나간다는 점이다. 따라서 구안법에서 수행되는 과제는 참여자들이 관심을 갖고 능동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 사전준비 :

- 과제를 선택한다. 과제의 선택은 지도자가 임의로 선택하거나, 참여자들이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하거나, 지도자가 몇가지 과제로 목록을 제시하고 참여자들이 그 중에서 선택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

○ 진행절차 :

- 과제 수행계획을 세운다. 계획을 수립할 때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 과제의 개요, 세부일정
 - 과제에 필요한 내용, 설비
 - 과제 수행 순서
 - 과제 진척도 기록방법
 - 평가방법과 평가시기
- 과제를 수행한다.
- 과제를 평가한다.

위에서 제시한 10개의 수련활동 방법은 지극히 일반적인 것이다. 수련활동 지도자는 이 방법들을 상황에 적절하게 변형시킬 수 있어야 한다. 앞서 지적한 것처럼 청소년 문제는 원인→결과의 환원주의적 시각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복잡한 인간행위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단일한 정형을 기대해서는 안된다. 인간(청소년)은 목적과 감정을 가지고 있으며 계획을 구상하고 문화를 만들며, 가치를 가지며 인간의 행위는 여러가지 계획, 가치, 목적들에 의해 상호 영향을 주고

받는다. 한마디로 인간은 자신에게 의미로운 세계 속에서 살고 있으며 그 행동이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인간 이외의 대상들과 구분이 된다. 인간에 대한 이러한 특징은 인간을 부분의 합으로써가 아니라 분리될 수 없는 통합적인 전체로 이해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실천지향의 청소년문제는 사실(facts)을 발견해 내는 기술적이고 과학적인 사고가 지배하는 삶이 아니라 의미(meaning)를 만들어 내는 예술적 행위의 삶이라는 표현이 보다 적절하다. 의미는 상황지향이며 상황은 주체와 객체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만들어진다. 바로 청소년문제는 어른과 아이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만들어지는 한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이해되어야 한다. 수련활동 속의 청소년 지도자와 청소년들의 관계 역시 마찬가지인 것이다.

□ 프로그램의 구성

이 책은 청소년들이 흥미를 가지고 바른 시민생활활동을 할 수 있는 내용으로 꾸며져 있다.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 되어가는 오늘날의 청소년들에게 더불어 살기 위한 공동체 의식을 일깨워주고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단계적인 활동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1. 바른 시민생활활동이란?
2. 바른 시민생활 인식하기
3. 바른 시민생활 이해하기
4. 바른 시민생활 실행하기

‘바른 시민생활활동이란’은 활동과 병행하여 바른 시민으로서의 자세 및 이를 위한 활동의 필요성에 대한 이론적인 배경을 담고 있으며, 열거한 세가지의 단계적인 활동프로그램의 과정을 통해 청소년들은 보다 많은 관심과 흥미를 지니고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각 단계는 하나 하나가 독립적으로 짜여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어느 하나의 프로그램만 선택하여 실행하여도 바른 시민생활 활동에 대한 이해와 체험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져 있다. 현장에서 충분히 응용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이 책이 언제 어디에서나 바른 시민생활의 효과적인 지도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창의적인 방법으로 사용되는 것이 본 개발진의 바람이다.

청소년 바른 시민생활활동은 독립적이면서 상호연관이 있는 순차적으로 심화되는 세개의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이 세개의 단계들은 각각 네가지의 단위활동을 포함하고 있으며, 각 단위활동은 ① 개요, ② 활동목표, ③ 활동과정, ④ 활동내용, ⑤ 유의사항, ⑥ 참고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 ▷ 개요는 각 활동에 대한 일반적인 소개와 내용을 설명한다.
- ▷ 활동목표는 각 활동이 추구하는 목적과 필요성을 담고 있다.
- ▷ 활동과정은 각 과정의 개관과 주요 활동내용을 그림과 더불어 요약한 것이다.
- ▷ 활동내용은 각 과정에서 실시하게 되는 구체적인 세부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각 과정은 세가지의 세부활동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세부활동들은 각 활동의 과정과 지도요령, 활동방법, 예시로 구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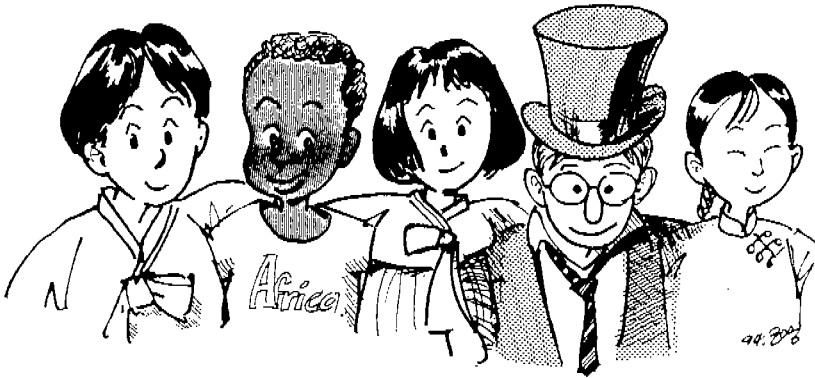
- ▷ 유의사항은 각 과정의 바람직한 진행을 위한 주의사항을 제시한 내용이다.
- ▷ 참고에는 각 과정의 진행에 필요한 전문적이고 시사적인 내용과 심화된 참고자료를 수록하였다.

이러한 바른 시민생활활동의 전체구성은 다음의 표와 같다.

바른 시민생활활동의 프로그램 구성

단계	단위활동	활동내용
인식하기	시민－민주사회의 주인 색을 알면 민주주의가 보인다. 바른 시민이 되는 길 세계의 민주주의	바른 시민생활의 실천적 당위성을 깨닫게 하는 과정이다. 민주주의의 개념, 시민성, 바른 시민의 가치 등을 바르게 인식함으로써 바른 시민생활의 기초를 다진다.
이해하기	지켜보자! 기초질서 그래 결심했어 권리와 의무 민주주의 현장으로	인식을 바탕으로 주변에서 접하게 되는 무질서와 비민주적 시민행위에 대한 판단과정이다. 기초질서에서부터 의회활동에 걸친 광범위한 주제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여 바른시민생활의 자세를 내면화한다.
실행하기	질서는 내가 먼저 나의 결정 참여하는 민주시민 우리는 세계시민	바른 시민생활은 실행으로써 완성이 된다. 일상생활뿐만이 아니라 사회 및 국제적 수준에서도 청소년 자신이 지켜야 할 공동체 행위규범을 실행하고 더 나아가 사회적·정치적 참여와 비판의 적극적 자세를 함양하여 수준높은 민주시민이 되도록 한다.

바른 시민생활활동이란?



시민성의 의미와 바른 시민의 자질
바른 시민생활의 두 측면

시민성의 의미와 바른 시민의 자질

시민성의 의미

고대인들의 삶은 폴리스(polis)를 기초로 해서 이루어 졌다. 모든 시민은 폴리스라는 전체(polis, community)의 부분(citizen)으로 존재했던 것이다. 오늘날 시민성 또는 시민 자질로 번역되고 있는 ‘citizenship’의 어원인 ‘civitas’에도 이러한 의미가 잘 나타나 있다. 라틴어로서 civitas는 ‘국가나 공동체를 구성하며 이를 위해 기능하는 개인이나 제도의 역할’이라는 뜻으로 사용되었다. 다시말해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녀야할 책임, 공동목적, 공동체 의식 등의 의미를 담고 있었던 것이다(Butts, 1991 : 19).

이러한 의미는 ‘citizenship’이라는 개념에서도 여전히 찾아볼 수 있다. 시민이라는 citizen과 자질, 조건이라는 ship이 합성되어 만들어진만큼 그 말 속에는 다름 아닌 ‘시민’으로서 요구되는 자질이라는 뜻이 담겨 있는 것이다. 개인으로서 요구되는 자질이 아니라 특정한 공동체의 구성원 즉, 시민이라는 지위에서 요구되는 자질을 지칭하는 개념인 셈이다. 시민성이라는 말이 이러한 특성을 지니고 있음은, citizenship에 friendship(우정)과 membership(회원자격)의 의미가 들어 있다는 점에서도 읽을 수 있다(Proctor, 1988 : 164-166). Friendship이 친구 관계에서 요구되는 자질이라면 membership은 구성원으로서 요구되는 자질로서 양자는 모두 관계 속에서 요구되는 자질이라는 공통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시민성은 독립된 개인을 전제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relation)’로 묶여진 사회인을 전제로 해서 그 근거를 구한다고 말할 수 있다(Proctor, 1988 : 16-19). 즉, 시민성의 구체적인 모습은 비록 시대와 장소에 따라 서로 다르게 그려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성은 특정한 시대와 특정한 사회에서 형성된 사회적 관계에 근거해서 요청된 자질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달리 말해 시민성은 곧 ‘사회적 관계’에서 요구되는 행위의 표준 즉, ‘사회적 관계’의 맥락에 비추어 요구되는 행동방식인 셈이다.

나와 타인 관계, 타인과 타인관계, 나와 공동체 관계, 타인과 공동체 관계 등 삶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체의 ‘관계’에서 요구되는 행위의 표준이 곧 시민성이 되는 것이다.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가족관계에서 요구되는 행위의 표준이 시민성이며, 동료관계에서 요구되는, 교육 관계에서 요구되는 행위의 표준이 곧 시민성이며, 그리고 지역주민 관계에서 요구되는 행위의 표준이 시민성인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시민성은 ‘관계’라는 요소와 ‘표준’ 그리고 ‘행위’라는 세 요소가 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관계’라는 요소를 놓고 본다면, 시민성은 로빈슨 크루소나 수도자와 같은 사회와 분리된 독립적인 개인을 상정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로빈슨 크루소나 수도자는 타인에게 요구할 수 있거나 또는 타인으로 부터 요구당할 수 있는 일체의 행동 방식에서 독립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우정을 베풀 친구가 없으며,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할 대상이 없으며, 친절해야 할 이웃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행위 속에는 사회적으로 의미를 부여할 만한 어떠한 여지도 이유도 없는 것이다. 사회적 관계가 배제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시민성이 개입될 소지가 시원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둘째, 시민성의 의미에 ‘표준’이라는 요소가 결합되어 있음에는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표준의 개념 속에는 지향해야 할 목표내지는 대상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그리고 목표나 대상이라는 의미 속에는 일상의 용례에서처럼 원대함이나 지고함 또는 달성해야 할 정점 등과 같은 수직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기도 하지만, 그런 것과 아닌 것, 속한 것과 속하지 않은 것 등과 같은 경계 내지는 기준의 의미도 함께 들어 있다.

표준에 담겨 있는 이러한 의미는 언어에 있어서의 문법이나 구문 내지는 도로 교통에서의 교통 규칙의 의미에 비유될 수 있다. 대화를 할 때 화자와 청자는 나름대로 자신과 상대가 같은 문법과 구문체계를 사용하고 있음을 가정한다. 적어도 의사소통이 가능하려면 참여자 모두는 문법과 구문을 공유해야 하며, 새롭게 의사 소통에 참여하려는 사람은 이미 사용되고 있는 문법과 구문을 자신이 배워야 할 언어 속에 담겨 있는 표준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고 표준은 자신이 새롭게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일차적으로 자신이 따르고 받아들여야 하는 목표와 대상이 된다.

도로를 주행하는 운전자를 생각해 보자. 운전자는 자신의 판단에 따라 교차로를 건너가는 것이 아니라 신호를 따라 교차로를 건너간다. 그리고 그 운전자 자신은 자신만이 신호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운전자들도 신호를 따를 것이라

는 믿음을 갖고 있다. 심지어 신호를 따르지 않고 자신의 판단만을 따르는 운전 자라 할지라도 다른 운전자들은 신호를 따를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 신호를 따르는 운전자, 신호를 따르는 다른 운전자들 그리고 신호를 따르지 않는 운전자 까지도 신호는 모든 운전자가 따라야 할 표준임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만약 신호와 같은 표준이 없다고 가정해 보자. 다른 운전자가 어떻게 운전할지, 자신 은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할지를 예측하고 판단 할 수 있는 그 어떤 기준도 없게 되는 것이다.

시민성의 요소로서 표준은 나자신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따라야 한다는 의 미를 내포하는 것이며, 나아가 그러한 표준을 통해서 비로소 사람들의 행위를 이 해하고 평가할 수 있게 된다.

시민성을 구성하는 세 요소 중, 끝으로 ‘행위’를 들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말 하는 행위는 두가지 의미를 지닌다. 첫째, 행위는 의식적인 행동 뿐만 아니라 말 과 표정, 글, 침묵 등을 모두 포함한다. 예컨대, ‘예’라는 답변이 기대되는 상황 에서의 침묵은 부정적이며 소극적인 행위로 간주되는 것이다. 둘째, 행위는 행위 자체로 독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행위와 관련된 상황 즉, 맥락 속에서의 행위 로 인정된다. 예컨대, 돈을 주고 받는 사람들이 있을 때 돈을 주는 행위가 주운 돈을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인지, 부채를 갚는 것인지, 뇌물인지 아니면 고마움의 표시인지를 알아낼 수 있어야 이해와 평가가 가능해진다. 한 예를 더 들어보자. 어떤 사람이 단식을 할 경우 우리는 단식 그 자체만을 분리시켜 단식의 의미를 시민성에 비추어 문제 삼지는 않는다. 설령 그 사람이 불의에 항거하기 위한 수 단으로 단식을 한다하더라도, 이 경우에 시민성은 불의에 항거하는 정신이지 단 식 그 자체가 시민성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불의에 항거하기 위한 수단 으로 단식이 얼마나 적절한지를 문제삼을 수 있는 여지는 있다. 다만, 단식 그 자체는 주관적이며 개인적인 행동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시민으로서 기대되 는 시민성에 비추어 평가될 여지가 없다는 뜻이다. 똑같은 행위라 할지라도 행위 와 관련된 맥락에 비추어 이해가 가능해질 때 비로소 시민성의 표준과 관련지어 평가가 가능해 지는 것이다.

시민성에 관한 관점

형식으로 보는 관점

시민성을 형식으로 보는 관점은, 특정한 가치나 덕목 등을 시민성으로 표준화해서 행위 주체에게 전달(transmission)할 수 없다는 데 공통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다양성과 이질성으로 특징지을 수 있는 현대인의 삶의 방식을 전체로 삼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러한 연유로 해서 모든 판단과 선택의 권위는 개인으로부터 비롯되어야 한다는 대안을 내세우게 된다(MacIntyre, 1984 : 201-202).

판단과 선택은 인지적 활동 영역에 속한다. 특정한 상황에서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게 되는 성향 또는 품성과는 달리,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주관적인 숙고와 추론을 토대로 결정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이 곧 시민성이 된다. 이러한 지적 능력에 의존해서 어떠한 판단이 옳은 판단이며 어떠한 선택이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인가가 결정된다. 즉, 시민성은 지적 능력이라는 형식이며, 이러한 형식 속에 담긴 내용 — 이렇게 행동하거나 또는 저렇게 행동하거나 하는 등의 구체적 행동 — 은 처음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며 행위 주체의 지적 능력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입장은 행위주체의 주관적 판단에 의한 선택을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느냐라는 비판에 직면하게 되기도 하는데, 이 입장은 이러한 비판에 대한 답변을 합리성에서 구한다. 즉, 판단의 옳음과 선택의 정당화를 합리성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형식에서 시민성을 추구하는 관점을 선택의 합리성을 추구하는 관점으로 부를 수 있다(Schutz, 1975 : 79).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선택의 합리성을 문제삼아 선택을 합리적으로 한다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는 물음을 제기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선택의 합리성을 중시하는 관점은, 판단 주체가 따라야 할 절차나 원리를 제시한 뒤 그러한 절차나 원리를 충족하고 있는 선택을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답변한다(Chazen, 1985 : 4). 예컨대, 선택 — 자유로운 상황에서 다양한 대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친 선택, 소중화 — 선택을 공적으로 언명하고 소중하게 여김, 그리고 행동 — 실행으로 옮김이라는 절차를 제시하는 Raths(1977)나, 보편성(universality)과 규정성(prescriptiveness) 그리고 공정성(impartiality)을 판단 기준의 원리로 내세우는 Kohlberg(1981 : 170-172), 그리고 무지의 베일(a veil of ignorance)

을 원초적 입장으로 전제한 뒤 평등한 자유(equal basic liberties), 최소 수혜자의 최대이익(the greatest benefit of the least advantaged), 기회의 균등(a equality of opportunity)을 합리적 행위자가 따라야 할 원리로 제시하는 Rawls (1971 : 303) 등이 바로 이러한 입장에 있는 것으로 분류될 수 있다.

이렇듯 선택의 합리성을 추구하는 입장은 좋은 행동과 나쁜 행동 즉, 행위를 구별해내는 데 관심을 갖기보다는 옳은(right) 판단과 그릇된(wrong) 판단 즉, 판단을 구별해내는 데 주된 관심을 둔다. 예컨대, ‘정직은 좋은 행동이고 거짓은 나쁜 행동이다’라는 진술을 회피하는 대신, ‘다른 사람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는 보편화 가능성(universalizability) 조건이 충족될 수 있는 입장을 선택하라’라는 진술을 요청하게 되는 것이다.

내용으로 보는 관점

Warnock(1989 : 471)은 도덕성에 대한 관점을 심리적인 반영(psychological penumbra)으로 보는 관점, 개인에게 실제적으로 중요한 것(actual importance in the individual)으로 보는 관점, 보편화 가능성(universalisability)으로 보는 관점, 그리고 일반적 주제(general topic)로 보는 관점으로 분류한다. 그리고 앞의 세 관점을 도덕 원리를 추구하는 형식 관점으로, 마지막 네번째 관점을 내용 관점으로 재 분류한 다음, 도덕성은 내용에 기초해야 함을 주장한다. Chazen (1985 : 4-5) 역시 도덕성을 내용으로 보는 관점과 형식으로 보는 관점으로 대별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도덕적 덕목이나 규범 등을 도덕성으로 보는 관점을 전자로 분류한다.

물론 내용으로서의 도덕성에 담겨있는 구체적 의미는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 회랍 사회에서는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데 요구되는 자질에서 덕을 추구했으며, Aristotle은 종(種)으로서의 인간에게 부여된 목적(the telos of man)을 지향하는 데 내재된 수단에서, Franklin은 공리(utility or social well-being)에서, MacIntyre는 활동 양식에 내재된 목적에서 각각 덕목 내지는 도덕성을 추구했다(MacIntyre, 1984 : 190-203).

이와 같이 내용에서 도덕성을 추구하는 관점들이 그 내용의 구체와 의미를 차별화하고 있기는 하지만, 도덕성을 개인에서 비롯되는 것 — 예를 들어 행위 주체의 합리적인 판단과 선택에 도덕성을 정초시키는 형식 관점 — 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제시되는 표준으로서의 도덕성을 전제 한 뒤 그러한 도덕성을 내면화하여 개인이 지녀야 할 품성으로 본다는 점에서 공통된 뿌리를 두고 있다. ‘판단’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화된 품성에서 우러나오는 ‘행위’에 관심이 있는 것이다. 한 개인의 품성은 삶의 시작과 더불어 시작되고 삶과 더불어 존재하다가 삶이 끝나는 곳에서 함께 소멸하지만, 한 개인의 원리는 삶의 시작과 더불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보편성과 규정성 그리고 공정성을 판단과 추론에 적용할 수 있는 지적인 능력이 갖추어질 때 비로소 시작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품성(행위)이 판단에 우선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덕목과 같은 내용으로서의 도덕은 한 개인의 삶이 시작되기 이전에 이미 역사와 사회 속에 존재해 있으며, 개인의 삶은 그러한 역사와 사회가 지향하는 표준을 쫓아 의미 있는 시작과 끝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시민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사람이 아니라, 삶의 표준을 물려받고 물려주는 사람인 것이다. 물론 물려받은 표준과 물려주는 표준이 같지 않을 수도 있다. 예컨대, 물려받은 표준이 사회의 변화에 적합하지 않거나 또는 비합리적이어서 그것이 더이상 표준으로 작용하지 못하게 될 때, 시민은 대항할 수 있는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 그 표준에 자신들의 삶을 종속시키고 그리고 그 표준을 후대에게 물려준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서조차 시민으로서의 삶의 시작은 전대에서 물려받은 표준과 함께 시작되며 - 비록 그 표준이 변할 수 있다 하더라도 - 후대의 시민 역시 같은 과정을 따르게 된다.

이렇듯 삶의 방식으로서 요구되는 행위의 표준에서 시민성을 구하는 입장은 판단에 앞서 따르고 내면화해야 할 구체적 덕목에서 시민성을 구하는 입장이며, 다만 시민이 따라야 할 행위의 표준으로서의 시민성이 새롭게 변화해 갈 수 있는 여지가 있음을 받아들이는 한편, 그 일을 판단과 선택의 합리성에 맡길 수 있음을 인정한다.

시민교육의 목표로서 시민자질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시민성은 관점에 따라 형식으로 볼 수 있고 내용으로도 볼 수 있다. 이 말은 시민성을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 시민성이 그렇게 그려질 수 있다는 것이지, 형식으로 보는 관점만이 옳고 내용으로 보는 관점이 틀리다는 또는 그 역으로 내용으로 보는 관점만이 옳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Toulmin이 이를 잘 설명하고 있다. Toulmin(1989 : 86-87)은 ‘도덕 추론의 논리(the logic of moral reasoning)’라는 논문을 통해서, 각각의 사회적 실행(social practices)과 도덕성을 관련지어 설명하는 방식을 둘로 나누어 제시한다. 하나는 주어진 특별한 사회적 실행에 담겨 있는 도덕률(moral code)을 규범적 기준으로 삼아 그 사회가 지향해야 할 도덕성을 설명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특정한 사회의 도덕률에서부터 벗어나 그 도덕률 자체를 문제 삼아 설명하는 것이다.

Toulmin이 말하는 도덕률이 MacIntyre 등에서의 덕목과 같은 것은 아니지만, 전자는 도덕률이 사회적 실행에 가담하고 있는 구성에게 규범적 표준이 되는 경우이며, 후자는 도덕률이 규범적 표준으로 작용하지 못하는 그래서 보편적 원리를 쫓아 합리성을 추구하는 경우로 본다는 점에서 MacIntyre와 견해를 함께 한다(MacIntyre, 1984 : 257-259). Toulmin이나 MacIntyre는 다같이 규범적 표준이 작용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별하고 있으며, 사회적 실행에 관여하는 구성원에게 작용하는 틀은 전자임을 함의한다.

Toulmin(1989 : 88)이 예를 들고 있듯이,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마신 이유는 전자의 틀에 의해서만 설명이 가능하다. 소크라테스는 자신으로 하여금 독배를 마시게 한 당시의 사회적 실행에 담겨 있는 도덕률이 옳으나를 문제 삼기에 앞서 자신을 포함한 구성원이 따라야 할 표준은 사회적 실행에 있음을 보인 것이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법을 따르라며 독배를 마신 것이다.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법을 따르라’고만 말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따르는 법이 악법이라고 말했다. 즉 ‘악법도 법이라’고 했던 것이다. 다시 말해 자신이 받아들인 사회적 실행을 ‘악법’이라고 비판한 것이다. 자신이 따르는 법이 악법이라는 말을 하는 순간 그의 행위는 무엇이 옳으나를 문제삼는 후자의 틀에 의해서만이 설명될 수 있다. 악법도 법이라며 독배를 마신 소크라테스의 행위는 Toulmin이 제시하는 두 가지 틀에 모두 의존해야 설명이 가능하다. 그의 행위는 법을 따라야 할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며, 악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 주고 있는 것이다.

Toulmin이 말하는 사회적 실행에 비유될 수 있는 말로 MacIntyre(1984 : 187-203)가 사용하는 활동 양식(practice)이라는 개념을 빌리자면, 법을 따르고 표준으로 삼아야 하는 사람들은 다름 아닌 활동 양식에 전념하는 사람들이다. 물론 그들 중에는 활동 양식에 내재된 가치를 추구하는데 전념하기보다는, 활동

양식 그 자체를 대상으로 삼아 옳고 그름을 새롭게 드러내려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바로 이들이 악법이라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며 또한 이들에 의해 활동 양식의 목적 가치가 새롭게 변화해 갈 수 있다. 그러니까 활동 양식은 유기적인 삶의 모습을 취하고 있는 셈이다.

Toulmin이 말하는 ‘사회적 실행에 담겨 있는 도덕률’과 소크라테스가 말하는 ‘악법’ 그리고 MacIntyre가 말하는 ‘활동 양식’은 모두 시민성 내지는 도덕성의 내용과 관련된다. 즉, 시민으로서 따라야 할 행위의 표준이 무엇인지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사회적 실행에 담겨 있는 도덕률은 ‘설명’되어야 하고 악법은 ‘개정’되어야 하며 그리고 활동 양식은 내재적 가치에 비추어 ‘평가’되어야 한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설명’과 ‘개정’, ‘평가’는 표준을 따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표준을 판단하고 새로운 표준을 선택하는 등 합리성을 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바로 이러한 합리성이 시민성의 형식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렇듯 시민성은 내용의 측면과 형식의 측면을 모두 대표하고 있는데, 이러한 맥락에서 당연히 따라 나오는바 시민성(시민자질)은 내용과 형식의 두 측면에 의존해서 그려져야 한다.

실제로 시민교육 내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시민 자질은 크게 두 측면으로 나누어지고 있는데, 그 하나는 삶의 과정이나 사회적 관계에서 요구되는 덕목이나 가치 즉, 내용과 관련되며, 다른 하나는 개인적, 사회적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데 필요한 능력 즉, 형식과 관련된다.

1990년부터 1993년까지 4개년에 걸쳐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연구 보고된 시민 자질을 보면, 시민 자질은 크게 ‘인간 존엄성의 신념 내면화’, ‘기본생활 습관 및 질서 의식의 내면화’, ‘민주적 절차 및 과정에의 숙달’, ‘합리적 의사 결정 능력 함양’이라는 4영역으로 구성되며, 이는 다시 15개의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본고에서 취하고 있는 두 측면에 따라 재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내용과
관련된
목 표

A. 인간 존엄성의 신념 내면화

1. 인간 존엄성의 이해와 수용
2. 타인의 입장을 고려하고 공평한 삶을 추구
3.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의 수행

4. 약자 보호와 소수 의견의 존중
5. 자아 의식과 공동체 의식의 투철
6. 공공선의 중요시

B. 기본 생활 습관 및 질서 의식의 내면화

1. 일상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예의 범절의 이해와 실천
2. 공중 도덕의 생활화
3. 주변 생활 환경의 청결과 몸가짐의 단정화
4. 근면, 검소, 절약의 생활화

형식과
관련된
목 표

C. 민주적 절차 및 과정에의 숙달

1. 과정과 절차의 중요성 이해
2. 서로 다른 의견과 신념을 민주적 절차에 따라 조정할 수 있는 기능과 자세
3. 집단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을 합리적으로 표현하는 능력

D. 합리적 의사 결정 능력 함양

1. 합리적 의사 결정의 중요성과 필요성 이해
2. 문제 해결 능력 및 의사 결정 능력

바른 시민생활의 두 측면

지금 우리 사회는 여러 측면에서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가늠하기 어려운 이른바 가치 혼란의 상태에 빠져 있다. 이러한 상태의 지속은 도덕성 상실의 시대라는 우려마저 들게 한다. 개인은 개인대로 집단은 집단대로 각기 자기만의 이익만 추구함으로써 다른 개인과 집단에 피해를 주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 건강한 시민사회의 존속이 위협받고 있는 것이다.

건강한 시민사회는 건전한 시민의 바른 시민생활에 의해 보장된다. 바른 시민생활이란 시민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시민 개인이 그가 속한 사회의 존속과 발전에 기여하는 삶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사회의 존속과 발전에 기여한다는 것은 일차적으로는 주어진 사회의 규범을 잘 지키고 다른 사람과 조화롭게 사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개인은 자신이 속한 사회의 규범이 정당한가 하는 의문을 언제든지 가질 수 있으며, 정당한 규범의 확립과 이행을 요구할 수 있으며 또 그래야 한다. 전자가 시민생활의 소극적인 방식이라면 후자는 적극적인 방식이라 할 것이다. 달리 말하면 전자가 ‘따르는’ 삶이라면 후자는 ‘따지는’ 삶이라 할 수 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평등한 개개인이 각기 정당하게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아울러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는 시민사회이다. 시민사회는 예전의 전근대적 사회와 달리, 주어진 규범을 순종적으로 따르기보다는 일정한 제약의 틀 내에서 서로의 이익을 추구하는 개인들로 이루어진 이익사회의 성격이 강한 만큼, 적극적인 삶의 방식에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같은 적극적인 자기이익 추구도 기본적으로는 타인에 대한 배려가 없이는 공동체의 안정적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 점에서 타인과의 조화로운 삶을 우선하는 품성을 갖추는 것이 우선적으로 요청된다. 따라서 바람직한 시민생활에는 소극적인 측면과 적극적인 측면이 있으며, 이 둘은 서로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작용해야 하는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바른 시민생활의 소극적 측면 : 일상 생활과 품성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여러 가지 고려를 하게 된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옳은 일인가”, “친구를 위해 거짓말을 해야 하는가”, “사람은 마땅히 다른 사람을 인격으로 대해야 한다”와 같은 수많은 생각 속에 살고 있다. 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성금을 낸다든지, 버릇없는 아이들을 보면 나무라기도 한다.

이런 생각이나 행동들은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이에 대해 그것은 일정한 원칙에 따르는 것이라는 관점이 있는가 하면, 품성 혹은 덕성이 드러나는 것이라는 관점이 있다. 전자를 원칙 혹은 의무의 윤리관(ethics of principle or duty)이라고 하면, 후자는 덕 혹은 존재의 윤리관(ethics of virtues or being)이라고 할 수 있다.

덕의 윤리와 원칙의 윤리

오랜 기간동안 도덕은 ‘성격’을 구성하는 어떤 성향이나 성품과 정직, 친절, 양심적임과 같은 ‘덕’을 계발하는 것에 관여해 왔다. 우리 사회에서도 “이러저러한 사람이 되라”는 식의 덕의 윤리가 전통적인 규범체계를 이루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사실 의무·원칙의 윤리는 독일의 철학자 칸트(I. Kant)에 와서야 비로소 등장한 것이다. 의무론이니 공리주의니 하는 도덕원칙이 등장한 것이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를 알 수 있다.

덕이란 전적으로 천부적인 것은 아니며 그것은 모두가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교육과 훈련 혹은 어쩌면 은총에 의해 습득되어져야만 한다. 또한 덕이란 매력이나 수줍음 같은 ‘성격(character)’의 특성이라기보다는 ‘인격(personality)’의 특성이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특정한 방식으로 생각하고 느끼는 성향이 아니라 특정한 종류의 상황에서 특정한 종류의 행위를 행하는 성향을 내포한다. 그것은 지능이나 목공일 같이, 사용함이 없이도 가질 수 있는 능력이나 기능(skill)에 불과한 것은 아니다.

사실상 도덕이란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 온 바와 같이 일차적으로 규칙이나 원칙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인격의 성향이나 품성을 계발하는 것과 관련된 것으로 생각되거나 생각되어야 한다고 주장되어 왔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

스도, 옳거나 의무인 것이 무엇인가라는 식보다는 주로 덕목 혹은 덕스러운 것에 대해 말하고 있는 점에서, 도덕을 이런 식으로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레슬리 스텔폰(Leeslie Stephen)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

...도덕이란 내면적인 것이다. 도덕법칙은 ‘이렇게 하라’는 식이 아니라 ‘이렇게 되라’는 식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진정한 도덕법칙은 ‘죽이지 말라’는 대신에 ‘미워하지 말라’고 명한다. 도덕법칙을 진술하는 유일한 방식은 인격의 법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은 의무나 원칙 혹은 행위의 윤리와는 대비되는 덕 혹은 존재의 윤리를 주장하고 있다. 흔히 얘기되는 공리주의나 의무론이라는 윤리이론들도 일종의 원칙의 윤리로 진술된 것이긴 하지만, 그것들은 동시에 덕의 윤리로도 변형될 수 있다. 덕의 윤리라는 개념은 그것이 오랜 역사를 가졌기 때문만이 아니라, ‘새로운 도덕(the new morality)’을 내세우는 사람들도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까닭에 살펴볼 만한 것으로 생각된다.

덕의 윤리는 도대체 어떤 것인가? 물론 그것은 “살인하지 말라”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증진시켜야 한다”는 것과 같은 의무판단(deontic judgment)이나 원칙을 도덕에 있어서 기본적인 것으로 삼는 대신에, “그것은 용감한 행위였다”, “그의 행위는 덕스럽다” 혹은 “용기는 덕이다”와 같은 덕성판단(aretaic judgment)을 기본적인 것으로 삼고 있으며, 의무판단은 이와 같은 덕성판단으로부터 파생된 것이던가 아니면 그것이 전혀 없이도 성립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나아가서 덕의 윤리는 동기 혹은 품성에 관한 덕성판단을 일차적인 것으로 보고, 행위에 대한 덕성판단을 이차적인 것으로 간주할 수도 있다. 흄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

...우리가 어떤 행위를 찬양할 경우 우리는 그 행위를 낳은 동기만을 고려한다. ...외면적인 수행은 아무런 가치도 없다. 모든 유덕한 행위는 그 가치가 유덕한 동기로부터만 나온다.

덕의 윤리에서는 어떤 덕목을 제시하는가? 고대 그리스에서는 4개의 주요덕목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지혜, 용기, 절제, 정의이다. 기독교에서는 전통적

으로 일곱 개의 주요 덕목이 제시되었는데, 이는 세계의 신화적인 덕인 믿음, 소망, 사랑과 네개의 인간적인 덕인 사려, 인내, 절제, 정의이다. 이는 토마스 아퀴나스의 견해인데, 이에 비해 아우구스티누스는 마지막 네가지를 사랑의 형태들로 간주했기 때문에 처음 세가지만 주요 덕목으로 보았다. 또 많은 사상가들 특히 쇼펜하우어는 선의(benevolence)와 정의(justice)를 주요한 덕으로 보았다. 사랑, 용기, 절제, 정직, 감사, 사려 등과 같은 일상적인 덕목들은 대체로 선의와 정의라는 두 덕목으로부터 도출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덕을 갖고 있다해도, 앞에서 본 것과 같이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옳은 일인가”, “친구를 위해 거짓말을 해야 하는가”와 같이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서는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언제 어디서나 타당한 보편적인 도덕법칙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입장이 곧 원칙 혹은 의무의 윤리이다.

시민생활의 윤리

이제 우리는 도덕을 일차적으로 어떤 원칙에 따르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가 아니면 어떤 성향이나 품성을 함양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가? 이 둘 중에서 반드시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가?

원칙의 윤리가 그 원칙에 따라서 행하려는 성향을 계발하지 않고서 어떻게 현실 속에 구현될 수 있겠는가? 칸트의 정언명령을 아무리 잘 알고 있다 해도 다른 사람을 위하는 마음이 없이 어떻게 좋고 옳은 행동을 할 수 있겠는가? 다른 한편 일정한 방식의 행동이나 삶을 고려하지 않고 품성 그 자체만을 생각할 수 있는가? 정의롭다는 것은 어떤 상황에 비추어 그에 맞는 정의로운 행위 즉 정의의 원칙 — 그것이 어떤 것인지는 별개의 문제이다 — 에 합치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향을 내포한다. 즉 우리가 이룰때면 공리의 원칙이나 선의의 원칙 나아가서 정의의 원칙과 같은 어떤 원칙에 동의하지 않는 한 — 물론, 직접 드러내놓고 동의할 수도 있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동의하고 있을 수도 있다 — 어떤 성품이 무엇을 권장하고 가르치는 것인지를 알기 어렵다.

따라서 의무·원칙의 윤리와 덕·품성의 윤리는, 그들 중에 우리가 선택을 해야 할 상반된 종류의 윤리가 아니라 동일한 윤리의 상호보완적인 두 측면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이원적인 윤리관을 채택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정직하다든지 성실하다든지 하는 것에 우위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어떤 보상이나 제재의 원칙이 칭찬받거나 비난받을 것이라는 예상과 같은 외면적인 것, 타인에 대한 본능적인 사랑과 같은 우연적인 것이 아니어야 한다면, 우리는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은 성향과 습관의 계발에 힘써야 한다. 도덕이 우리들에게 실제적 의무의 원칙들을 제시할 수 있다 하더라도, 단순히 그 원칙에 합치되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이러한 합치는 전적으로 외면적이거나 도덕과 무관한 고려사항에 의해서 동기가 부여될 수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다른 고려사항의 희생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시련이 닥치는 순간에는 믿을 수가 없다. 이 밖에도 도덕이 우리들에게 제시할 수 있는 것은 대체로 조건부 의무의 법칙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건부 의무의 상충하는 원칙들 간에 선택을 하고 옳고 그름에 대한 우리의 실천규칙들을 수정하고자 하는 결단의 순간에 우리들을 지지해 줄 성향을 우리 스스로 길러야 한다.

우리가 자신과 타인의 내면에 어떤 성품을 계발해야 하고 또 일정한 유형의 인간이 되어야 하는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비록 도덕이 관여하는 바가 우리가 특정한 방식으로 행위 하는데 있기는 하나, 그러한 방식이 보다 명백히 규정된다 할지라도, 도덕이 그러한 방식 꼭 그대로 우리가 행해야 한다는 강경한 주장을 펼 수는 없다. 우리는 단지 어떤 행위가 특정한 원칙에 합치하게끔 행위했거나 하지 않았다는 것을 근거로 해서 그 당사자를 비난하거나 제재를 가할 수는 없다. 그것은 정당하지 못하다. 행위자는 자신의 잘못이 아니고서도 관련된 모든 사실들을 모를 수 있다. 도덕원칙이 어떤 상황에서 요구하는 행위가 그 자신의 잘못이 없이도 그에게 분명히 떠오르지 않을 수 있으며, 그가 성실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무를 그르칠 수 있다. 심지어 그는 단지 그러한 행위를 해낼 수가 없을 수도 있다. 따라서 도덕은 갖가지 종류의 변명과 정상 참작을 인정해야만 한다. 그래서 어떤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서 도덕이 내세울 수 있는 모든 것은, 우리가 무엇이 옳은가를 발견하고 가능할 경우 그것을 행하는 일정한 성향을 계발하고 이를 실현하는 일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사람은 “이러저러하게 행하기”보다 “이러저러하게 되어야” 한다. 그러나 주의할 것은 “된다”는 것은 적어도 “행위”하고자 노력하는 것을 내포한다는 점이다. 행위함이 없이 어떤 사람이 된다는 것은 실행이 없는 신앙과도 같이 생명이 없는 것이다.

의무나 원칙의 윤리 역시 덕을 위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물론 그것이

덕이나 덕성들에 대해서 갖는 위치는 덕의 윤리가 그것에 부여하는 위치와 다르다. 의무나 원칙의 윤리에 있어서 덕의 기능은 무엇을 행해야 할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행함에 있어 우리가 당면하게 될 상황이 어떤 것이든 자발적으로 기꺼이 행하리라는 것은 보장해 주는 것이다. 이와는 달리 덕의 윤리에 있어서는 덕목들이 이중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행할 바를 행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행할 바가 무엇인가도 말해준다.

이상의 논의에서, 교육의 측면에서는 원칙의 제시보다는 덕성의 계발에 우위를 부여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 바람직한 시민을 길러내는데 충분한가? 앞서서도 보았듯이, 개인은 자신이 속한 사회의 규범이 정당한가 하는 의문을 언제든지 가질 수 있으며, 정당한 규범의 확립과 이행을 요구할 수 있으며 또 그래야 한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평등한 개개인이 각기 정당하게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아울러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는 시민사회이다. 시민사회는 예전의 전근대적 사회와 달리, 주어진 규범을 순종적으로 따르기보다는 각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개인들로 이루어진 이익사회의 성격이 강한 만큼, 적극적인 삶의 방식에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다. 적극적인 삶의 방식은 어떤 것인가?

바른 시민생활의 적극적 측면

: 합리적 이익 추구로서의 준법과 시민참여

우리가 상정하는 시민사회란 처음부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개인들로부터 출발한 사회이다. 이러한 시민사회에서 이타심이나 자비심과 같은 전통적인 덕목들 — 그 자체로서 충분히 가치 있는 것이긴 하지만 — 을 설파하는 것은 의미를 갖기 어렵다. 그러한 까닭에 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합리적으로 자기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권장되어야 할 것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아울러 공동의 이익도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개개인이 이를 받아들여 따를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도 자신과 마찬가지로 자기이익 추구에 대한 일정한 제약을 받아들인다는 보장이 있어야 한다. 그같은 보장은 한편으로는 공정한 법제도의 확립과 운용에 의거해야 할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이를 감시하며 뒷받침하기 위해서 개인들이 자율적으로 시민공동체를 결성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이다.

배타적 이익 추구의 역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민사회는 평등한 개개인이 각기 정당하게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아울러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는 사회이다. 시민사회는 예전의 전근대적 사회와 달리, 주어진 규범을 순종적으로 따르기보다는 일정한 제약의 틀 내에서 서로의 이익을 추구하는 개인들로 이루어진 이익사회이다. 따라서 시민사회의 출발점은 개개인의 이익 추구이다. 그런데 각자의 이익 추구가 조화를 이룬다고 암묵적으로 가정하는 것은 비현실적인 이상적 주장이라는 비판에 부딪힌다. 우리는 각자의 이익 추구가 야기하는 술한 문제들을 매일같이 겪고 있지 않은가? 그렇다고 개개인의 이익추구를 부정하거나 공동의 이익만 강조할 것인가? 의무론 이나 공리주의 역시 개개인의 이익 상충의 문제에 있어 개개인이 수용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지는 못한다. 의무론은 이익 상충시 의무에 따라 행하라고 하지만 그에 따르는 의무의 우선 순위를 제시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으며, 공리주의는 전체의 이익이라는 기준에 의거하기 때문에 개인의 희생을 요구할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개개인의 이익추구에서 비롯되는 이익상충의 문제를 비판하기 위해 흔히 ‘죄수의 딜레마(Prisoner’s Dilemma)’라는 상황이 예로 등장한다. 이 상황은 아래 그림과 같이 두사람의 공범이 처한 몇 가지 가능한 경우를 구분하고 있다.

〈보기 1〉 죄수의 딜레마(Prisoner’s Dilemma)

		B	
		시인함	시인하지 않음
A	시인함	① 10년 \ 10년	② 석방 \ 20년
	시인하지 않음	③ 20년 \ 석방	④ 2년 \ 2년

첫째, 어느 한 사람이 죄를 시인할 경우에 그는 석방되고 시인하지 않는 다른 사람은 20년형을 받게 된다. 둘째, 둘 다 시인하면 모두 10년형을 받는다. 셋

째, 둘 다 시인하지 않으면 모두 2년형을 받는다. 그리고 A와 B 모두 상대방이 시인할지 않을 지에 대해 모른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합리적인 즉 예상되는 피해를 최소한으로 하는 안전한 선택은 범죄를 시인함으로써 석방되거나 최악의 경우에 10년형을 받는 것이다. 두 사람 모두 시인하지 않고 그리하여 둘 다 2년형을 받는 것이 전체의 입장에서는 최선의 대안이 되겠지만, 상대방의 선택내용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기 혼자 시인하지 않는다는 것은 모험이기 때문이다. 상대방이 시인하지 않는다면 자신은 시인함으로써 석방될 수 있으나, 상대방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결국 둘 다 시인을 함으로써 둘 다 10년형을 받게 된다. 두 사람이 합의해서 둘 다 시인하지 않으면 모두 2년형에 그치는데, 각기 자기이익만 추구하다 둘 다 최선의 가능성을 놓친다는 것이 이 상황을 예로 드는 비판의 요지이다.

여기서 ‘죄’를 너무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즉 처벌을 받을 ‘죄’라서, 상대방의 시인 여부에 상관없이 마땅히 고백해야 한다든지, 반대로 대의명분에 따른 행동을 죄로 취급하는 것이어서 이를 시인함으로써 악에 굴복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든지 하는 경우를 떠올릴 필요는 없다. 그런 경우는 이익 상충이라는 상황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같은 결과가 과연 각자의 이익추구에서 기인하는 것인가? 죄수의 딜레마와 같은 non-zero-sum game에서 첫째, 서로 합의한 것을 준수할 것인가 여부가 상대방에게 알려진다면, 각 당사자의 전략은 상호의존하게 되며, 따라서 둘 다에게 이익이 되는 최상의 결과 - 〈보기 1〉에서 ④ (②나 ③과 같이 어느 한쪽에게만 최대의 이익이 되는 경우가 아님) - 에서 균형을 이루게 된다. 이와 달리 합의 준수 여부가 상대방에게 알려지지 않을 경우 각자의 전략은 각기 독립적이며, 어느 한쪽만 합의를 준수하는 것은 그에게 최악의 결과 - 〈보기 1〉에서 ②나 ③ - 가 되므로 결국 준수하지 않기로 한다. 따라서 둘 다 최선의 결과 - 〈보기 1〉에서 ④ - 를 놓치게 되어 최선의 상황에 비해 둘다 손해를 보는 결과 - 〈보기 1〉에서 ① - 에 이른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각자의 전략 선택이 상호 의존적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장하는 것이 서로에게 이익이 된다는 것을 각자가 알아야, 합의를 준수하는 것이 각자에게 이익이 되며, 이를 보장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만큼 각자의 이익 추구가 오히려 상호이익 극대화를 가로막게 된다는 것이다. 달리 말해 상호 고립적으로 이루어지는 개개인의 의사결정은, 설령 그것이 각자의 관점에서 지극히

합리적으로 이루어진 결정이라 할지라도 결국 자신을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좋지 않은 결과를 야기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위의 비판은, 실은 ‘상호 합의 가능성’ 그리고 ‘상호 인지 가능성’이라는 요건의 결여로 인해 최선의 대안에 이르지 못하는 상황을 ‘각자의 이익 추구’에서 원인을 찾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즉 각자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서로 합의할 수 없는 상황적 제약 때문에 최선의 대안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다. 결국 상호 합의 가능성과 상호 인지 가능성이 상호 이익 극대화 실현의 관건이다. 물론 각자 자신의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전통적 이기주의는 상호 합의나 인지의 가능성이라는 요건을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이같은 비판이 전혀 잘못된 것이라 할 수는 없다.

이익 상충 상황의 조명

앞에서 본 ‘죄수의 딜레마’와 같은 이익 상충의 상황은 상대방의 행동에 관한 불확실성 때문에 발생한다. 이는 상호신뢰의 문제이다. 즉 이 문제는 상대방이 협력할 것인가 즉 자신과 행동을 같이할 것인가를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는데 기인한다. 달리 말해 ‘죄수의 딜레마’의 초점은, 상대방이 어떻게 할지 모르는 경우에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합리적인가 하는데 있다. 즉, 확실성의 상황에 대한 것이 아니라 불확실성의 상황에 대한 것이다.

죄수의 딜레마가 갖는 중요성은 다음과 같은 질문에서 잘 드러난다. 즉 선택의 기회는 단 한번밖에 없으며 다양한 선택 결과에 대한 경험적 자료가 제공되기를 기다릴 수 없는 경우에, 상대방의 선의(善意)를 믿고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인가 합리적이지 않은가? 홉스의 자연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론상으로 계약을 상정하는 모든 사람에 있어, 상대방의 선의를 믿는 ‘비합리적’ 모험을 감행해야 하는가? 가령 상대방이 믿을만한가에 대한 확률이 전혀 알려지지 않거나 혹은 정확히 .5의 확률일 경우, 상대방의 진실성에 기대를 거는 것은 합리적인가 합리적이지 않은가?

죄수의 딜레마를 주로 취급하는 게임이론에서 ‘합리적 행동’이란, 가능한 선택에 따른 결과들 중 최악의 결과가 야기되는 상황을 피하고자 하는 최소극대화 전략(minimax)의 채택을 뜻한다. 그런데 가능한 최대의 결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더 큰 위험을 감수하는 것 또한 합리적이라는 주장도 가능하다. 또한 최소극대화

전략이 보편적으로 수용되는 것은 사람들이 모험을 회피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 전체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침체를 가져온다는 주장도 고려해 볼 만하다.

죄수의 딜레마와 같은 문제를 다루는 게임이론(Game Theory)은 개인적인 가치 - 이기적인 것이건 이타적인 것이건 간에 - 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상황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사회집단의 존재를 인정한다면 그리고 사회집단간의 이익이나 가치의 상충이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게임이론이나 의사결정이론(Decision Theory)의 맥락에서 사회적 가치의 문제를 충분히 다룰 수 있다. 즉 죄수의 딜레마와 같은 이익 상충의 문제는 사회적 차원으로 확대 적용될 수 있다. 우선 개개인의 이익이 상충하는 상황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각기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개인들이 처하게 되는 상황에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첫째는 어느 한쪽이 이득이 되면 상대방이 그만큼 손해를 보는 상황(zero-sum game)이다. 둘째는 어느 한쪽이 이득을 보면 상대방의 이득이 감소하긴 하지만 이득을 얻는 편의 이득과 꼭 같은 정도는 아니며, 또한 그 반대도 마찬가지인 상황(non-zero-sum game)이다. 그리고 앞에서 본 ‘죄수의 딜레마’는 이 중 두번째 경우에 해당한다

첫번째 경우의 상황에 해당하는 예는 아래 그림 <보기 2>와 같다. 갑과 을 두 사람이 게임을 한다. 을이 어느 한 손에 구슬을 쥐고 있으며, 갑은 을이 어느 손에 구슬을 쥐고 있는지를 알아 맞추는 게임이다. 갑이 틀리면, 즉 을이 구슬을 쥐 손은 알아 맞추지 못할 경우에는, 갑이 을에게 250원을 주기로 한다. 그리고 갑이 맞출 경우는 다시 두 경우로 구분하여, 구슬이 을의 오른손에 있는 것을 맞출 경우에는 을이 갑에게 500원을, 구슬이 을의 왼손에 있는 것을 맞출 경우에는 을이 갑에게 100원을 주기로 한다.

<보기 2>

을(구슬을 쥐 손)

		오른쪽	왼쪽
갑 (구슬을 쥐고 있다고 가리키는 을의 손)	오른쪽	500, -500	-250, 250
	왼쪽	-250, 250	100, -100

이 예에서 분명한 것은, 갑이나 을 어느 쪽도 계속해서 어느 한쪽 손을 선택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갑이 500원을 벌기 위해 항상 을의 오른손을 가리킨다면, 을은 항상 왼손에 구슬을 쥐어 계속 250원을 벌 수 있을 것이다. 반대로 을이 갑에게 100원 이상을 잃지 않으려고 계속해서 왼손에 구슬을 쥐다면, 갑은 을의 왼손을 가리킴으로써 계속해서 100원씩을 벌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합리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당사자들이라 해도, 이러한 경우에는 순간 순간의 판단만이 가능하며, 어느 한가지 대안을 계속해서 선택할 수가 없다. 즉 이와 같은 zero-sum game에서는 합리적 해결 자체가 불가능하다.

위의 예에서 갑과 을이 얻거나 잃는 액수를 조정하면 두번째 경우에 해당하는 예가 된다. 즉 둘 다 이득을 보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둘 다 잃는 경우도 있는 게임을 생각해 보자. 〈보기 3〉은 가능한 결과를, 〈보기 3-1〉은 가능한 결과에 대한 선호의 우선 순위를 나타낸 것이다.

〈보기 3〉의 경우에 있어, 둘 다 이득을 본다면 그 이득의 총량만큼 제 3자가 잃을 것이고, 둘 다 잃을 경우에는 그 총량을 제 3자가 갖게 된다. 이것이 바로 앞에서 예로 들었던 죄수의 딜레마와 같은 non-zero-sum game에 해당한다. 을이 어떻게 하든 갑은 왼손을 가리키는 것이 낫고, 갑이 어느쪽을 가리키든 을은 왼손에 구슬을 쥐는 것이 낫다. 따라서 을은 왼손에 구슬을 쥐고 갑은 왼손을 가리키게 된다. 그리고 결과는 갑과 을 모두 200원씩 버는 것이 아니라 50원씩 내 놓아야 하는 것이 된다. 즉 이 경우는 당사자 모두 상대방의 선택 여하에 상관없이 자신이 가질 수 있는 가능한 이익의 총량을 고려하여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당사자 둘 다에게 손해가 된다. 이같은 결과는, 〈보기 3-1〉에서 알 수 있듯이 각 당사자의 선호도가 대칭이어서 최적(最適)상태 즉 가장 바람직한

〈보기 3〉

을(구슬을 쥐 손)

		오른쪽	왼쪽
갑 (구슬을 쥐고 있 다고 가리키는 을의 손)	오른쪽	① 200, 200	② -250, 250
	왼쪽	③ 250, -250	④ 50, -50

〈보기 3-1〉

을(구슬을 쥐는 손)

		오른쪽	왼쪽
갑 (구슬을 쥐고 있 다고 가리키는 을의 손)	오른쪽	① 2 / 2	② 4 / 1
	왼쪽	③ 1 / 4	④ 3 / 3

상태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각기 자기자신의 이득을 극대화하려는 개인들이 따르게 되는 전략(principle of dominance)은, 당사자 모두에게 최상이 되는 결과를 추구하는 관점 - 파레토 최적 원리(principle of Pareto-optimality) - 에서 보면 분명 합당하지 못하다. 어떤 상태 C에 변화가 생겨 한 당사자에게 보다 큰 이득을 주면서 동시에 다른 당사자에게 보다 작은 이득을 주지 않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그 상태 C를 ‘최적 상태 혹은 파레토 최적 상태(Pareto-Optimal)’라 한다. 앞에서 죄수의 딜레마를 예를 들어, 각자 자신의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서로에게 최상이 되는 결과를 놓친다고 하면서 이를 비판한 것은, 파레토 최적 원리의 관점에서 제기된다. 그리고 이러한 비판은 바로 위에서 보았듯이 각 당사자의 선호를 대칭적인 것으로 볼 때에만 가능하다.

죄수의 딜레마와 같은 non-zero-sum game에서 서로 합의한 것을 준수할 것인가 여부가 상대방에게 알려진다면, 각 당사자의 전략은 상호 의존하게 되며, 따라서 둘 다에게 이득이 되는 최상의 결과에서 균형을 이루게 된다. 이와 달리 합의 준수 여부가 상대방에게 알려지지 않을 경우 각자의 전략은 각기 독립적이다. 이 경우에 어느 한쪽만 합의를 준수하는 것은 합의를 준수하는 이에게 최악의 결과가 되므로, 결국 어느 누구도 합의를 준수하지 않게 된다. 그리하여 둘 다 최선의 결과를 놓치게 되고, 최선의 상황에 비해 둘 다 손해를 보는 결과에 이른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많은 문제들이 이 경우에 해당한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각자의 행위선택이 상호의존적이며 합의 준수를 확실하게 보장하는 것이 서로에게 이득이 된다는 것을 각자가 알아야, 합의를 준수하여 모두에게 이득이 된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를 보장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만큼 각자의 개별적 이익 추구가 오히려 상호이익 극대화를 가로막게 된다. 결국 ‘상호 합의

가능성'과 '상호 인지 가능성'이 '상호 이익 극대화' 실현의 관건이다. 그런데 이익 상충이 정말 문제가 되는가? 혹은 상호 합의와 인지가 과연 필요한가?

이익 상충 상황의 해결요건

위에서 본 것은 당사자가 둘인 경우이다. 물론 어떤 상황이든 이를 행위의 주체인 개인의 차원으로 단순화시키면, 사회과정 속의 대부분의 경우가 이런 식으로 단순한 유형으로 환원될 수도 있다. 그러나 도저히 이같은 단순한 유형으로 환원될 수 없는 대규모 집단 속에서 개인이 처하는 결정 - 행위 선택 - 의 문제는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실제로 우리가 사회 속에서 당사자로서 처하게 되거나 제 3자로서 보고 듣는 많은 문제들이 개인의 차원으로 환원하기 힘든 사회적 차원에서 발생하고 있지 않은가?

사실 개인이 행위규칙을 선택하는데 있어 자신이 속해 있는 집단의 규모가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 물론 정확한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타인이 선택하리라 예측되는 것이 개인의 규칙 선택에 영향을 준다는 점이 인정되기만 하면 된다. 정상적인 의식을 가지고 소수의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는 경우 예를 들어 친구들과의 관계에 있는 경우, 혹은 다수의 사람들 속에 있더라도 자신의 행동을 다른 사람들이 의식하며 그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에, 개인은 규칙을 준수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는 경우, 즉 대규모 집단 속에 있으면서 자신의 선택이 다른 사람들의 선택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에, 개인은 반대로 행할 가능성이 높다. 여기서 개인의 선택에 극적인 변화를 주기 위해 특정 집단이 실제로 어느 정도의 규모여야 한다고 제시하기는 힘들며, 아주 작은 집단과 아주 큰 집단을 구분하는 기준이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또한 개인에 따라 집단의 규모에 대한 인식 그리고 타인을 의식하는 정도에 따라 선택의 차이가 있다는 것도 분명하다. 외적인 상황이 똑같은 경우에, 일정한 규모의 집단에 속한 성원들 중 자신이 아주 작은 집단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주 큰 집단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한가지 분명한 것은, 자신이 소집단이라 생각하는 집단 속에서는 규칙을 따를 것으로 보이는 개인이라 해도, 일정한 집단규모 증대가 있을 때는 규칙을 무시하거나 위반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이는 바로 오늘날과 같은 대규모 사회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익명성의 증대, 특히

그 역기능의 증대로 말미암아 사적인 이익극대화 추구의 경향이 강해짐을 지적하는 것이다. 이 점은 다음과 같이 우리 사회에 특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

흔히 서양과 동양의 윤리관을 비교할 때, 서양이 죄책감의 문화인데 비해 동양은 수치심의 문화라고 한다. 즉 서양 사람들이 대체로 내면적인 규범에 따르는 경향이 있는데 비해, 동양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많이 의식한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도 전통적으로 체면을 차린다던가 하는 식으로 이같은 수치심의 문화를 지녀왔다고 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한다는 것이 주체성이 약하다는 지적을 받을 소지가 있긴 하지만, 반면에 사람들을 도덕적으로 행동하게 하는 요소로서 긍정적인 기능을 발휘하는 점도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요즘에는 자신의 내면적인 규범에 따르는 것도 아니면서 다른 사람의 시선에도 아랑곳 않고 편한 대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다. 급격한 근대화를 거치면서 전통적인 규범이 흔들리고 이를 대체할 새로운 규범이 아직 정립되지 않은 우리 사회에서, 이처럼 절제되지 않은 개인적 이익추구가 가지는 윤리적 차원의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소지가 있다.

위의 논의는 흔히 고립되어 있지 않고 어떤 식으로든 일정한 집단에 속해 있는 모든 개인에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구성원 각자는 모두 딜레마에 빠진다는 것을 알게 된다. 즉 자기이익을 추구하는 당사자는 도덕법칙을 자신의 원칙으로 택할 수가 없으며 상대방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모든 사람이 도덕법칙을 거부하고 대신에 자신의 사적인 준칙을 따르게 된다. 이같은 상황은 흔히 말하는 ‘죄수의 딜레마’와 비슷하다. ‘죄수의 딜레마’에 있어서 문제되는 결과 — 두사람 모두 죄를 시인함으로써 둘 다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 최악의 사태 — 가 발생하는 것은 당사자 상호간에 의사소통이 없고 서로를 불신하기 때문이다. 대규모 집단에서의 딜레마는 이보다 더 심각한데, 이는 당사자들 간에 추가적인 의사소통이나 선택의 번복을 통해 결과를 개선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대집단의 경우에 발생하는 이익 상충의 문제 중 대표적인 것이 ‘무임승차자(free rider)’의 문제이다. 경제학적인 용어를 빌어 말하면, 각자 조금씩 비용을 부담하면 전체의 이익이 증대되고 또한 각자 그만큼 혜택을 볼 수 있는 공공재 같은 경우에, 어느 누구도 그 비용을 자발적으로 부담하고자 하지 않을 때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한다. ‘무임승차’의 문제를 야기하는 상황을 경제학에서는 흔히 ‘외부경제 혹은 외부효과(economic externality)’라 한다. 이같은 외부효과는 생

산이나 소비, 교환 등의 행위가 당사자가 아니거나 아니기를 원하는 사람의 효용에 영향을 미칠 때 발생한다. 물론 그러한 효과는 이로울 수도 있고 해로울 수도 있다. 이로울 경우에는 긍정적 외부효과 혹은 외부효율성이라 하고, 해로울 경우에는 부정적 외부효과 혹은 외부비효율성이라 한다.

예를 들어, 등대와 같은 공공재는 등대 건설의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에게 긍정적 외부효과를 가져다준다. 반면에 공장에서 흘러 내보내는 폐수는, 공장 주변의 주민 나아가 일반 시민들에게까지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가져온다. 이들 경우에서 외부효과가 발생하는 이유는 그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 — 등대, 폐수 등이 이에 해당된다 — 을 개인이나 단체가 직접 소유하거나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는데 있다. 이러한 외부효과는 무임승차자나 기식자(寄食者, parasite)를 만들어 낸다. 무임승차자는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불하지 않고 혜택을 보는 사람이다. 그리고 기식자는 혜택을 입는데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비용의 일부나 전부를 전가하는 사람이다. 위의 등대의 예에서, 등대의 건설이나 유지에 기여를 하지 않으면서도 그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무임승차자이다. 비록 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비용을 전가했다고 볼 수는 없다 해도, 그들은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혜택을 보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 폐수의 예에서, 공장 주인은 자신이 야기한 수질·오염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보상을 해 주지 않음으로써, 자신의 활동이 야기하는 비용의 일부 혹은 전부를 타인에게 전가하기 때문에 기식자이다. 무임승차자는 자신의 행위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하지만 그는 아무 댓가도 치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활동 결과로부터 혜택을 받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차별적인 혜택을 받는 것이다. 이에 비해 기식자는 다른 사람들에게 직접 피해를 준다. 그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이 가능한 여건 하에서는 선택하지 않을 방법으로, 결과적으로 기식자 자신과 상호작용을 하도록 강요함으로써, 자유 활동을 위한 조건들을 직접적으로 위반한다. 그는 차별적으로 혜택을 보고, 다른 사람들은 차별적으로 고통을 받는 것이다.

공공재의 경우, 모두들 공공재의 필요를 느끼면서도 어느 누구도 자신이 먼저 그 비용을 부담하려 하지 않는 한, 아무 것도 나이지 않는다. 즉 딜레마는 계속된다. 물론 이는 집단의 규모가 아주 큰 경우일수록 발생할 여지가 크다. 그같은 큰 집단에서 개인은 자신의 행위가 타인들의 행위에 아무런 실질적인 영향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각자 자신의 이득만 추구하는 것은 시장경제 과정에 비유할 수 있는데, 이러한 과정은 공공재와 같은 공동의 문제가 관련된

상황에서는 바람직한 결과를 산출하지 못한다. 따라서 개인들은 ‘시장’ 대신 다른 장치를 도입하려는 경향, 즉 사회를 운용하는 규칙에 일정한 변경을 가하려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그리고 제도나 규칙에 있어서의 이같은 변화는 집단 구성원 모두에게 공통된 행위 기준을 부과할 수 있다. 즉 공공재 확보와 같은 일정한 상황 하에서 개인들은, 순전히 합리적인 근거에서 즉 자신이 직접적 혹은 잠재적 수혜자의 한 사람이라는 생각에서, 자신들에 대한 규제 즉 비용의 부담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하게 된다. 공공재 비용 부담에 있어서의 개인의 선택에 대한 이같은 분석은 윤리적 논의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위에서 본 것처럼 무임승차는, 어느 누구도 자기가 부담을 지는 것을 원치 않는 경우에 발생한다. 그러나 아무도 부담을 지지 않으려 하면 결국 모두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 결과에 이른다. 죄수의 딜레마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듯이 개인적 합리성이 우리의 상호작용을 지배하게 되면, 그로부터 발생하는 딜레마가 공동의 목표 — 상호 이득 — 달성을 방해한다. 그 딜레마는 상호작용의 양태를 변경함으로써만 극복될 수 있다. 즉 소집단적 상황을 조성하여 상호 인지·합의를 도출함으로써 딜레마를 해소할 수 있다. 반면에 완전경쟁은 어느 한쪽 — 개인 혹은 집단 — 만 이득을 보는 것은 곧 다른 개인 혹은 집단에 대한 손해가 되기 때문에 개별 수요·공급자들을 대집단 딜레마에 빠져 있게 할 것을 요구한다. 달리 말해, 일종의 zero-sum game인 이같은 경우에 일반 대중은 완전경쟁이 가능한 한 더 강하게 작동되는 것을 합리적으로 선택할 것이라는 의미이다. 이를 사회적 관점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윤리적 차원과 같은 것인가?

위에서 보았듯이 윤리는 사회적인 것이긴 하지만, 궁극적으로 개인의 행동에 지침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사회 전체의 이익의 총량에만 관심을 갖는 사회적 관점과는 달리 취급되어야 한다. 윤리적 차원에서는 완전경쟁이나 대집단 딜레마를 조성하는 것보다 무임승차를 배제하는 것이 더 중요한 고려 대상이다. 여기서 다음과 같은 물음이 제기될 수 있다. 즉 개인의 선택의 자유와 경제적 효율성 그리고 공익간에 적절한 비중을 어떻게 가늠할 것인가? 또한 어떤 대상이 공적인 것인지 사적인 것인지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소집단적 상황을 만들 것인가 하는 점이다. 윤리적 선택의 맥락에서, 복잡한 사회적 상호작용 체계를 소집단 유형으로 분해할 수 있는 가능한 수단은 무엇인가? 즉 “네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말에 대해 “누가 내 이웃인가”라는 질문이 제기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적절한 답은 아직까지 제시되지

않았다. 부족하지만 타인의 입장에 서 보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하는 것밖에 달리 방법이 없다.

이익 상충의 상황에 대한 이상의 논의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윤리적 차원에서 이익 상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상호 합의와 인지 가능성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사실 이익 상충의 문제가 심각하게 논의되는 이유는, 개인 각자의 이익 추구라는 것이, 이익 상충의 문제를 곤장 제기하게 하고 나아가 타인에 피해를 주는 부작용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는 데 있다. 즉 시민윤리의 도출 근거가 오히려 윤리의 존립 기반을 흔들리게 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자기이익을 추구하는 행위가 윤리적으로 옹호될 수 있기 위해서는, 일정한 보완을 통해 ‘상호 합의·인지 가능성’ 요건을 갖추고 이것이 ‘타인의 이익’ 보장까지 포함한다는 것이 밝혀져야 한다. 그리고 그같은 보완이, “각자 자신의 단기적인 이익 추구에 대한 합리적 제약에 따르는 것이 장기적인 자기 이익에 부합된다”는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해관계 조정원리로서의 법과 도덕

만일 사회가 상호이익을 위한 공동의 활동이라면, 그 제도와 관습은 합의 결과가 상호이익을 보장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제도나 관습에 합의를 하더라도, 사회적 여건상 우리가 실제로 선택하는 것이 제약 받는 한, ‘준수’의 문제가 제기된다. 준수는 각 참여자가 동료들과 자발적으로 상호 교류하는 협동적 활동의 준거를 내에서만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홉스에 의하면, 각기 자신의 이익만을 무제한적으로 추구하는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서로 투쟁하는 자연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다. 여기서 벗어나기 위한 요건으로서 홉스는 자연법을 제안함을 앞에서 보았다. 그런데 합의를 위반하는 것이 준수하는 것보다 더 큰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여 합의를 위반하려는 사람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자신의 계약을 위반하는 성향이 있는 사람에 대해, 그런 사람의 성향을 알면서 또한 합리적인 사람들은 그를 협동에 동참하는 상대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전자의 성향을 다른 사람들이 간파하지 못할 때는 어떻게 되는가? 익히 알고 있듯이 홉스는 이 경우에 대해 각자의 이익 추구를 규제·조정할 역할을 절대군주에게 부여한다.

완전경쟁시장이 자신의 이익만을 의도하는 각 개인의 노력을 이상적인 사회

상태로 인도하는 ‘보이지 않는 손’의 역할을 한다면, 절대군주는 정확한 규제를 통해 각자의 이익 추구 노력을 안정적인 협동이라는 사회적 목표 달성으로 인도한다. 가시적인가 비가시적인가의 차이를 제외한다면, 절대군주와 완전경쟁시장은 각 개인의 이익 추구에 대한 합리적 제약을 불필요한 것으로 만드는 점에서 마찬가지이다. 완전경쟁시장에서는 외부경제가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각 개인의 자유로운 이익 추구가 사회전체적으로도 최상의 이득으로 이어진다. 홉스의 절대군주는 각 개인의 선택 — 이익 추구 — 을 제한함으로써, 외부경제가 작용하는 경우조차도 최상의 결과를 초래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홉스의 절대군주는 시장의 장점을 결여하고 있다. ‘보이지 않는 손’은 자연적 상호작용의 문제 즉 개인의 이익 추구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다지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하지 않지만, 홉스의 절대군주는 대단히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홉스의 절대군주에 복종하는 개인들은 실제로는 최상의 결과를 획득하지 못한다. 합의를 강제집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각자가 부담해야 하며, 이 비용이 바로 결과를 최상이 아닌 것으로 만들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외부경제가 불가피하게 존재하는 상황 — 이것이 바로 합의의 존재 이유이다 — 에서 도덕적 제도가 아니라 홉스의 절대군주와 같은 정치적 제도에 의해서만 자연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댓가를 톡톡히 치러야 할 것이다. 만일 우리가 합리적으로 체결된 합의를 자발적으로 준수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 댓가를 치르지 않아도 될 것이다.

합리적으로 체결된 합의는 공식적으로는 ‘법’이라는 형태로 나타난다. 근세 이전에도 법이라는 것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오늘날의 법이라는 것은 대개의 경우 근세 시민사회에 와서야 비로소 그 틀을 갖추게 된 것이다. 물론 법을 만드는데 있어 사회구성원 모두가 직접 참여하는 것은 아니다. 또 모두가 직접 참여할 수도 없다. 이러한 이유로 사회구성원의 대표들이 만든 법은 곧 구성원 모두가 만든 법이라는 것이 인정되고 있다. 이는 ‘정치과정’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만 있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사항이다. 그리하여 ‘합의의 자발적 준수’는 좁은 의미로는 곧 준법을 의미하는 것이 될 것이다. 시민사회란 처음부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시민 개인들로부터 출발한 사회이며, 법이라는 것은 그러한 시민들이 서로의 이익 상충을 극복하고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만든 제도적 장치이다. 법제도가 정당하게 만들어지고 공정하고 일관성 있게 운용된다면, 개인의 이익 추구는 전혀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없을 것이다.

이제 개인 스스로 협동에 참여하고, 도덕적 제약 그리고 최소한의 도덕으로서의 법을 따르는 것, 다시 말해 합의를 준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사실을 밝혀야 한다. 그리고 합의를 위반하는 성향을 가진 사람이 자신이 참여하지 않은 협동의 이득을 누릴 수 없게 하기 위한 조건을 밝혀야 한다.

합리적 준수 : 준법과 시민참여

홉스는, 인간의 본성 그리고 바람직한 인간 사회 건설을 위한 제도적 장치에 대한 연구에 있어 상당한 공헌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합리성을 오직 직선적 극대 이익 추구로만 생각한 점에서 실수를 범했다. 즉 합의를 할 필요를 느끼고 또 합의를 하며 이를 준수할 수 있음을 간과한 것이다. 합리적 인간 존재는 바로 자신의 판단 기준에 대해 반성할 수 있으며, 그 반성에 비추어 자신의 기준을 변경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홉스의 생각처럼 우리 인간이 직선적 극대이익을 추구하도록 되어 있다면, 우리가 도덕의 요구를 따르는 것은 불가능하며, 단지 홉스의 제안처럼 절대군주에 복종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규칙의 존재 이유를 밝히고 그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 이미 우리가 합리적인 존재이며 따라서 직선적 극대 이익 추구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합리적으로 자기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이 합의위반자에 의해 착취당하지 않을 정도로 세상 물정을 잘 파악하고 서로를 믿고 협동할수록, 합의를 준수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각자 적절한 정보를 갖고 있고 또한 동료들도 그러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회구성원들 간에, 자신들이 공평하고 최적인 협동으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것보다 실제로 적은 몫이 돌아오는 경우에, 즉 합의위반자들이 있을 경우에 합리적으로 자기이익을 추구하는 구성원들은, 스스로 합의 준수의 기준을 엄격히 함으로써 자신들의 사회에 개혁을 가해야 한다.

합의 준수의 기준을 엄격히 한다는 것은 일차적으로 법제도의 엄격한 집행을 의미한다. 이를 강력히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홉스의 절대군주와 같은 정치적 제도만으로 가능한가? 타인의 합의 위반 성향을 억제하기 위해 홉스의 절대군주로 회귀한다는 것은 또 다른 비용을 부담하게 만들기 때문에, 공식적인 정치적·법적 제도에의 의존은 최소한으로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합의의 공식적인 표현으로서의 제도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즉 정치인이나 공직자의 도덕성이나 책임의식이 박약하여 공식적인 제도

운용에 문제가 있을 때, 그리고 이를 비판해야 할 언론 등의 각종 기관과 사회단체들이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때, 나아가 이같은 제도의 허점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합의위반자가 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여기서 비강제적 연대활동 즉 준법의식을 고취하는 자발적인 시민운동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달리 말해 정당한 제도의 운용을 보장함과 동시에, 정당하지 못한 제도나 혹은 정당한 제도라 하더라도 그 잘못된 운용을 억제할 수 있기 위해서는, 권력이나 제도, 각종 기관들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감시자로서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단체를 결성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운동이 필요하다.

합리적으로 자기이익을 추구하는 개개인이 규칙 - 법과 도덕 - 을 지키고 시민운동에 참여함에 있어서 자신의 진실성을 드러내거나 은폐하는 능력에 의존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진실성을 파악하는 능력에 주로 의존해야 할 것이다. 즉 법을 위반하는 사람이 있거나 제도의 운용에 소홀한 공공기관이 있을 때, 이를 적극적으로 비판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능력을 계발하거나 발휘하는데 실패하는 것은, 합리적으로 자기이익을 추구하는 개인 자신으로 하여금 자신의 합의 준수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없게 한다. 그런 경우에 계약 자체가 비합리적인 것으로 보일지도 모르지만, 정말 비합리적인 것은 바로 다른 사람의 진실성 여부를 파악하는 능력을 계발하거나 발휘하는데 실패하는 것이다. 이는 “남들 다 지키지 않는데 나 혼자 지키면 뭐하나”하고 덩달아 합의를 위반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 아니라, 합의를 지키지 않는 사람을 규제함으로써 합의를 지키는 자신의 이득을 잃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뜻이다.

도덕성 혹은 시민성은 이런 의미의 합리성과 양립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진실된 협동자와 그렇지 못한 사람을 구별하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하는데 실패하기 쉽다. 물론 ‘현명한 악인’이 협동적 계약의 준수를 교묘하게 위반함으로써 큰 이득을 보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런 사람들이 현명한 사람으로 간주되고 지지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들의 감언이설에 넘어가지 않는 합리적 이기주의자들에 있어서는 ‘현명한 악인’은 단지 ‘똑똑한 바보’에 불과하다.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의 과제

시민사회는, 이익추구를 긍정적으로 규정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이익과 조화를

이를 수 있게 하는 요소 즉 합의의 필요성과 그 준수의 요건 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게 하는데 주안점을 두는데 그 특징이 있다. 시민사회가 각자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개인들로 이루어진 사회이긴 하지만, 이익 추구 그 자체에서 끝나는 것은 ‘만인 대 만인의 투쟁’이라고 하는 이른 바 ‘자연상태’로 치달게 되어, 시민사회의 존립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든다. 그리하여 자연상태를 극복하고 ‘사회상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익 추구에 대한 일정한 제약이 불가피하며, 이를 기본적인 합의사항으로 받아들일 때 진정한 사회가 형성·유지될 수 있다. 따라서 시민사회의 윤리로는 근시안적 이기주의가 아니라 합리적 이기주의가 권장되어야 할 것이다.

청소년의 시민의식을 함양함에 있어서도, 자기이익 추구를 무조건 부정적으로 규정하고 항상 이타적인 행동을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을 뿐 아니라, 정당하게 자기이익을 추구하는 활동마저 비도덕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오류를 범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 자기이익 추구 자체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극단적인 자기이익 추구가 문제임을 분명히 하고, 그같은 극단적인 자기이익 추구가 각자의 이익 추구에 기초해 있는 오늘날의 사회를 오히려 무너뜨리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기에 일정한 제약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야 할 것이다. 물론 그같은 제약은 각자의 장기적인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것임도 아울러 지적해야 할 것이다. 시민성 함양 교육이 중점을 두어야 할 부분은, 도덕성 좁게는 시민의식을 고취함에 있어서, 법과 도덕을 준수해야 하는 이유가 개인 자신의 장기적인 이익을 위한 것임을 분명히 하며, 또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장치로서 시민 공동체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아울러 그러한 공동체를 만들고 참여하는 경험을 길러주는데 있다.

이를 세분해서 보면 우선 환경적 요소에 있어서는 도덕적 행동을 할 기회를 갖고 직접 참여하며 그에 대한 보상이 주어지고, 반대로 비도덕적 행동에 대한 처벌이 가해지는 것이 무엇보다 실제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는 다른 요소에 비해,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과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해야만 가능한 일이다. 다음으로 인지적 요소에 있어서는 자신의 행동 결과와 행동의 대안, 역할 등에 대한 ‘이해’가 특히 중요한 요소로 보인다. 정의적 요소에서는 타인 배려나 감정이입과 같이 ‘타인의 입장에서 볼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행동능력 중 의사소통기술과 타협능력은 합리적 이익 추구에 기초한 시민교육의 과제인 시민공동체 결성과 참여에 커다란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요소들을 고려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즉 “왜 도덕적이어야 하는가” 혹은 “왜 규범 - 법과 도덕 - 을 지켜야 하는가”라는 물음에 대해, 그 근거 혹은 이유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물론 합리적 시민에 있어서 규범 준수의 최종적인 근거는 개인 자신의 장기적인 이익이 될 것이다. 규범의 근거 혹은 이유를 이해하게 하는 것 중 가장 기본적인 것은, 규범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의 결과를 예상해보도록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약속’이라는 규범에 대해 그것을 준수해야 하는 이유로, 우리가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어떤 결과를 가져오겠는가를 생각해보도록 한다. 즉 자신이 나 타인의 행동 결과와 행동의 대안, 역할 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 때 단순하게 “약속을 어기면 어떤 결과가 오는가”라고 묻기보다는 구체적인 사례를 드는 것이 명확한 이해에 더욱 도움이 될 것이다. 아주 간단한 예로, ‘시민정신’을 논할 때 흔히 등장하는 줄서기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즉 당장에는 다소 불편하더라도 그 불편을 감수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나’를 포함한 모두가 편리함(이익)을 누릴 수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다. 아울러 줄서기를 위반하는 것은 합의 즉 사회적 약속을 위반하는 것이며, 이는 곧 준수하는 사람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준수하는 사람들이 위반하는 사람들을 엄격하게 규제해야 한다는 점도 지적해야 할 것이다. 만일 줄서기를 위반하는 사람에 대해 “귀찮으니까 내버려두자”고 한다면, 이는 자신의 이익이 침해되는 것에 대해 규제할 의사가 없는 것이므로 자신의 장기적인 이익에 관심이 있는 합리적 시민이라고 할 수가 없다.

그리고 환경과 행동능력 모두와 관련해서, 실제로 체험해 보는 연습의 기회가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이 중 실천적 측면이라 할 수 있는 공동체 참여 운동의 한 예인 ‘체험훈련’은, 도덕 그리고 최소한의 도덕으로서의 법을 잘 지키고 또 이를 위반하는 사람을 규제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도덕과 법을 지켜서 이득이 되는 경험을 갖게 해야 한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이러한 가정에 기초한 체험훈련이 실제에 있어서도 상당한 효과를 지닌다고 한다.

그리고 이런 방법들을 적용함에 있어서 병행할 만한 것으로 ‘귀납적 방법’이 있다. 귀납적 방법이란 비도덕적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피해를 주는가를 지적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위증이 왜 잘못된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적절한 답은, 위증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피해를 주는가에 대한 설명이 될 것이다. 합리적 이익 추구하고 관련하여 귀납적 방법을 생각해 보면, 일정한 도덕적 제약에 따르지 않는 행동들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피해를 주는가 그리고 나아가 장기적으로 자

신에게도 어떻게 손해가 되는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이 경우에 있어서 나의 비도덕적 행동이 타인에게 어떤 피해를 주는가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비도덕적 행동이 나에게 어떤 피해를 주는가 하는 것까지 고려하여야, 다른 사람의 비도덕적 행동을 규제함으로써 자신이 피해를 입지 않으려 할 것이다.

그런데 이상에서 본 여러 방법들은 각기 환경, 인지, 정의, 행동, 인성적 측면으로 구분해서 본 것이긴 하지만, 그같은 구분이 아주 엄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즉 이들 여러 방법은 도덕적 행동을 하게 하는 요소들을 여러 측면에서 조명해보고 그들 요소에 적합한 방법들을 제시한 것이긴 하지만, 도덕적 행동을 하게 하는 요소들이, 그 구분에도 불구하고, 엄격히 분리될 수 있는 것이라기 보다는 함께 작용해야 할 것이라고 할 때, 위에서 언급한 여러 방법들도 함께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결론

바람직한 시민생활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은 건전한 시민윤리를 갖게 한다는 것이다. 건전한 시민윤리는 한편으로는 좋은 품성을 갖는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서로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규범에 합의하고 이를 준수하며, 나아가 그러한 환경을 조성하는 실천적인 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역량이다.

그런데 전통적인 교육은 이러한 두 요소 중 어느 하나에 치우침으로써, 시민성 함양이라는 목적 달성에 성공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 즉 이들 입장은, 한편으로 일방적으로 행동을 요구함으로써 행위자 개인에게 설득력을 갖기 어렵거나, 다른 한편으로 판단능력 함양에 치우침으로써 행동의 문제를 간과함으로써 행동을 유발시키는데 소홀하였음을 부인할 수 없다.

기존의 시민성 함양 교육이 성공했다고 보기 어려운 이유는, 도덕원칙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것보다는, 행동의 유발에 소홀했던 것에 있다. 즉 덕목을 강조하면서도 이를 일방적으로 제시하였거나 원칙을 중시하면서도 판단력 함양에만 치우쳤다. 오늘날의 교육이 특히 중점을 두어야 할 부분은, “우리가 그리고 내가 왜 도덕적이어야 하는가”하는 이유, 특히 행동을 유발하기에 충분할 만큼 각자의 동기에 잘 부합되는 이유를 제시하고, 그에 따른 행동을 유도하는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

행위의 동기에 있어서는 개인의 이익 추구가 일차적인 요소가 된다. 도덕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 나아가 사회를 전제하고 있다는 점과 관련하여, 우리가 상정하고 있는 사회는 기본적으로 시민사회이며, 시민사회는 자신의 행복과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긍정되는 사회이다. 물론 개인의 이익도 사회 속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 자기이익의 한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상호결합이 불가피한 시민사회에서의 윤리는 각자의 이익에 바탕을 둔 이해관계 조정의 원리이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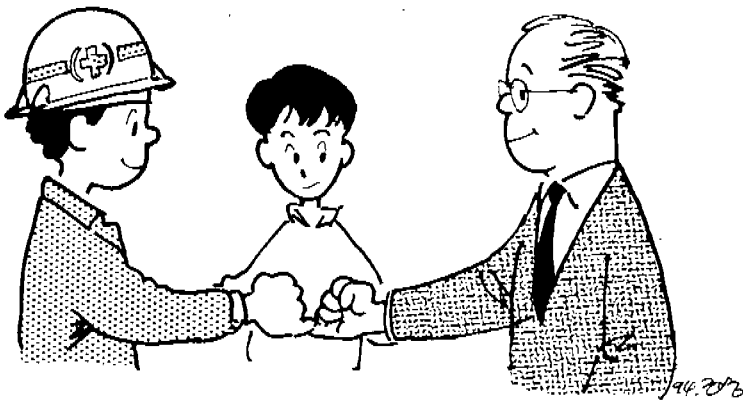
시민사회라고 해서 옳기 때문에 옳은 일을 한다든지 사회전체의 복리증진을 위해 행동한다든지 해서는 안된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전통적인 덕목들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은 시민사회에서, 모든 사람에게 그같은 행동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이다. 즉 “내가 왜 도덕적이어야 하는가”라는 물음에 대해 “마땅히 그래야 한다”든지 “사회 전체를 위해서”라는 답변을 제시할 경우 이에 만족할 수 있는 개인은 많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시민사회의 윤리로서 적합한 도덕원칙의 탐색은 ‘개인의 이익 추구’라는 요소를 전면에 내세워야 한다.

물론 개인이건 집단이건 지나친 이기주의는 분명 사회전체에 나아가 당사자 자신에게도 부작용을 초래한다. 그러나 개인의 이익 추구 그리고 이를 정당한 것으로 주장하는 이기주의는 근세 이후의 시민사회를 받쳐온 윤리관의 기본적인 출발점이며, 그리하여 이기주의 그 자체는 비판되거나 부인될 대상이 될 수 없다. 문제는 우리 사회가 시민사회로서 아직 충분히 성숙하지 못함으로 인해, 개개인이 이익을 추구하는 방식이 비합리적인 경우가 많고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규칙에 익숙하지 못한데 있다. 즉 근시안적 이기주의가 문제되는 것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기심을 타파하거나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이익 추구가 정당함과 동시에 일정한 한계를 지니며 그에 따른 제약의 필요함을 인식하고 그 방식을 찾는 일이다.

각자의 이익 추구에 대한 조정에 개인들이 합의를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개개인의 이익 추구가 타인의 이익 추구에 저해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수행되어야 하며, 이를 충족시키는 도덕원칙을 ‘합리적 이기주의’라 한다. 개개인이 합리적 이기주의를 받아들여 따를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도 자신과 마찬가지로 자기이익 추구에 대한 일정한 제약을 받아들인다는 보장이 있어야 한다. 그것은 보장은 한편으로는 공정한 제도에서, 다른 한편으로는 개인들이 자율적으로 시민공동체를 결성하고 이에 참여하는데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합리적으로 자기이익을 추구하는 시민을 기르고자 하는 학교 교육이 중점을 두어야 할 부분은, 바로 규범을 준수해야 하는 이유가 장기적인 자기이익 보장에 있으며 이를 위한 장치로서의 시민 공동체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그러한 공동체를 만들고 참여하는 경험을 길러주는데 있다.

바른 시민생활 인식하기



시민-민주사회의 주인
색을 알면 민주주의가 보인다
바른 시민이 되는 길
세계의 민주주의

시민 — 민주사회의 주인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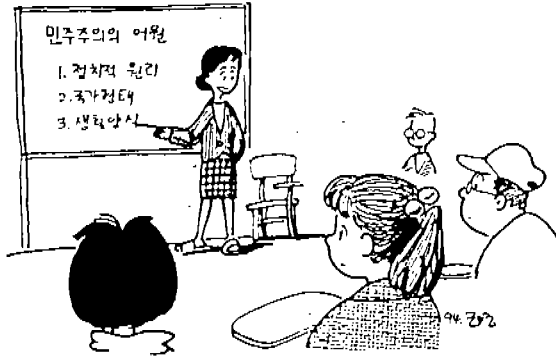
바른 시민생활은 곧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사회에서 한 구성원으로서 권리와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을 근간으로 한다. 아무래도 시민이 무엇인지를 인식하는 활동은 다른 활동과는 달리 강의와 토론을 통해 많은 부분이 구성될 것이다. 따라서 이 활동에서는 시민에 대한 정의를 배울 때 수강태도와 토론방식에서 바른 시민성향을 느끼고 발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겠다.

활동목표

시민에 대한 개념을 인식하고 강의 수용과정과 각자의 의견 수렴과정에서 발생하는 비민주적인 방식을 수정하면서 자연스럽게 민주적 시민태도를 함양하고 청소년들이 자신들이 느낀점을 정리하여 중요성을 실천할 수 있는 토양이 되도록 한다.

활동과정

▷ 민주시민에 관한 강의를 듣는다.



▷ 강의를 통해 인식한 내용을 토론한다.



▷ 민주시민 덕목표를 만들어 본다.



활동내용

과정 1 시민성에 대한 강의

- 강의를 두가지 주제로 나누어서 진행한다. 첫번째 주제는 민주주의의 어원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시민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사회를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바른 시민생활을 권장하기 위해서 민주주의의 어원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 어원은 보통 세가지 측면에서 고려될 수 있다(정치적 원리, 국가형태, 생활양식). 두번째 주제는 시민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것이다.
- 청소년을 두 편으로 나누어 한편은 강의만 경청하고 다른 한편은 잘 정리하여 강의를 끝난 후 서로 비교할 수 있게 한다.

〈민주주의의 어원〉

민주주의(democracy)라는 단어는 프랑스어 ‘democratie’를 16세기에 영어로 차용한 것이지만 그 근원은 그리스어에서 찾아볼 수 있다. 민주주의는 그리스어 ‘demokratia’에서 파생된 말로 ‘demos’(인민)와 ‘kratia’(지배)의 합성어이다. 민주주의란 왕정이거나 귀족제와는 달리 국민이 지배하는 정치형태를 의미한다.

과정 2 시민성에 관한 토론

- 시민에 대한 강의를 바탕으로 청소년들이 인식한 바를 논의한다.
- 각 모둠을 6-8명으로 구성하고 둘이나 세모둠을 모아서 다시 큰 집단을 형성할 수 있다. 모둠의 수는 주제의 종류에 따라 동일하게 정한다. 활동 1의 민주주의 어원에 대한 주제를 예로 든다면 정치적 원리모둠, 국가형태모둠, 생활양식모둠으로 구성하여 40분정도에 걸쳐 각각 토의하게 하고, 모두 모아서 민주주의 어원의 차이와 평을 토의하게 한다.
- 모둠토의가 끝난 후 30분동안에 청소년 자신이 이 활동을 통하여 인식한 것에 대하여 정리하여 발표하게 한다.

- 활동 자체가 민주적이어야 하므로 지도자나 보조 지도자는 가급적이면 활동의 진행을 지도하거나 판단을 하지 않는다.

과정 3 시민덕목표 만들기

- 청소년을 크게 두편으로 나눈다. 한편은 강의와 토론 이전과 이후의 인식의 차이를 비교하여 청소년이 인식하고 실천하여야 할 민주덕목표를 만들고 다른 한편은 전통문화를 현대에서 되살릴 수 있는 민주적인 요소를 중심으로 덕목표를 만든다.
- 이러한 활동과정 후에 편이 모두 모여 두가지 덕목표를 합쳐 보다 포괄적인 민주덕목표를 만들어 본다. 여기서 예상되는 결과는 전통적인(또는 한국적인) 요소와 강의와 토론을 통하여 얻어진 인식을 종합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덕목표 예시〉

강의와 토론전의 인식	강의와 토론후의 인식
의무만 강조 생활양식만 강조	의무 및 권리 생활양식 및 참여형태

전통사회의 비민주적 요소	전통사회의 민주적 요소
1. 유교의 윤리규범 : 권위주의, 전제군주사상, 정치적 무관심 2. 가족주의 전통 : 정실주의, 연고주의, 분파주의	1. 홍익인간사상 : 대동주의, 덕치주의 상호존중, 평화의 화합, 보편주의 2. 실학사상 3. 구한말의 개화의식

	전통문화의 민주주의 성격	전통문화의 비민주적 성격
토론과 강의전의 인식		
토론과 강의후의 인식		

유의사항 ▷ 지도자는 수용적이고 비심판적이어야 한다.

- ▷ 청소년 의견의 다양성을 격려하고 절대적으로 옳고 그른 정답이 없음을 주의시킨다.
- ▷ 가능하면 참석을 원칙으로 하되 참석여부에 대하여 개인적 선택을 중시하고 강요하지 않는다.
- ▷ 청소년 개인적인 반응을 중시한다.
- ▷ 정직한 대답을 격려한다.
- ▷ 청소년과 더불어 질문을 듣고 명료화하는데 도움을 준다.
- ▷ 위협적이거나 사고를 제한하는 어떠한 질문도 피한다.
- ▷ 개인과 사회에 대한 다양한 주제를 정하고 질문을 유도한다.
- ▷ 위의 지도자에 대한 유의사항은 이 후 모든 활동에 적용하도록 한다.

참 고 프리만 버츠의 민주시민 12개 덕목

현대 민주시민에게 요구되는 12가지 시민성			
통합성 : 시민적 의무 다원성 : 시민적 권리			
통합성의 타락형태	진정한 통합성	진정한 다양성	다원성의 타락형태
법과 질서	정의	자유	무정부
강요된 동질성	평등	다양성	불안정한 다원성
권위주의 전체주의	권위	사적 자유	사적 자유주의
다수지배	참여	의무	범인에 관대
미혹된 진리	진리	재산	인권보다
진리에 흡사한 오류			재산권 우위
국수주의	애국	인권	문화적 제국주의
민 주 시 민 성			

헌법전문과 민주주의 관련조항

□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 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 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1987년 10월 29일

□ 민주주의 관련조항

제1장 총 강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2조 ①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②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제5조 ①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

을 부인한다.

- ②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제 6 조 ①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 ②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제 7 조 ①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②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 8 조 ①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 ② 정당은 그 목적,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 ③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 ④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제 9 조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색을 알면 민주주의가 보인다

개 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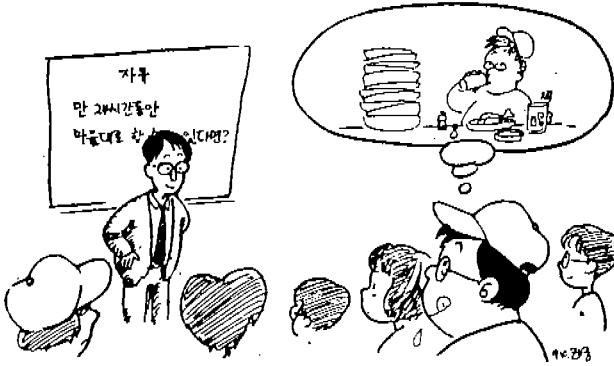
민주주의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불란서 대혁명때 표방된 자유, 평등, 박애의 세 원칙을 인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대다수의 민주국가들이 이와 유사하거나 같은 이념을 민주사회의 대원칙으로 내세우고 있기에 기본이념을 인식하고 청소년의 생활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기초를 배양하는 것이 바른 시민생활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활동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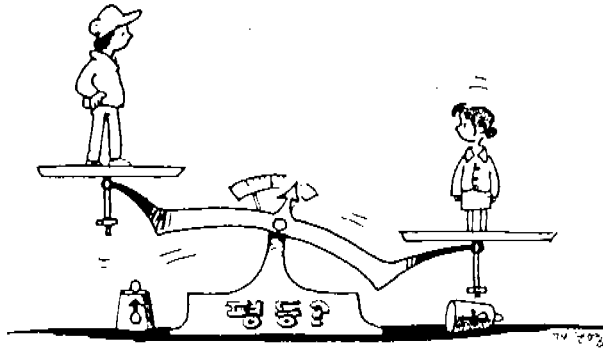
시민에 대한 개념을 인식하고 강의 수용과정과 각자의 의견 수렴과정에서 발생하는 비민주적인 방식을 수정하면서 자연스럽게 민주적 시민태도를 함양하고 청소년들이 자신들이 느낀점을 정리하여 중요성을 실천할 수 있는 토양이 되도록 한다.

활동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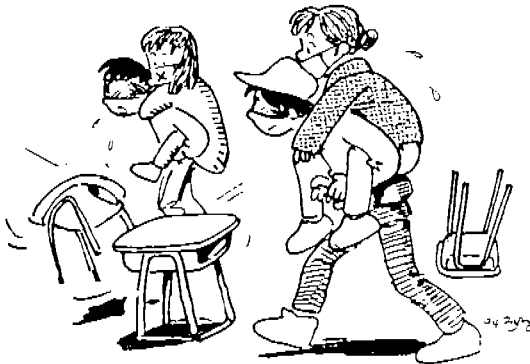
▷ 자유로운 행동에 관해 토론한다.



▷ 남녀평등에 관한 의견을 발표한다.



▷ 박애사상의 실천을 위해 장애체험 게임을 한다.



활동내용

과정 1 파랑색 — 자유로운 행동에 관한 토론

- 청소년을 6-8명씩 여러 모둠으로 만든다.
- 다양한 주제를 청소년에게 주고 토론을 시킨다. 주제에 대한 예는 ‘돈 없이 데이트하는 방법은’, ‘만 24시간 동안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어떻게 보낼 것인가’ 또는 ‘만약에 초능력이 있다면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등이 될 수 있다.
- 40분 가량 시간을 준 후 20분 가량 느낀 점을 정리하게 하고 발표시킨다.
- 지도자는 자유라는 것과 연관지어 청소년들이 인식을 정리하여 준다.

과정 2 흰색 — 남녀평등에 관한 발표회

- 지도자는 학교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는 청소년을 발표자로 선발한다. 가능하면 남녀가 같이하는 동아리가 좋다. 따라서 발표자의 수에 따라 모둠을 나누는데 각 모둠은 최소한 5명 이상이어야 한다.
- 여자가 발표자인 경우에는 자기가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여자기 때문에 겪은 애로사항을 20-30분에 걸쳐서 이야기한다. 남자인 경우에는 자신이 느끼는 여자의 고충에 대하여 이야기한다. 각 모둠 구성원은 각 발표에 대하여 논의를 하고 남녀 불평등의 문제점을 정리하여 전체가 다시 모여서 발표를 한다. 이때 청소년들 스스로가 100점만점의 평등점수가 있을 수 있으면 자신은 몇점을 맞을 수 있는가를 표현해 본다.
- 활동이 끝난 후 지도자는 어떤 발표가 가장 인식의 전환에 기여를 하였는지에 대하여 청소년에게 들려주면서 정리한다.

과정 3 빨강색 --- 박애실천을 위한 장애체험 게임

- 박애(사랑)는 실천가능한 수준으로 구체화시켜서 장애자의 애로 점을 인식하는 활동을 전개한다.
- 두 사람씩 짝을 지어 한사람은 눈을 가리고 다른 한 사람은 입을 가린 후 눈을 가린 사람은 입을 가린 사람을 엮는다.
- 반환점을 돌아서 출발점으로 돌아오는 게임인데, 엮힌 사람은 말 이외에 가능한 방법을 동원하여 엮은 사람을 인도한다.
- 실외에서 실시될 때는 너무 험한 지형이나 가파른 곳은 피한다. 여름에 수영장 등에서 행하거나 실내에서 할 때는 피할 지형지물을 설치한다.
- 먼저 들어온 모듬이 우승이지만 가장 민주적으로 활동한 모듬에게 특별상을 줄 수 있다.
- 게임이 끝난 후 서로 느낀 점을 10-20분간 이야기 한다.
- 보조지도자는 만약의 사고에 대비하여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다.

유의사항 ▷ 논쟁이 서로를 비하하거나 비방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참 고 자유

□ 형식적 자유

소극적 자유라는 관념이 절대적으로 구속이 없는 것과 관련된 자유일 것이라는 상상을 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그러나 함축적으로 그러한 자유는 실제로 매우 드문 것임에 틀림 없다. 구속으로부터 절대적으로 자유로운 사람이 단 한 사람 있었다고 가정해 보자. 만일 한 사람이 도로 왼쪽으로 운전하고자 했다면 그 사람은 그렇게 하기 위해 자유로와야만 한다. 만일 다른 사람을 해치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렇게 하도록 자유로와야 한다. 그러한 자유는 거의 드문 것이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자유를 행사함으로써 다른 모든 사람들이 구속받기 때문이다. 만일 한 사람이 양쪽 도로로 계속해

서 자유롭게 운전하고 있다면 아무도 도로의 어느 쪽으로도 안전하게 운전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전통적인 대답은 소극적인 자유가 모든 이에게 절대적일 수 없으며, 따라서 모두에게 공평하게 절대적인 자유를 가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모든 사람은 약간의 구속에 종속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사람들을 어떻게 구속할 것인가? 전통적인 대답은 두 가지인데, 그 첫째 것이 평등주의이다. 평등주의적 사고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동등하게 간주되어야 하고 동등하게 구속받아야 한다. 즉 누군가 주어진 환경에서 기존의 방식으로 계약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평등주의적 주장은 보편화의 원칙에 따르고 있는 생각이다.

전통적인 대답의 절반인 두번째는 모든 구속의 정당화가 보편적으로 적용되어야 하고, 그것은 자유를 최소화하기 보다는 최대화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복잡한 교차로에서 교통안전정책의 신호등이 2내지 3초 동안 양쪽 방향에서 빨간 색이라고 생각해 보자. 이러한 상황에서 모든 사람은 유사하게 구속받는다. 그러나 만일 두개의 빨간 불이 없었다면, 혹은 빨간 불이 60초동안 지속되었다면, 애매하게 모든 사람이 비슷한 구속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얼마 동안 두개의 빨간 불을 지속시킬 것인가? 여기에서 우리는 자유의 최대화하는 개념을 사용할 수 있다. 두개의 빨간 불이 없다면 많은 교통사고가 발생할 것이다. 차는 손상되고 사람은 죽거나 다칠 것이다. 사람과 물건에 대한 이러한 피해는 그것 자체가 자유의 구속이다. 그 때에 두개의 빨간불의 정당성은 그것이 많은 사고를 줄임으로서 자유를 증가시킨다는 데 있다. 그러나 빨간 불이 3초보다 더 많은 10초동안 지속되었다면 자유는 아마도 증가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이 될 것이다. 한편으로 모든 자동차 운전자와 보행자는 각각의 빨간 신호등에서 추가된 7초 동안 움직이는 것에 구속을 받을 것이다. 따라서 10초 동안의 두개의 빨간 신호등이 사람들의 자유에 미치는 순수 효과는 감소할 것이다. 왜냐하면 교통사고를 더 줄이는 데 실패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빨간 불에서 구속받는 시간이 증가될 것이기 때문

이다.

추상적으로 자유의 최대화 개념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설사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작용한다 할지라도 모든 구속은 사람들의 자유를 구속한다. 자유의 구속에 찬성하는 주장은 평등주의적 방식으로 행해지기 때문에 간단히 편할 뿐만 아니라 두 개의 빨간 신호등을 기다릴 때 자유를 잃어버렸다고 보다는 더 적은 교통사고와 더 많은 자유를 신장시켰다고 한다. 이 때의 자유의 최대화 개념은 구속 보다는 최대로 적극적인 조화의 자유개념이다.

형식적으로 자유에 대한 정당화는 개인의 소극적 자유에 대한 구속이 평등하면서 자유를 최대화하거나 자유의 순수 신장을 초래하는 한에서 가능하다는 것이다.

법 앞에서 평등한 자유는 형식적인 자유라고 불린다. 이 자유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구속을 적용한다는 법률이 통과하면서 성취되었다. 많은 다른 사람들이 아닌 약간의 사람들을 구속하는 법률은 모든 사람들에 형식적 자유를 창출하여 주기보다는 오히려 특권 계층의 사람들을 창출하게 된다. 이러한 특권은 어떤 사람들이 이용당한 사람들을 법적 수행에 면역되도록 유지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취하도록 허용해 준다. 인종, 부, 종교, 성, 국적, 나이, 성숙, 전문가적 기술, 귀족적 세습, 그리고 직업은 때때로 불평등한 법 체제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사용되어졌다. 때때로 사회의 일반적인 선은 법적 권리나 형식적 자유라는 측면에서 사람들을 다르게 대할 것을 요구한다. 예를 들어 살인을 금지하는 법률을 정부가 충실히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람을 죽이게 될지도 모르는 자기 나라 비밀 요원에게 살인 금지법을 적용하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 한 사례연구에서 총장의 아들인 레드포드 스미드는 대학에 의해 특권을 부여받았다. 이 특권은 등록할 때 유리한 점으로 주어졌다. 아마도 등록자들은 그것을 총장에게 말하지 않고 행했고, 그것은 특별한 방법으로 총장의 가족을 대우하는 학교 전통이었을 것이다. 이유야 어떻든 이 특권은 대학에 입학한 사람들의 소극적 자유를 불평등하게 구속하는 것이다. 평등주의적 고찰은 구속의 부과를 유도할 뿐만 아니라 특권을 폐지하는 것도 유도한다. 따라서

소극적 자유를 제한하기 위한 정당화는 구속과 모든 사람을 위한 평등한 구속 두 가지 모두를 목표로 한다.

□ 실제적 자유

법 앞에서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구속을 적용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삶에서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탁월한 능력을 지녔고, 또 어떤 사람들은 더욱 부자인 가정에서 태어났으며,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사고나 병에 의해 장애가 된다. 자유롭고 개방된 시장이 수요자에게 자유로운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며,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만큼 물건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개인의 재정원이 제한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쉽게 살 수 있는 것에도 한계가 있다. 형식적인 자유는 가난, 무지, 그리고 다른 형태의 불평등한 기회와 관계가 있다.

두 가지 가능한 사회적 목표는 실제적인 자유를 증가시키거나 평등하게 하는 것이다. 실제적인 자유란 그 목표가 무엇이건 간에 개인의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수단을 소유하는 것이다. 실제적인 자유를 증가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사회 정책은 많이 있다. 인종적 혹은 성적 할당 인원수 제도, 평등한 교육기회를 성취하기 위한 학교의 인종차별 폐지와 버스통학, 등급 매겨진 수업세율, 그리고 장애인, 실업자, 가난한 사람을 위한 특별세 면제나 감면과 같은 고용에서 평등을 요구하는 법규, 복지법규, 긍정적 행동 법규는 여러 방법들 중에서 실제적인 자유를 달성하고 평등하게 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소유권과 계획으로 사기업을 교체하는 작업은 사회주의 국가에서 더욱 빈번하게 사용되는 수단이다.

차등 조세 제도와 위에서 언급된 법규와 다른 방침을 찬성하는 주장은 모든 시민들에게 최소한도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정부가 더 많은 이익을 누리는 시민들의 자유를 약간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주장은 모든 사람들을 부, 기술, 건강 등과 같은 데서 동등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사회 속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기본적인 최소 수준의 실제적 자유를 달성

하기 위해 필요한 정도만큼만 더 많은 이익을 가진 사람들의 소극적 자유에 제한을 두는 것이다.

소극적인 자유를 제한하기 위한 이러한 정당화를 주창하는 약간의 사람들은 다른 부류의 실제적인 자유를 성취하려는 정부의 열의로서 이익을 누리는 사람들을 최소 수준 이하로 내려가게 만들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다른 사람들은 때때로 정부가 이전에 불공평한 불이익을 받아온 사람들에게 형식적 평등을 초월하는 특별한 이익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고용에 있어서 역으로 구분하기 위한 실체는 더 많은 자격을 가진 사람보다는 자격을 덜 가진 소수 사람을 고용할 수도 있어야 한다. 그것은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의식적인 노력이며, 그것을 정당화하는 주장은 그것이 사회 속에서 소수 사람들의 실제적인 자유를 개선하려고 할 것이라는 근거에 의거하고 있는 것이다.

때때로 실제적인 자유는 특정한 시민 법률로 통제되지 않는다. 그러한 것은 레드포드 스미드가 다니고 있는 대학에서의 학생들과 같은 경우로서 시험에서 성공할 수 있는 기회와 관련되어 있다. 레드포드가 입시에서 특권을 가졌던 것은 같은 반 학우들보다 유리함을 가져다 주었고, 이는 급우들 중에서 몇몇이 시험에 실패하는데 다소간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부정행위를 금하는 학교규칙은 시민 정부의 필수적인 법규와는 다른 것으로서 시험과 논문을 잘 하도록 동등하게 실제적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고안된 것이다. 전통적으로 미국에서 실제적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가장 중요하게 강조된 수단은 모든 시민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것으로서 특히 동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다. 잠시 동안의 반영은 소극적인 자유와 적극적인 자유 간의 강한 갈등을 암시적으로 보여 주었다. 재산, 자금, 혹은 기회가 부족할 때마다 실제적인 자유의 이러한 수단은 더 많은 이익을 지닌 사람들을 제한함으로써만 덜 이익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공급될 수 있다. 분명히 실제적인 자유를 추구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위한 소극적인 자유의 동등한 양과 관계되어 있는 소극적인 자유의 최대량을 가져야 한다는 단순한 생각과는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나 칼 맑스가 주장

했고 모든 나라의 가난한 사람이 직관적으로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최소한의 음식물 섭취를 하기 위한 돈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자유를 논한다는 것은 공허한 소리이며, 사치스러운 사람들보다는 훨씬 덜하지만 부유한 사람들은 자유를 추구한다.

□ 적극적 자유

소극적인 자유를 제한하게 하는 네번째 근거는 어떤 제한이 개인의 적극적인 자유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개인의 적극적인 자유를 증가시키려는 이 목표를 나타내기 위해 의무교육을 예로 들 수 있다. 사람들이 보다 이성적으로 결정하고 행동하도록 돕기 위해 고안된 법은 사람들 개인의 소극적 자유에 반대되거나 다른 사람들의 소극적 자유에 반대되는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 예를 들어 알려진 목인, 신용 대출, 공정 가격 등과 관련된 법률은 적극적인 자유를 위한 최소한의 기회를 증가시키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것들은 또한 사람들이 자신과 다른 사람들로 부터 손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는 목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더 많은 기존의 정보를 유용하고 정확하게 나타낸다면 사람들은 보다 이성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고 손해로부터 더 잘 피할 수 있으리라는 추측을 해 본다. 약물의 사용이나 소유를 규제하는 법은 사람들이 약물 때문에 합리성을 손상당할 때 일어날 수 있는 해로운 상황의 모든 잠재성을 피하도록 도우려는 데 부분적으로 목표를 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위에서 인용된 법률들은 좀더 충분한 정보에 근거하여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사람들에게 보장하는 한도 내에서만 적극적인 자유 개념을 지지한다. 더 직접적인 접근은 사람들에게 이성적인 기회를 보장하려는 시도와 사람들을 비이성적인 것으로부터 여러가지 방식으로 금지시키려는 것으로서의 법률을 초월하게 된다. 예를 들어 사람들에게 흡연의 위험을 경고하는 법률은 이성적 결정에 의거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들은 흡연을 하는 데서 삶의 의미를 느낀다는 사람들을 방해함으로써 합리성을 강요하려고 시도하지는 않는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법의

일부분에 적극적인 자유를 강제하는 경향이 있는 것은 정신 건강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설령 한 개인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있고, 또 그렇게 하리라는 현재의 위험이 분명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어떤 법률하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의지와 반대되는 정신적 관습을 행하도록 할 수 있다. 그러한 법률은 건전하지 못한 정신을 지닌 사람을 감금하도록 하고, 자유를 박탈함으로써 그 사람을 처벌하며, 그렇게 하여 그의 비밀적 행동과 관련된 것으로부터 그를 구속함으로써 적극적인 자유를 강화하려고 한다.

* 자료 : 피터 웨이시온 외 2인, 김교환 외 4인 역, 가치와 사회, 1992.

평등

인간의 존엄성을 표현하는 중요한 기준의 하나가 평등이다. 인간 존엄의 상태는 누구나 같은 인간으로 존중받고, 그에 상응하는 인격적 대우를 받을 수 있을 때에 보장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간의 역사를 더듬어 보면, 아주 오랜 옛날부터 평등한 사회를 건설한다는 것은 인간의 꿈이었다.

플라톤의 이상 국가나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 그리고 동양 사회의 무릉도원 등의 그 어떤 것도, 그 사회의 구성원은 누구나 구성원으로서의 존엄한 대우를 받는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다. 그러므로 인류사는 이러한 측면으로 볼 때 평등 사회를 만들려는 인간의 노력이 쌓여진 것이라고도 생각된다.

우리들이 다 아는 바와 같이, 공산주의는 평등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것을 가장 핵심적인 이념으로 삼고 있다. 그런데 공산주의의 평등 이념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등장했던 소련과, 소련을 추종했던 동유럽 여러 나라들은 평등을 찾기 위하여 다른 가치를 많이 희생시켜야 했다.

자유도 제한되고, 인권도 제한되었다. 그러다 보니, 궁극적으로 인간으로서의 존엄함을 찾기 위해서 평등 사회를 만들려 하였으나, 너무도 많은 것을 희생시킨 가운데 평등마저도 잃게 되고, 사회의

건강성을 잃게 되면서 급기야 자체 붕괴의 결말에 이르게 되었다.

*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 민주사회 민주시민, 1993.

박애

인간의 인격, 휴머니티를 존중하고, 각자 평등이라는 사상에 입각해서 인종, 종교, 습관, 국적 등을 초월한 인간애. 그리스의 비극작가 아이스킬로스는 신들을 사랑하는 것보다는 인간을 사랑하는 것을 philanthropia(인간애)라고 불렀다. 이것이 후에 박애를 뜻하는 말의 어원이 되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시학〉에서 극악인(極惡人)에 대해서까지도 느끼는 사랑의 아픔을 인간애라고 보고 있다. 또한 세계 시민주의를 주장하는 스토아 철학자들도 박애주의의 입장에 섰으나, 로마 시대에 들어와서 이 말은 〈humanitas〉로 번역되어 단순히 인간애라는 뜻만이 아니라 널리 교양을 나타내는 말이 되었다. 이것은 그 후에 이른바 휴머니즘적 이념을 뜻하는 것으로 변화되었다. 근대에 와서 휴머니즘을 배경으로 이 박애사상을 실현하려고 시도한 것은 18세기의 독일의 바제도였다. 그는 루소로부터 이어받은 교육 이념아래 범애학교를 설립하여(1774), 범애주의라고 불리는 박애주의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 교육이념은 페스탈로찌, 프리벨의 교육 이념으로 전개되었다. 〈박애〉는 정치적으로는 프랑스 혁명 때에 〈자유〉〈평등〉과 함께 혁명의 모토가 되었다. 한편 박애주의는 평화주의, 비폭력주의, 세계주의와 함께 톨스토이의 사상의 한 중심이 되었다. 간디의 무저항주의, 슈바이처의 삶의 외경의 배경에서도 박애사상을 엿볼 수 있다.

* 자료 : 동아출판사, 동아대백과사전, 1989.

바른 시민이 되는 길

개 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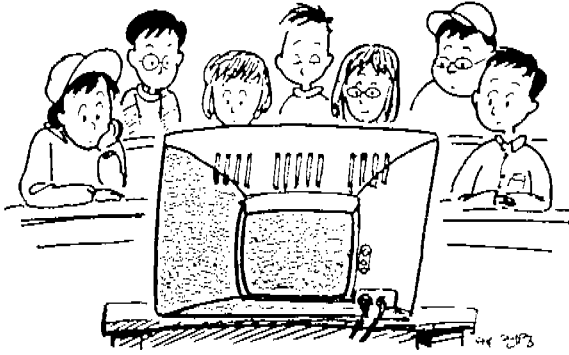
바른 민주생활의 궁극적인 목표는 실천이다. 따라서, 시민으로서의 자질과 민주주의 개념의 인식을 바탕으로 민주사회의 유지와 발전을 꾀할 수 있는 몸매 밴 실천을 위한 바람직한 행위를 인지할 수 있도록 활동이 구성될 것이다. 청소년이 어리고 아직 배우는 단계에 있다고 소극적인 시민 측면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 활동에서는 적극적인 측면도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활동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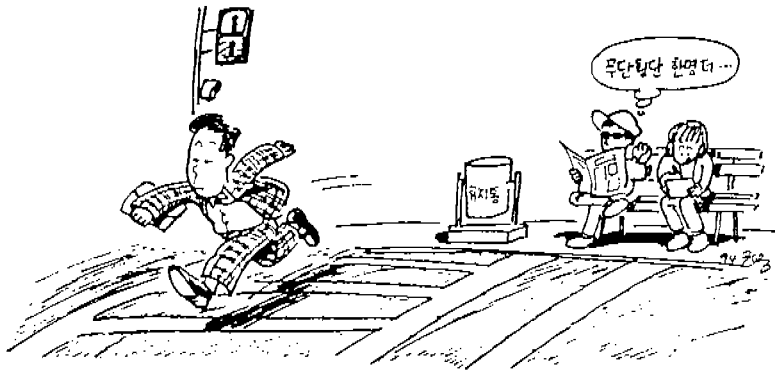
인식의 전환을 가져올 수 있도록 비디오를 보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유지를 위한 민주질서 준수와 나라마다 다른 정치제도를 인식해본다.

활동과정

▷ 바른 시민생활에 관한 비디오를 시청한다.



▷ 거리의 교통질서를 살펴본다.



▷ 다른 나라의 정치제도를 조사한다.



활동내용

과정 1 시민관련 비디오보기

- 시청각 자료는 범주별로 보면 2가지가 있을 수 있다. 첫번째는 흔히 고려할 수 있는 유형으로 바른 시민이라는 주제를 부각시키는 전형적인 교육적인 것이고, 둘째는 TV에서 사회적 인식을 재고시키는 심층취재의 방송프로그램이다. 그 구체적인 예들은 아래와 같다.
- 비디오 시청에 들어가기 전에 바른 시민에 대하여 떠오르는 개념을 청소년들 각자 적도록 한다.
- 시청이 끝난 후 시민에 대한 개념을 다시 적고 전과 어떻게 생각이 바뀌었는 지에 대하여 토의한다.

〈비디오 예시〉

- 첫째 범주 :

— 민주주의 연습 신나요

제작 : KBS

제작년도 : 1993

상영시간 : 60분

내용 : 1993년 4월말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맞추어 새로운 개혁시대의 선거문화 방향을 제시한다. 특히 각급 학교선거, 각종 단체와 기관에서 실시 되고있는 선거양상을 집중추적, 밝은 선거문화를 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시키고자 한다.

— 민주주의 이념과 생활방식

판매 : 삼화프로덕션

제작년도 : 1991

상영시간 : 30분

내용 : 자유, 평등, 사회정의가 조화를 이루어 인간의 능력과 개성이 존중되고 이성을 근간으로 협동이 이루어지며 공공복지 및 법질서가 확립되어 다수와 소수가 함께 공존하는 사회가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사회인 것이다.

• 둘째 범주 :

PD수첩(MBC)이나 추적60분(KBS) 등의 심층취재 프로그램을 구매하거나(각 방송사에서 판매하고 있음) 지도자가 필요에 의해 미리 녹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여기서 조심하여야 할 것은 프로그램 자체가 갖는 비민주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지도자는 편집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것이다.

과정 2 거리질서 관찰하기

- 청소년을 크게 두 편으로 나눈다. 한편은 보행자의 질서를 관찰하고, 다른 한편은 운전자의 운전질서를 관찰한다. 관찰 시간은 차량의 통행이 많을 때 한시간 가량과 비교적 적을때 한시간 가량 2회로 한다.
- 지도자는 안전운전과 보행에 관한 수칙을 강의한다.
- 보행자관찰은 세모듬으로 나뉜다. 첫째 모듬은 건널목에서 신호대기할 때의 행위를 관찰한다. 관찰할 사항은 ‘차도에 내려와 있는지 여부’, ‘침이나 담배꽂초 버리는 행위’ 또는 ‘신호대기에 대한 불평’ 등이다. 둘째는 건널목을 건널때 ‘좌측통행은 하는지’, ‘건널목을 벗어나서 보행하고 있는지’ 또는 ‘보행신호가 끝날때 급하게 건너는지’를 살펴본다. 마지막 모듬은 건널목 이외에 무단횡단하는 사람을 관찰한다. 성별과 시간당 숫자 및 연령층을 조사한다.
- 운전자관찰조는 네 모듬으로 구성된다. 첫째 모듬은 교통신호 준수 여부를 관찰하고, 둘째 모듬은 건널목에서 안전선에 정차하는지와 보행신호중 통과여부를 감시한다. 세째 모듬은 지정된 곳에서 안전하게 U턴이나 좌회전을 하는지를 본다. 마지막 모듬은 차선준수와 경적기 사용에 대하여 기록한다.
- 관찰기록을 가지고 청소년이 느낀 점을 발표시킨다. 지도자는 발표

를 할 때 시간별, 연령별, 성별 또는 유형별로 정리하면서 인식정도를 강화시킬 수 있다.

과정 3 다른 나라 정치제도 조사하기

-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나라는 여론에 근거한 정당정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이 활동에서는 민주주의의 꽃을 처음 피운 영국, 봉건제를 타파한 불란서대혁명의 전통을 자랑하는 프랑스, 현대의 민주주의의 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그리고 한국의 정치제도를 비교하여 그 차이점을 알아본다.
- 지도자는 모둠을 만들 때 각 6-10명 정도로 모둠을 구성하여 1시간 가량 시간을 주어 구성원에게 4개의 국가의 대표적 정당이름, 의회의 형태, 선거형태 그리고 국민의 직접참여의 수준 등을 조사하도록 한다.
- 각 모둠의 대표가 30분에서 40분에 걸쳐서 각 국가의 특성을 발표할 때 모두 비교 설명하지 않고 영국, 불란서 그리고 미국 등 각국과 한국의 차이를 설명한다.
- 각 국가간의 설명이 끝나면 지도자는 청소년으로 하여금 자신들이 인식한 장단점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 걸리는 시간은 지도자의 필요에 의해 30분에서 2시간으로 구성할 수 있다.

유의사항 ▷ 교통질서 관찰시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참 고 시민관련 비디오목록

- 건강한 사회(1991/총3편, 각 50분/KBS/판매)
- 건강한 사회 1부
개인윤리 — 정의로운 사람에게 용기를
개인주의, 집단 이기주의에 대한 분석, 어린이들의 우상은 누구인가. 집단민원을 중심으로 정의의 개념을 재정립
가정윤리 — 온 가족이 화목과 행복을

직업윤리 — 직분을 다하는 사람에 보람을

권력과 출세지향의 사회에서 자기 길을 걷는 장인들을 소개하는
다큐멘터리

• 건강한 사회 2부

사회윤리 — 질서를 지키는 사람에게 존경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부문별 무질서 점점 및 교통, 행락질서의
현장소개

국민윤리 — 나라 사랑하는 마음에 긍지를

자유, 책임, 권리, 조국의 진정한 의미를 현장 탐방사례와 강영
훈 적십자사 총재와 대담을 통해 알아본다.

○ 비민주적 생활방식과 생활태도(1990/50분/삼화프로덕션/판매)
1945년 해방후 민주주의에 익숙치 못한 우리는 자유와 방종을 구
분하지 못했고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를 착각했다. 편견이나 독선,
그리고 권위주의를 청산하고 서로의 자유와 권위를 인정할 때, 우
리의 민주주의는 발전하게 될 것이다.

○ 민주주의 이념과 생활방식(1991/30분/삼화프로덕션/판매)

자유, 평등, 사회정의가 조화를 이루어 인간의 능력과 개성이 존중
되고 이성을 근간으로 협동이 이루어지며 공공복지 및 법질서가
확립되어 다수와 소수가 함께 공존하는 사회가 민주주의가 실현되
는 사회인 것이다.

○ 민주주의 연습 신나요(1993/60분/KBS/판매)

4월말 국회의원 보궐선거 계기에 맞추어 새로운 개혁시대의 선거
문화방향을 제시한다. 특히 각급 학교선거, 각종 단체와 기관에서
실시되고 있는 선거양상을 집중추적, 밝은 선거문화를 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시키고자 한다.

○ 선진 시민사회(1994/총 3편 각60분/KBS/판매)

무엇이 선진사회이며 무엇이 그들을 풍요롭게 하는가에 대해 경제

대국 독일, 미국, 일본 국민들의 일상생활을 현지에서 취재한 선진
시민사회의 실체가 한사람 한사람 의 작은 실천임을 조명한 프로
그램

- 제 1 편 : 질서, 나부터 지킨다(60분)
- 제 2 편 : 많아도 아낀다(60분)
- 제 3 편 : 모두가 함께 산다(60분)

* 자료 : KBS영상사업단, 비디오가이드, 1994.

한국청소년연맹, 시청각 자료목록집, 1993.

세계의 민주주의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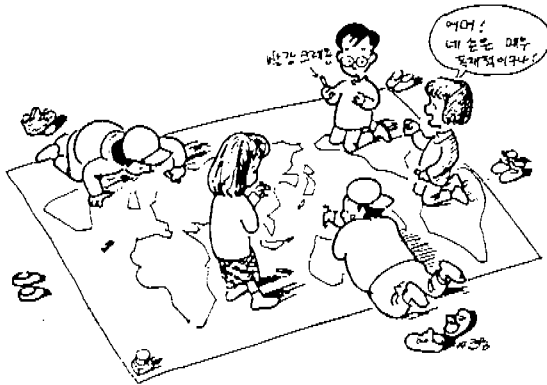
현대는 세계화와 국제화의 사회이다. 사람은 사회를 떠나서는 살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흐름에 동참하지 않고서도 살 수 없다. 청소년들이 사회속에서 권리와 책임을 다하는 것이 바른 민주시민의 자세인 것처럼 세계를 한 국가와 같이 생각하여 세계인으로서의 바른 시민생활이 무엇인지를 인식시킴으로써 적극적인 국제시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다.

활동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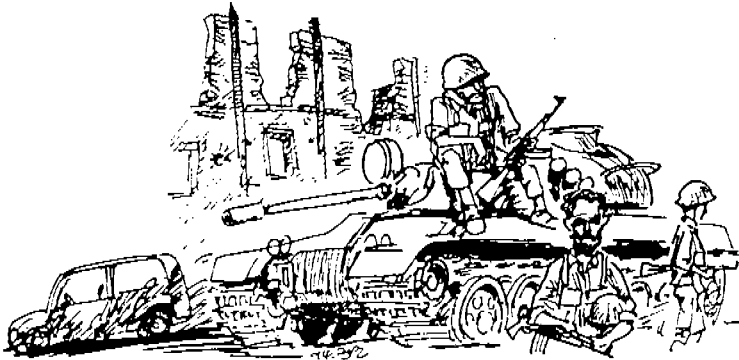
민주화의 정도를 얼마나 인식하고 있는지 세계지도를 그려보고 국제적인 인권문제 - 세계적 상황과 남북문제 - 와 민주질서 유지에 대하여 토론한다.

활동과정

▷ 세계각국의 민주화 정도를 세계지도에 표시한다.



▷ 세계적 대치상황에 대하여 토론한다.



▷ 남북통일의 당위성을 인식한다.



활동내용

과정 1 민주화 세계지도그리기

- 3-5명으로 모둠을 나눈다.
- 세계지도를 그릴 때는 청소년들이 관심이 없으면 지도자는 미리 그려진 지도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모둠의 협동심을 위하여 가능하면 지도를 그리도록 유도한다.
- 세계지도를 그린 후 두가지 방법으로 채색을 할 수 있다. 첫번째는 학교에서 배운대로 공산권, 민주권 및 제3세계권으로 나누어서 채색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청소년에게 민주주의와 비민주주의의 대비를 확실히 하는데 도움이 된다. 두번째는 동구 공산주의 국가가 붕괴된 후의 상황에 따라서 각 나라별로 민주주의 정도에 따라 청소년 자신이 인식하고 있는 수준으로 색칠하는 것이다.
- 청소년들은 일반적으로 붉은색과 푸른색을 기본색으로 사용하여 채색을 하는데 진하고 옅음과 어둡고 밝음의 차이로써 민주주의 정도를 나타낼 수 있다.
- 지도자는 각 모둠을 차례차례 그림을 설명하게 하는데 소신껏 발표할 수 있게 분위기를 조성한다.
- 지도자는 민주화정도를 연구한 결과를 바탕으로 지도를 평할 수도 있고 교과서나 백과사전을 참고하여 평가할 수 있다.
- 활동의 마지막 단계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활동에 참가하여 민주주의의 국가적 차이에 대한 인식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를 발표시킨다.

과정 2 세계적 갈등상황 토론

- 6-10명으로 모둠을 구성한다.
- 지도자는 세계적인 갈등적 상황을 주제로 주고 청소년으로 하여금 토론시킨다. 민주시민 생활자세를 습득하거나 인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토론회의 진행은 자율적인 것으로 하고

보조지도자는 진행과정을 참관하여 활동이 끝난 후 평을 해 준다.

- 토론결과 발표시 지도자는 청소년에게 만약에 우리나라가 이러한 상황에 처하면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를 물어봄으로써 청소년에게 현실적인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을 일깨울 수 있다.

〈토론 주제의 예〉

- 아이티의 상황 (독재정권문제)
- 르완다 문제(기아와 질병문제)
- 이란·이라크 사건(국가의 독립과 자주권 문제)
- 프레온가스(CFC)금지(공해문제)

과정 3 통일외 당위성 인식하기

- 남북통일은 우리 민족의 당면과제이기도 하지만 공산주의나 전체주의 국가를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모습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는 것이 국제적인 이슈일 수 있다.
- 지도자는 통일의 당위성에 대한 설명을 한다. 이를 위한 자료는 귀순자의 강연, 전문서적 또는 신문이나 방송을 인용할 수 있다.
- 청소년들은 6-10명으로 모둠을 만들어서 각기 주제를 선택하게 한다.
- 토론을 할 때 가능하면 국지적인 이유는 지양하고 국제적인 맥락에서 남북문제의 해결 이유를 찾는다.

〈토론 주제의 예〉

- 민족적 당위성
- 경제적 필요성
- 정치적 이유(민주주의 전파와 평화)
- 핵문제의 확산방지
- 관광자원개발
- 세계 교통순환의 원활

유의사항 ▷ 지역적이거나 자기중심적 토론을 하는 청소년이 있으면 지도자는 유형별로 정리하여 활동이 끝난 후 지적해 준다.

참 고 세계적 갈등상황

□ 세계적인 뉴스거리 목록

- 유엔 『후세인 겹주기』 5차례 겹주기
- 엘친 막관 승부 『국민투표』 강행
- 러시아, 일의 핵 쓰레기장화된 동해
- 남아공 『백인통치 종식』 뒤뚱뒤뚱
- 『대화』 물꼬트고 남-북한 『핵담판』
- 한국 상륙수 부대 250명 소말리아에
- 지진, 해일, 홍수, 산불 지구촌 재해극심
- 고종황제 을사조약 『무효』 친서 발견
- 국제조직 대규모 헤로인 밀수단 적발(한, 미, 태 3국 공조....5개월 만의 개가)
- 대유럽 원년 - EC 단일시장 Go싸인
- 4.19, 5.16 민주화 운동 명예회복
- 일정부, 정신대 강제연행 첫시인
- 중국 지하핵실험 강행 - 대미 긴장고조
- UR타결 - 세계 개방무역 전쟁
- 국제조직 대규모 헤로인 밀수단 적발

□ 세계적 갈등상황이 나타난 방송 인쇄매체물

◎ 유엔 ‘후세인 겹주기’ 5차례 공습 : 휴전협정 도발자 제한적 응징
93년에 접어들자 걸프지역에 긴장이 극도로 고조되면서 마침내 또다시 폭염이 작열했다. 이라크는 휴전합의 사항을 무시하고 유엔의 권위에 공공연히 도전했다. 유엔이 설정한 비행금지 구역내에 미사일을 배치했는가 하면 일단의 이라크인들을 시켜 쿠웨이트의 옴카스로지역에 몇차례씩 침입, 유엔감시하에 있는 미사일을 탈취해 가기도 했다. 그리고 비행금지구역내 미사일 철거와 탈취해간 물품

들을 즉각 반환하라는 유엔의 요구를 거절했다. 이라크는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는 안보리의 경고도 무시했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자 미국을 주축으로 한 다국적군은 더 이상 인내할 수 없다는 판단아래 1월 13일, 17일, 18일 등 네차례와 6월 27일에도 이라크에 대한 공습을 강행했다. 이는 부시 미대통령의 임기를 불과 1주일정도 앞두고 감행된 일이라 세계의 이목을 더욱 집중시켰다.

◎ 중앙아시아 한인동포들 “오늘을들” : 민족갈등 내전에 휩쓸려 피난길

구소련의 붕괴는 공산당의 폭악정치를 철거해 버렸지만, 극심한 민족문제를 발생시켰다. 때문에 러시아의 타지크, 카자흐, 우즈베크 등 각 공화국에 산재해 살고 있는 한인들은 민족갈등 내전에 휩쓸려 생활환경을 크게 위협당했다.

특히 타지크공화국에선 1년이 넘게 유혈사태가 계속돼 1만 3천여 명의 한인동포중 절반 이상이 피난하고 나머지 동포들도 치안부재와 생필품부족으로 전전긍긍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져 우리사회의 큰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에 따라 우리정부는 러시아주재 한국대사관에 진상파악을 훈령하는 한편 우선 급한대로 쌀, 담요, 의류 등 긴급구호품을 급송, 동포들의 구호에 나서야만 했다.

* 자료 : 한국편집기자회, 기자가 본 '94 100대 뉴스, 1994.

세계의 민주화 정도

- 전세계 정치·인권현황을 조사, 각국의 「자유도」를 점수화한 뒤 매년 「자유국」, 「부분자유국」, 「비자유국」을 분류해 발표하고 있는 미국의 「프리덤 하우스」는 94년 연례보고서를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 금년의 경우 전세계 191개국중 정부가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구성되는 「민주국가」로 분류할 수 있는 나라는 전체의 60%인 114개국으로 70년대 보다 거의 두배로 늘었다.

- 국가의 자유정도를 3등급으로 나눌 때 올해의 경우 자유국은 76개국, 부분자유국은 61개국, 비자유국은 54개국인 것으로 나타났다.
- 자유도의 평가는 해당국민들의 정치적 권리와 인권분야 22개 항목으로 했는데, 가장 완벽한 상태를 1등급, 최악을 7등급으로 매겼다. 1~2.5등급은 자유국, 3~5등급은 부분자유국, 5.5~7등급은 비자유국으로 분류된다.
- 대체적인 자유화 신장 추세에도 불구하고, 세계인구 가운데 자유국 인구는 20%에 그치고 있다. 각 국가별 자유도 등급은 다음의 표와 같다.

〈국가별 자유도 등급〉

등급	자유국가	등급	부분 자유 국 가	등급	非자유국가
1.0	호주 덴마크 포르투갈 미국	3.0	방글라데시 브라질 대만	5.5	에티오피아 아랍에미리트
1.5	체코 프랑스 독일 스페인	3.5	필리핀 러시아	6.0	보스니아-헤르체코비 나 이집트
		4.0	인도 멕시코 태국	6.5	인도네시아 이란
2.0	불가리아 이스라엘 한국	4.5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7.0	중국 쿠바 이라크 북한 사우디아라비아 베트남
2.5	아르헨티나 몽고 남아공화국	5.0	아이티 싱가포르		

* 자료 : 중앙일보, 94.12.15.

□ 월남귀순자 관련자료

- 통일의 길목(1971), 최문석 저, 학생사
- 아, 따뜻한 남쪽나라 : 김만철 일가 북한 탈출 비화(1987), 문용수, 지문사
- 국제법학회노총(1971), 대한국제법학회(편), 대한국제법학회
- 귀순자의 증언을 통해 본 북한 체제 변화 실태 연구(1989), 국토통일원 조사연구실
- 북, 행복도 강요되는 땅(1991), 연합통신(편), 연합통신
- 머리를 빼는 남자 : 북한총각 김용이 겪은 남과 북(1992), 김용, 자작나무
- 남북의 장벽을 넘어서 : 통일과 심리적 화합(1993), 한국심리학회(편), 한국심리학회
- 대북심리전대책을 위한 연구 : 조련계 및 귀순자 활용(1972), 국토통일원 교육홍보실(편), 국토통일원 교육홍보실
- 월남귀순자의 자유사회적응 과정실태조사(1980), 민병천, 국토통일원 조사연구실
- 김만철 초청간담회 질의, 응답내용(전문)(1987), 국토통일원 조사연구실(편), 국토통일원 조사연구실
- 김만철 일가 북한 실태 증언록(1987), 국토통일원 조사연구실(편), 국토통일원
- 귀순자의 증언을 통해 본 북한 체제 변화실태 연구(1989), 이문웅, 국토통일원 조사연구실
- 최근 북한주민 의식변화 동향(1992), 통일원 정보분석실, 통일원 교류협력국
- 김일성 조서 : 북조선의 지배자 그의 죄와 벌(1992), 황민기, 광문사
- 38도선돌파! : 재일조선인 김행일의 575일(1992), 장명수, JICC출판국

- 북한종교연구Ⅱ－연구보고서92-15총서(1992), 류성민, 현대사회연구소
- 시사안보해설집 통권 62호(1994), 국방부, 국방부
- (시사자료) 통일교육 제58호(1993), 통일연수원, 통일연수원

□ 북한에 관한 비디오 목록

- 가야할 산하/KBS 대구방송국/1986/9분 : KBS대구 방송국이 카메라 탐방에서 북한 사진전 대구전시회 홍보용으로 찍은 내용이다
- 국방뉴스/국군홍보관리소/1990/14분 : 1990년 2월 6일에 방영된 국방뉴스 1176호. 재해극복과 토막소식, 영광의 얼굴, 태세만전, 정훈교육영화 등 소식을 전해주는 영화
- 국토통일원장관 인터뷰/NHK텔레비전/1984/27분 : NHK방송국 기자 中谷和男이 손재식 국토통일원 장관과 인터뷰하는 내용. NHK방송에서 보도하는 장면이 나온다. 한국의 삼자회담 제의 거부와 일본의 한반도 평화에 대한 역할, 중국의 한반도에 대한 정책을 얘기한다
- (집중질의) 국토통일원 장관에게 듣는다/KBS방송국/1985/22분 : KBS-TV방영문 기자가 국토통일원 장관과 인터뷰하는 내용
- 기자회견 내용(최은희·신상옥)Ⅰ/미상/1986/130분 : 1978년 북한에 납치되었다가 극적으로 탈출한 최은희·신상옥씨의 기자회견 내용. 납치 경위, 납치 목적, 탈출 경로를 상세하게 들려준다
- 기자회견 내용(최은희·신상옥)Ⅱ/미상/1986/32분 : 최은희·신상옥씨의 한국기자들과의 회견내용. 현재의 심정과 앞으로의 생활을 얘기한다
- 기자회견 내용(최은희·신상옥)/미상/1986/52분 : 최은희·신상옥씨의 기자회견 내용
- 남북대화와 북한의 저의/국토통일원/1985/18분 : 남북 고향 방문단과 남북 예술공연단의 상호교류와 적십자·경제·체육회담을 통한 남북대화의 긍정적 평가와 그 저변에 깔린 정의를 알아보고 국민적 합의로 평화통일을 이룩하자는 내용
- 남북한 화해와 통일의 길/국토통일원/1988/23분 : 남북대화와

정치, 경제, 문화 체육 등의 교류를 더욱 긴밀히 해서 남북한 화해와 통일에의 길로 박차를 가하자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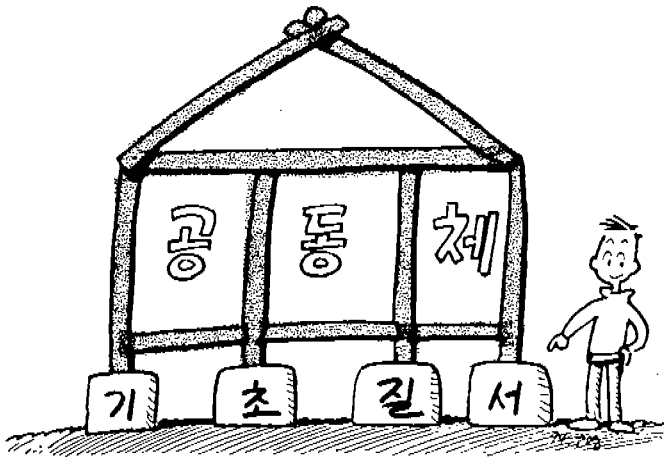
- 단친 가슴을 열고 — 남북한 실상 어떻게 다른가/민족통일중앙협의회/1987/42분 : 1980년 6월 서산 앞바다에서 격침된 무장 간첩선의 생존자인 간첩호송원 김종화씨의 이야기를 극화한 것이다. 남한의 실상을 보고 느끼는 과정에서 북한의 허구성을 깨닫고 새로운 삶을 찾게 된다는 내용
- 무엇이 공산주의인가 — 북한체제의 실상을 중심으로/민족통일중앙협의회/1987/30분 : 이산가족 상봉과 아웅산 암살 폭발사건, 김만철씨 가족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의 실상과 체제의 허구성을 보여주는 내용
- 민중주의란 무엇인가/KBS방송국/1987/78분 : 우성건설 강당에서 명지대 윤원구 교수가 특강한 것을 녹화한 것. 민중민주주의의 개념과 공산주의 이념, 독재에 대해 강의하는 내용
- 보이지 않는 전쟁 — 한반도는 지금 몇시인가/국토통일원/1987/42분 : 1987년 3월 30일 KBS-1TV 특별 토론회. 국토통일원 장관인 허문도씨와 외교 안보 문제 전문가들이 최근 주변정세의 변화에 대한 면밀한 진단을 하고 그 대처 방안에 대해 토론하는 내용인데 통일안보 교육용으로 주요 내용만 재편집 한 것
- 북에서 온 가족① — 북의 여성 365, 우리는 이렇게 배웠습니다/KBS 방송국/1987/105분 : 귀순산 김만철씨 가족인 허문호, 최봉례, 최지선씨를 초청해서 각계각층 사람들과 북한 여성들의 생활에 대해 토론하고, 김만철씨 자녀들을 초청해서는 북한의 학교 생활, 사고방식에 대해 얘기한다.
- 북에서 온 가족② — 동토의 직업인 24시, 자유 택한 인술의사 김만철/KBS방송국/1987/105분 : 김만철씨 처남들과 아들들을 초청해서 북한의 직업과 결혼, 도로 사정 등을 알아보고, 의사인 김만철씨를 초청해서는 북한의 식량문제, 의료·약품수준, 탈출 당시 지니고 왔던 의류와 약품을 보여주고 토론한다
- 북한의 언론/남북문제연구소/1990/20분 : 1989 5월 19일 조선중앙 TV방송이 제작·방영한 내용이다. 주체화 사상을 고취시키

기 위한 단행본, 로동신문, 민주조선, 로동신문사 편집국,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방송국의 출판, 보도활동을 보여준다

- 북한의 오늘과 내일/MBC방송국/1991/77분 : MBC 시사토론 “북한의 오늘과 내일”에서는 유재건 변호사의 사회로 고영환씨(귀순 북한외교관), 송도균씨(MBC 북한부장), 이달희씨(민족통일연구원 북한실장)가 참석해 북한의 권력사회의 실상과 학교제도, 생활을 얘기하고 북한 사회의 전반적인 변화조짐에 대해 알아본다
- 통일의 길/국토통일원/1987/30분 : 8.15 해방 이후 분단된 상황에서 통일의 당위성과 이산가족의 아픔. 북한의 입장·의도를 살펴보고 통일에 이를 수 있는 통일원칙, 통일방법·절차를 알아보는 내용이다

* 자료 : 통일원 북한자료실.

바른 시민생활 이해하기



지켜보자! 기초질서
그래 결심했어
권리와 의무
민주주의 현장으로

지켜보자 ! 기초질서

개 요

인간은 사회를 형성하여 서로 협동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공동체를 형성하여 상호 의존하고 협동하는 것이 개인의 이익을 효과적으로 추구할 수 있다는 것이 합리적인 생각이라 할 수 있다. 공동체 생활을 함에 있어 기본이 되는 것이 기초질서를 지키는 것이다. 따라서 시민생활의 기초로서 질서를 지키는 법을 이해하는 것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것이다.

활동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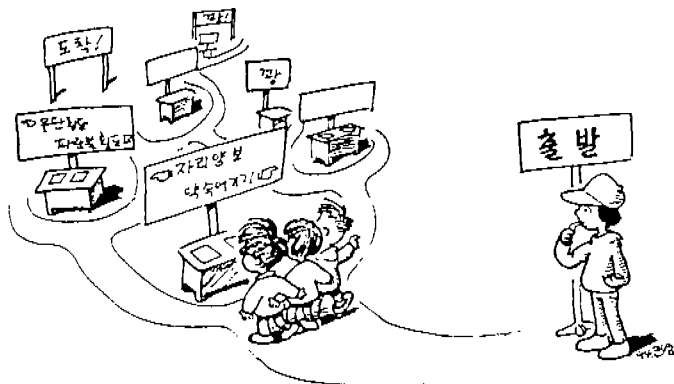
빙고게임, 3인4각 게임, 오리엔티어링을 통해서 어떤 것이 기초질서를 지키는 것이고 어떤 것이 어기는 것인가를 알고, 올바른 기초질서 지키기를 이해한다.

활동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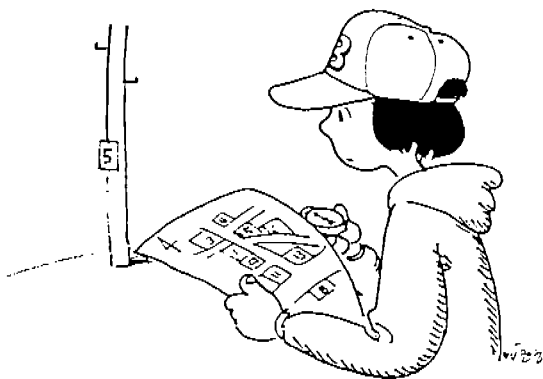
▷ 질서위반에 관한 빙고게임을 한다.



▷ 기초질서지킴이 3인4각 게임을 한다.



▷ 기초질서지키기 오리엔티어링을 한다.



활동내용

과정 1 질서위반에 관한 빙고게임

- 모둠을 정하고 모둠 구성원끼리 빙고게임을 한다.
- 모둠 구성원 각각은 자신이 생각하기에 기초질서를 어긴 예로 칸을 채운다. 칸수는 시간과 인원에 맞추어 지도자가 적절히 정한다.
- 먼저 빙고를 외치기 위해서는 칸을 되도록 일상적으로 어기게 되는 기초질서위반 예로 적는 것이 좋다.
- 모듬구성원이 돌아가면서 한가지씩 이야기 하고, 이야기한 것이 자신의 빙고카드에 있으면 해당되는 것을 지운다.
- 가로나 세로, 대각선으로 4줄을 먼저 지운 사람을 우승자로 하고 모듬의 장으로 임명한다.

〈빙고카드의 예 (4×4의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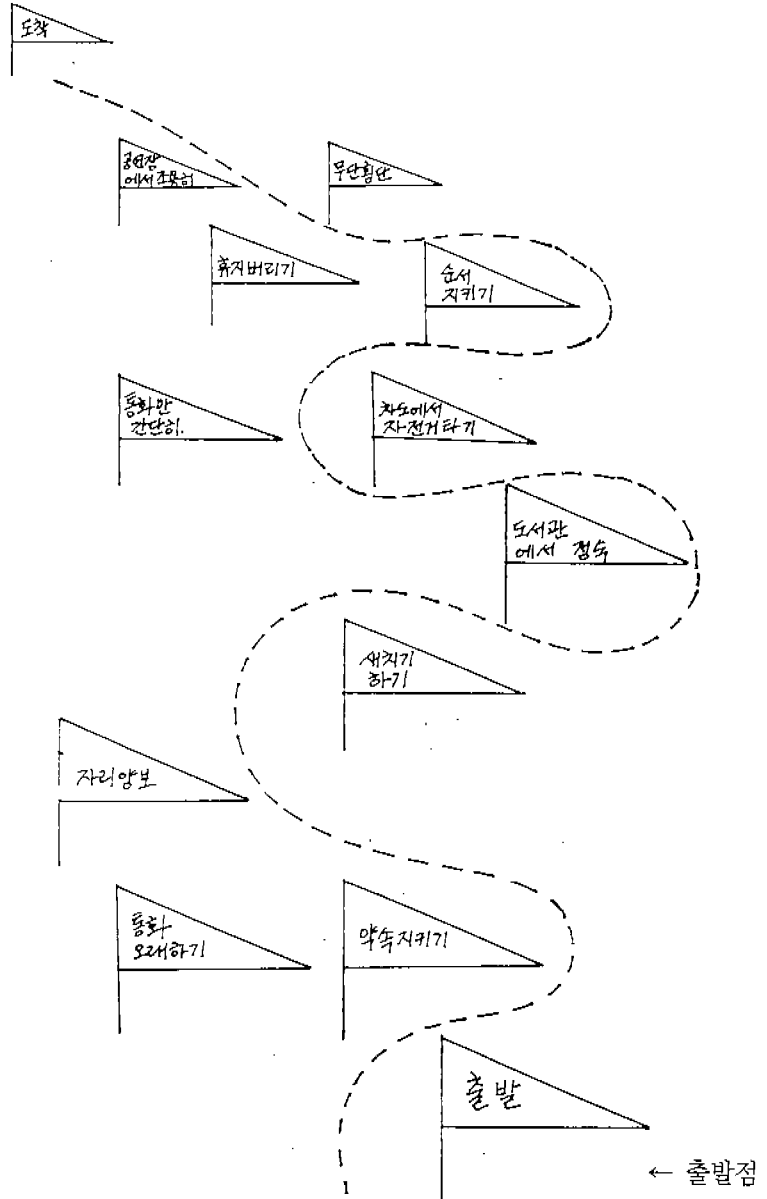
거리에 침 뱉기	약속 안지키기	불친절	싸움, 폭력
공연장에서 시끄럽게 하기	무단횡단	인사 안하기	도서관에서 떠돌기
통화 오래하기	차안에서 시끄럽게하기	휴지버리기	줄 새치기 하기
밤늦게 남의집 방문하기	담배 꺾초 버리기	차도에서 자전거 타기	교양없는 말하기 (폭언하기)

과정 2 기초질서 지키기 3인4각 게임

- 4명을 한 모듬으로 구성한다.
- 지도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판의 예처럼 깃대를 설치한다.

〈상황판의 예시〉

목표지점 ←



- 상황판이 설치된 곳에서 기초질서를 위반한 것이라 생각되는 곳은 피해가고, 바람직한 것이라 생각하는 곳은 통과한다.
- 각 모듬은 통과할 때 반드시 깃대의 오른쪽으로 돌아가야 한다.
- 각 모듬은 통과할 때 상황판 옆에 놓여있는 통과지를 가져와야 한다. 통과지는 상황판의 내용과 일치하는 내용이 적혀 있다.
- 상황판은 출발점에서 잘 보이지 않도록 멀리 놓아야 하고, 출발전에 미리 상황판을 보거나 외울 수 없도록 한다.
- 모듬의 구성원중 일부는 어기는 쪽으로 일부는 바람직한 쪽으로 가려고 하면 그 모듬은 넘어지게 되어 있다. 이것은 기초질서를 어길 경우 공동체 생활이 무너짐을 상징한다.
- 질서를 위반한 상황판으로 도는 모듬은 탈락시킨다. 가장 빨리 그리고 가장 많은 구성원이 돌아온 모듬이 우승한 것으로 한다.

〈통과지의 예〉

자리양보

과정 3 기초질서 지키기 오리엔티어링

- 모듬을 구성하고 포인트 오리엔티어링(OL)경기 방법을 적용한다.
- 지도자는 도심이나, 자연 속을 미리 답사하여 경기하기 적당한 곳으로 일정지역을 정한다.
- 정해진 곳을 포스트(post)로 지정하고 지도상으로 표시를 한다. 이 때 유의할 사항으로 안전에 대한 배려로서 위험한 절벽이나 하천은 피하고, 동·식물에 피해가 없도록 한다.
- 포스트에 깃발을 설치한다. 포스트를 설치하는 기준은 기초질서가 자주 어겨지는 곳으로 한다.
- 지도상에 명시된 포스트를 지시된 순서에 따라 가능한 한 빨리 돌아온다.

〈포스트의 예시 — 도심에서의 예〉

1. 횡단보도
2. 휴지통이 설치된 곳
3. 공중전화가 있는 곳
4. 목욕탕
5. 극장 또는 시장
6. 서점
7. 백화점(또는 시장)
8. 표를 사는 곳
9. 박물관
10. 버스(택시) 정류장

- 참가자에게는 출발 직전에 지도를 지급한다. 이는 지도를 모둠들에게 차등 지급함으로써 시간적으로 불평등이 초래되는 것을 피하기 위함이다.
- 참가자는 지급된 지도에 표시된 포스트의 위치와 번호에 따라 순서대로 통과한다. 통과할 때 1번 포스트가 설치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모둠구성원이 판단해서 포스트 기호란에 적는다.
- 지정된 번호와 동일한 포스트를 찾았을 경우, 체크카드에 그 포스트의 번호를 적는다. 체크카드는 다음과 같다.
- 모듬 구성원이 협동해서 지도상에 표시된 포스트를 모두 찾고 통

〈체크카드 예시〉

모듬이름 :	출발순 :
출발시각 : 시 분 초	도착시각 : 시 분 초
포스트 기호란 : 1. 2. 3. 4. 5. 6. 7. 8. 9. 10.	
반칙 :	순위 :

과하면 결승점으로 돌아 온다.

- 빨리 돌아온 모듬이 우승한 것으로 한다.

유의사항 ▷ 오리엔티어링을 할 때 특히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참 고 **바람직한 시민생활**

□ 소개할 때의 예절

대인 관계에서 소개를 하고, 소개를 받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며 사회적 지위, 성별과 친분 관계 등에 따라 일정한 형식이 있다. 소개를 하는 순서나 방법을 바르게 익혀 예의바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겠다.

◎ 소개의 일반적인 예절

- 소개는 사회적 지위, 성별과 친분관계 등에 따라 일정한 형식이 있다.
- 복장을 단정히 한다.
- 자기를 소개해 줄 것을 부탁할 경우에는 소개자에게 폐를 끼치지 않겠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 소개의 종류

- 인사소개
- 면접소개 : 소개할 사람을 데리고 집이나 사무실로 찾아 가서 소개하는 방법이다. 이 때는 사전 양해를 구하고 상대방의 편의에 따른다.
- 문서소개 : 소개장은 정중하면서 간결하게 쓰는 것이 예의이다. 소개장은 책임있는 태도로 쓴다. 용건, 성명, 신분, 성품, 소개 목적을 기재한다.
- 전화소개 : 소개하는 사람과 소개받는 사람 사이의 친분이 두터울 때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는 편리한 방법이다.
- 자기소개 : 각종 회합에서 제 3자의 소개없이 자기 스스로 하는 방법이다.
짧은 시간에 성명, 신분 등을 인상 깊게 말한다.

- 외국인의 소개 : 정식으로 할 때는 Mrs. A, May I introduce Mrs. B to you?라고 A부인에게 B부인을 소개하고, B부인에게 Mrs. B라고 불러 인사를 시킨다.

□ 공연장에서의 예절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공연장에서 지켜야 할 규칙을 모르거나 알면서 지키지 않는 사람이 있어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다. 어릴 때부터 문화시설을 바르게 이용하는 습관이 형성되도록 지도해야 하겠다. 부모님과 함께 공연을 관람하여 자연스럽게 관람하는 태도를 길러주도록 해야겠다.

□ 식당에서 지킬 일

가족끼리 식당에서 식사를 하거나 여러 사람이 모여 식사를 하는 경우가 있다. 식당은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곳이므로 가정에서와는 다른 예절이 있다. 예절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남에게 불쾌감을 주는 일이 없도록 지도해야 하겠다.

- 조용히 식당에 들어선 다음 빈 식탁에 가서 소리내지 않고 의자에 앉는다.
- 음식점에서 다른 사람과 같이 식사할 때에는 종업원이 오기 전에 식단표를 보고, 먼저 상대방이 좋아하는 음식을 물어 본 다음에 주문할 것을 정해서, 종업원이 오면 조용한 목소리로 주문한다.
- 주문할 때에는 음식 이름과 그릇 수를 분명히 말한다.
- 음식이 나오면 바른 자세로 앉아서 소리나지 않게 먹는다.
- 주문한 음식이 잘못 나왔을 때에도 손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서로 양보하는 것이 좋은 일이다.
- 음식을 먹을 때나 먹고 나서도, 떠들지 않아야 한다.

□ 공중 목욕탕에서 주의할 일

공동 생활을 하는 데에는 여러가지 공공 시설물이 필요하다. 공공 시설물 중에 우리가 자주 이용하는 공중목욕탕에서 주의해야 할 일을 알아두도록 해야 한다. 공중 목욕탕에서 지킬 예절과 바른 이용

방법을 이해시켜 목욕탕에서 실수를 하여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지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 교통질서 지키기

교통질서 하나만 보아도 그 나라 국민의 문화수준을 알 수 있다. 세계 제일의 교통사고의 나라가 된 것은 운전자나 보행자 모두가 준법정신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 안전한 보행 방법

- 인도로 가다가 갑자기 차도로 뛰어들지 않는다.
- 교차로나 골목길과 이어지는 길모퉁이에서는 특히 주의해야 한다.
- 횡단 보도에서는 뛰어서 건너지 않으며 신호등이 있는 경우에는 녹색 신호가 켜진 후 좌우를 살피고 건너간다.
- 서 있는 차의 바로 앞이나 뒤로 횡단하지 않고 차들이 멈추어서 있는 사이로 건너지 않는다.

◎ 놀이할 때

- 서있는 차 주위에서 숨바꼭질 등의 놀이를 하지 않는다.
- 차도에서 자전거를 타지 않는다.

◎ 차를 타고 내릴 때

- 버스나 열차를 이용할 때는 내리는 사람이 먼저 내린 후, 앞사람을 밀지 않고 천천히 차례대로 탄다.
- 차를 기다릴 때에도 줄을 서서 기다린다.
- 차가 완전히 정지한 후에 타고 내리도록 한다.

바른 국민생활

□ 국기에 대한 예절

◎ 국기 다는 날

- 국경일 : 3·1절(3월 1일), 제헌절(7월 17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 기념일 : 설날(음력 1월 1일), 국군의 날(10월 1일), 한글날(10월 9일)

- 경조일 : 현충일(6월 6일), 국장기간이나 국민장일(조기)

◎ 국기 다는 방법

• 국기 다는 시간

- 국기는 해가 뜰 때 달고 해가 질 때 내린다.
- 눈이나 비가 올 경우는 달지 않는다.
- 국기를 게양한 후 눈이나 비가 오면 즉시 내린다.

• 국기 다는 방법

- 경축일에는 깃봉과 기폭 사이를 떼지 않고 단다.
- 현충일과 같이 조의를 표하는 날에는 조기를 단다.
- 조기는 깃봉에서 기폭의 너비(세로)만큼 내려서 단다.
- 조기를 게양할 때는 먼저 깃봉까지 올렸다가 다시 내리고, 하강할 때도 일단 깃 봉까지 올렸다가 다시 내린다.

• 국기 다는 위치

- 국기 하나만 달 때에는 식장이나 대문을 향하여 왼쪽 또는 중앙에 단다.
- 외국 국기와 같이 둘을 게양할 때는 태극기를 왼쪽에 단다.
- 교차시킬 때는 태극기의 깃대가 바깥쪽으로 가게 하고, 태극기가 왼쪽에 가도록 한다.
- 태극기와 2개국 이상의 국기를 달 때, 그 수가 홀수인 경우는 태극기 왼편에 둘째, 오른편에 셋째, 다시 왼편에 넷째, 오른편에 다섯째 등의 순으로 단다.
- 태극기와 2개국 이상의 국기를 달 때, 그 수가 짝수인 경우는 제일 왼쪽에 태극기를 달고 그 다음부터 알파벳 순으로 단다.
- 깃면을 길이로 늘여서 달고자 할 때는 늘인 부분을 깃면의 색깔인 흰색으로 한다.

◎ 국기에 대한 경례

- 국기를 게양할 때와 내릴 때는 바른 자세로 서서 경례 또는 주목을 한다.

- 제복, 제모 차림일 때는 거수 경례를 한다.
- 국기가 자기 앞을 통과할 때는 모든 사람이 이에 경례, 또는 주목을 한다.

□ 의식 행사의 예절

요즈음은 국경일을 흔히 노는 날로만 생각하여 등산이나 여행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 많다. 국경일이나 경조일을 공휴일로 정한 것은 온 국민이 일손을 멈추고 그 날의 뜻을 되새기며 기리자는 데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청소년들에게 국경일이나 경조일의 올바른 뜻을 알게 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지낼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하겠다.

- 의식행사에서는 옷차림을 단정하게 하고, 의식의 뜻을 마음으로 되새기며, 마음을 가다듬고 바른 자세로 줄선다.
- 일동 경례와 국기에 대한 경례는 바른 자세로 하고, 묵념은 그 뜻을 새기면서 눈을 감고 고개를 가볍게 숙인다.
- 경건한 마음으로, 의식의 노래는 그 뜻을 생각하며, 훈화는 정신을 가다듬고 깊이 생각하며 듣는다.

□ 외국인에 대한 예절

길거리에서 외국인을 만나면 수군거리거나 쳐다보지 않도록 한다. 길을 물을 때에는 정확히 가르쳐 주며, 시간이 있으면 목적지까지 안내해 준다. 대화할 경우는 우리 말을 쓰도록 하고, 우리 말을 못 알아들을 때에는 영어로 대답해 주는 것이 좋다.

우리 나라를 소개할 때에는 자랑스런 역사와 문화, 아름다운 자연, 우수한 기술, 눈부신 경제 성장, 성공적인 서울 올림픽 개최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준다.

외국인을 가정에 초청할 때에는 가족들이 함께 어울려 즐겁게 해 주고, 우리 민속 고유의 정신이 깃든 것을 보여주는 것이 좋다. 하지만 지나친 겸손이나 과장하여 자랑하는 일을 삼가하며, 외국어를 잘못하는 것을 부끄러워 할 필요가 없다.

* 자료 : 제철학원, 바른 가정교육, 1990.

그래 결심했어

개 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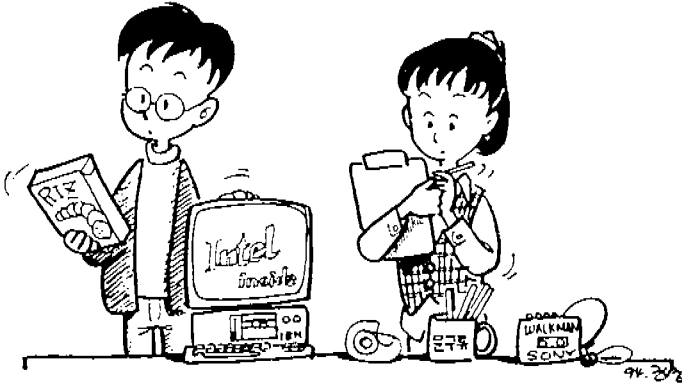
시민생활의 소극적 측면의 하나로 합리적인 경제생활을 들 수 있다. 또 경제생활 중에서도 국산품을 사용하는 것은 나라의 경제를 생각할 때 시민으로써 해야 하는 일 중의 하나이다. 국산품을 사용하도록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국산품을 썼을 경우와 수입품을 썼을 경우 어떤 점이 차이가 있는지를 이해하여야 가능하다.

활동목표

수입품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조사해 보고, 국산품을 썼을 경우와 수입품을 썼을 경우에 대한 상황극을 전개해 봄으로써 국산품을 왜 써야만 하는지 토론을 통하여 이해한다.

활동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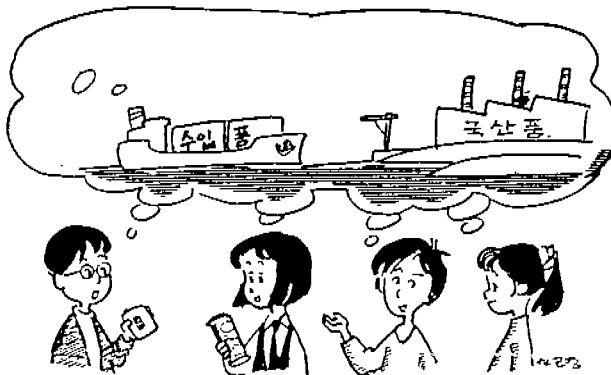
- ▷ 흔히 쓰는 수입품의 종류를 조사한다.



- ▷ 국산품, 수입품 사용 상황극을 꾸민다.



- ▷ 수입품 사용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 토론한다.



활동내용

과정 1 수입품 조사표 만들기

- 모듬을 구성한다. 모듬 구성원은 10명 정도가 적당하다.
- 수입품 조사표를 작성해 본다.
- 수입품을 조사할 때는 우리가 주위에서 흔히 접하게 되는 것으로 적고, 되도록 다양한 종류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한다.
- 여러 종류의 수입품을 한꺼번에 다루기 힘들다고 판단되면, 한가지 품목을 정해서 작성해 보는 것도 좋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학용품에 대하여
 - 우리가 먹는 음식물에 대하여
 - 가전제품에 대하여
- 조사표에 없어도 별도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비고란이나 아니면 칸을 하나 추가해서 조사하도록 한다.
- 조사표가 다 되었으면 조사표를 정리해 본다.

〈수입품 조사표의 예시〉

제품 종류	상품명	수출국	쓰게되는 이유	필요의 정도	대체 국산품	비고
과자류 컴퓨터	리즈 IBM	미국 미국	맛있으니까 성능이 좋아서	상 중 하 상 중 하		

과정 2 국산품 또는 수입품 사용 상황극

- 모둠구성원은 ‘국산품을 썼을 경우’와 ‘수입품을 썼을 경우’라는 제목하에 상황극을 전개해 본다.
- 상황극의 진행과정은 국산품을 쓰거나 수입품을 써야 하는 양자택일 상황을 설정해 놓고 국산품을 썼을 경우와 수입품을 썼을 경우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인지 연출해 본다.
- 상황극은 국산품을 썼을 경우에 좋은 점은 어떤 것이 있으며, 나쁜 점은 어떤 것이 있고 무엇 때문에 국산품을 쓰게 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한다. 또한 수입품을 썼을 경우에 좋은 점은 어떤 것이 있으며, 나쁜 점은 어떤 것이 있고 무엇 때문에 수입품을 쓰게 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한다.
- 상황극이 끝나면 모둠구성원이 단결이 잘되었으며, 재미있고, 시사성이 있는 내용으로 구성한 모둠을 우승한 것으로 정한다. 시사성에 40점, 단결에는 30점, 재미 20점을 준다.

과정 3 종합토론 및 정리

- 상황극을 통해 국산품을 썼을 경우와 수입품을 썼을 경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정리가 되었으면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일에 대해서 토론의 시간을 갖는다.
- 토론의 주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을 수 있다.
 - 제품의 종류는 어느 것이 많은가
 - 어느 나라에서 수입을 많이 하는가
 - 수입을 많이 해야하고 많이 쓰게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 필요의 정도에 따라 우리가 쓰지 않아도 되는 것을 쓰는 것은 무엇인가
 - 국산품을 써서 좋은 점과 나쁜 점
 - 수입품을 써서 좋은 점과 나쁜 점
 - 국산품을 쓰는 것이 국가경제(공익추구)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

— 가짜 외제품의 등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유의사항 ▷ 각 활동이 너무 규범적이 되지 않도록 한다. 즉, 국산품을 써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각 활동을 시작해서는 안된다. 활동을 하는 동안 자연스럽게 국산품을 써야겠다는 생각을 갖도록 유도한다.

참 고 국산품 애용의 필요성 및 실천사례

□ 국산품의 애용의 필요성

국산품을 이용함으로써 우리의 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는 사실은 자명한 이치이다. 그러나, 오늘날 수입 자유화의 거센 물결에 휘말리고 있다. 우리는 전 세계 중 12대 무역 국가이며, 미국 시장에서는 7대 수출 국가로 부상하였으므로 우리 시장을 개방하지 않고는 더 이상 일방적인 수출 증대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런 때일수록 국민들의 국산품 애용 정신과 기업이 수입품과 경쟁할 수 있는 양질의 물건을 값싸게 생산만 한다면, 수입 자유화는 걱정할 것이 없다고 하겠다.

□ 우리 집의 국산품 애용

우리 집에는 국민 학교 3학년과 1학년 학생인 두 아들이 있다. 그런데, 두 아이는 경쟁이라도 하듯이 외제품을 무척 좋아하였다. 이는 아빠가 비행기 조종사로 근무하시는 까닭에 외국을 다녀오실 적마다 외제 학용품을 선물로 사 오시기 때문이다.

아이들이 아빠가 사다 주신 학用品을 학교에 가져가서 반 친구들에게 자랑을 하다가 만약 자신의 물건이 다른 아이들 것만 못할 경우에는 집에 와서 투정을 부리며 더 좋은 것을 요구하였다.

늘 이런 점을 걱정하던 중에, 하루는 학교에서 돌아온 큰 아이가 고개를 푹 수그린 채 가정 통신문을 내 놓는 것 아닌가? 그 내용을 읽어보니 국산품을 애용하여야 국민 경제가 향상되고 국가가 발전한다는 것이었다.

나는 그 순간 얼굴이 화끈하였다. 지금까지 내 자신이 국산품 애용에 대한 가정 교육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혹 아이들이 잘못되는 것을 방지하지 않았나 하는 반성 때문이었다. 그래서 나는 내 나름대로 아이들에 대한 국산품 애용 교육을 위해 어떻게 해야 좋을 것인가를 곰곰히 생각해 본 끝에 신문이나 잡지에 나오는 우리 나라의 발전 모습을 스크랩 북에 담아 아이들에게 보여 주기로 하였다.

그 후 두 아이들에게 틈이 있을 때마다 “옛날의 모습과 지금의 우리 나라 모습을 비교하여 보아라”하고 스크랩 북을 보여 주며 말했더니, 옛날 모습의 사진을 가리키며 “우리 나라가 정말 이렇게 못 살았어요”라고 실감이 나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런 두 아이에게 우리가 국산품을 써야만 나라가 부강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한편, 가끔 국산품 전시회장을 데리고 다니며 견학을 시켰다. 아이들이 둘러보며, “저 물건이 정말 우리 나라에서 만든 거예요”라고 물었을 때, 나는 “그럼 정말이고 말고”하면서 우리 상품의 우수성을 설명해 주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아이들은 점차 아빠에게 부탁하던 외제 상품의 주문 횟수가 줄어들게 되었고, 나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 상품의 질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꼭 국산품을 애용하여야 나라가 발전됨을 이해시켰다.

* 자료 : 한국청소년연맹, 누리활동 자료, 1985.

한국청소년연맹, 한별활동 지도자료, 1987.

수입품 사용실태

□ 외제 사용의 실태 조사자료

◎ 제1조 : 이번 기회에 저희는 스포츠 업계에서 외제를 선호하는 경향에 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한 마디로 우리 나라는 세계의 유명 스포츠 상품의 전시장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백화점이나 시내 곳곳에서 문을 열고 있는 스포츠 레저용품 전문점에 가보면 외국산 제품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그래도 상인들은 물건이 없어 못

팔 지경이라고 합니다. 등산, 낚시, 테니스 등의 외제 스포츠 용품은 국산 제품보다 가격이 최하 2배 심지어는 10배까지도 비싼 형편입니다. 국산 물품의 품질 향상이 시급하다고 하겠지만 무엇보다 국산품을 사용하겠다는 국민 정신이 앞서야 하겠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 제 2 조 : 저희 조에서는 전자 제품 시장에 가보았습니다. 놀라운 것은 국내에서 유명하다고 하는 가전 3사의 제품이 대부분 아직도 외제 부품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에어컨은 국산화율이 겨우 30%, 전자레인지 50%, 퍼스컴이 50%, VTR이 60% 선이라고 합니다. 원자재야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는 일이라 하더라도 부품이나 소재는 정부나 업체가 얼마든지 자체 개발하여 육성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제 3 조 : 외제를 좋아하는 풍조는 가짜 외제품까지 등장하게 하였습니다. 몇 해 전까지만 하여도 가짜 외제라고 하면, 양주나 시계, 화장품, 우항청심환, 응답, 다리미, 오디오 등 몇몇 품목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입 자유화 조치 이후 외국 유명 상표 제품이 쏟아져 들어오자 가짜 외제품은 거의 모든 상품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티셔츠, 청바지, 가방, 구두, 라이터, 심지어 손수건에 이르기까지 가짜 제품이 성행하여 전문가들조차 구분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합니다.

□ 수입품의 사용 실태와 원인

여중생들에 대한 설문조사 내용 일부를 발췌한 것임.

- 질문 1 지금 쓰거나 소유하고 있는 외제 학용품이나 가정용품이 있습니까?
① 있다 - 70% ② 없다 - 30%
- 질문 2 갖고 있는 외제품은?
1위 : 수정액
2위 : 카메라, 카세트
3위 : 펜, 연필
- 질문 3 외제품에 대한 자신의 평가는?

1위 : 품질이 좋다(14명)

2위 : 비싸다(9명)

3위 : 품질이 나쁘다(8명)

기타 : 디자인이 예쁘다. 부속품을 구하기 어렵다.

• 질문 4 국산품에 대한 평가는?

1위 : 품질이 나쁘다(18명)

2위 : 품질이 좋다(10명)

3위 : 비싸다(7명)

4위 : 고장이 잦다(4명)

기타 : 실용적이지 못하다. 나쁜 점을 개선하자.

• 질문 5 한 가정에서 아침 또는 저녁을 먹을 때 한쪽에선 밥을 먹고, 한쪽에선 빵이나 피자 돈까스 등을 먹는데,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위 : 한국인은 밥이 최고!!!(15명)

2위 : 외국 음식도 좋다(12명)

3위 : 간편해서 좋다(7명)

기타 : 미래가 걱정된다. 하루라도 밥을 먹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친다.

• 질문 6 투명 인간이라고 가정하고 어느 집에 들어갔을 때 김치를 먹지 못해서 구역질을 하는 어린이와 김치를 먹으려는 어머니의 눈물을 보았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1위 : 어린이의 입을 벌려 먹인다(18명)

2위 : 먹기 싫음 관둬!!!(5명)

기타 : 김치를 피자로 변경. 외국 음식에 겨자를 쏜다.

• 질문 7 외세문화에 대한 생각은 ?

1위 : 좋은 건 받아들이고, 나쁜 건 버리자(16명)

2위 : 외국 문화가 더 좋다(10명)

3위 : 우리 나라 제품만 쓴다(6명)

기타 : 새로운 문화를 창조한다. 무조건 나쁘다. 모르겠다 등등.

□ 수입식품의 종류

수입식품	들어있는 유해물질	주요 수출 국가	유해물질에 따른 피해
바 나 나	청산, 메틸프로마 이드 가스	미국, 동남아	암을 일으킴
자 몽	알라	미국	암을 일으킴
사 파 주 스	다미노자이드	미국	암을 일으킴
오 렌 지 주 스	납, 카드뮴, 주석	미국	암을 일으킴
레 몬	제초제	미국	유독성 물질로 생명이 위험
토 닉 워 터	키니네	벨기에	소화장애
치 즈	합성착색료, 보존 료, 다나마이신	영국, 스웨덴	항생물질
사 탕	타르색소, EPN	미국	구토, 빈혈증, 호흡기능약화, 암
쇠 고 기	에치온, 메틸프로 마이드	미국, 호주	위장장애
시 금 치, 버 섯	세슘	중국, 미국, 호주	간장암, 백혈병 초래
콩, 옥 수 수	아플라톡신	미국, 동남아	암을 일으킴
포 도	DDT	미국	암을 일으킴
감 귤	EDB	미국	암을 일으킴
청 량 음 료	산화방지제, 합성 보존료, 표백제	미국	신진대사 방해

* 자료 : 인천도덕교사모임, 아이들과 함께 하는 도덕수업, 1994.
 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 청소년 환경수비대 일지,
 1993.

권리와 의무

개 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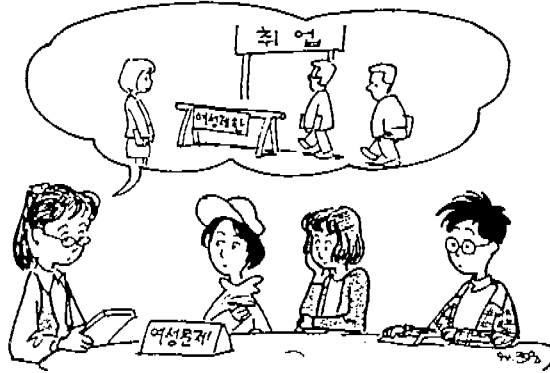
태어나자마자 한 국가의 국민이 된 개인을 위하여 근대 입헌주의 헌법에서는 국민의 기본권을 천부 인권이라는 관점에서 보장하고 있으며, 우리 나라 헌법에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이유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함으로써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정당한 자신의 권리는 반드시 확보하고 행사하여야만 사회 정의가 확립되고 공권력의 남용을 막을 수 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하며, 또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다.

활동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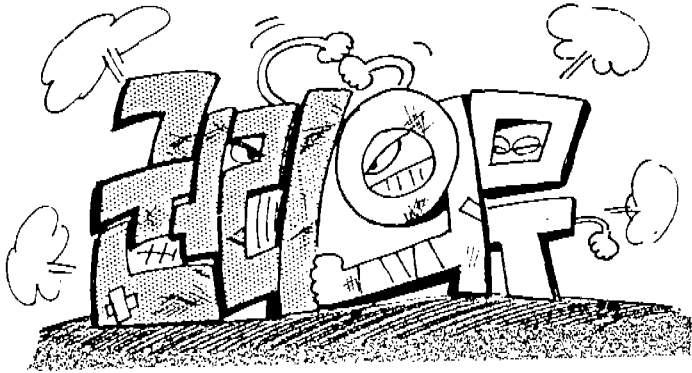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권리와 의무의 올바른 행사 방법을 이해한다.

활동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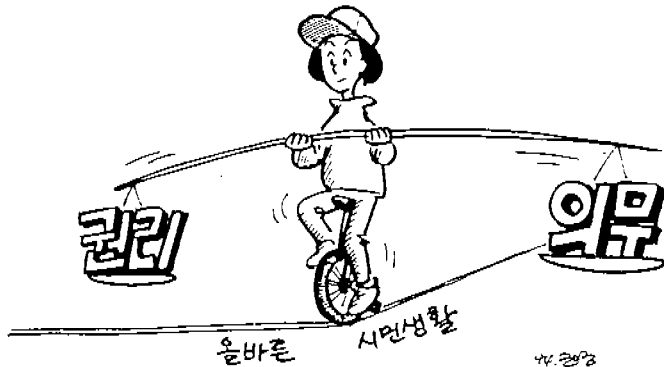
▷ 권리침해 사례를 조사한다.



▷ 권리와 의무에 관한 상황극을 구성한다.



▷ 권리, 의무의 조화에 관해 토론한다.



활동내용

과정 1 권리침해 사례조사

- 우리 주위에서 볼 수 있는 기본권의 침해 사례를 모둠별로 조사한다.
- 모둠별로 조사한 것을 대표가 나와서 발표한다.
- 발표내용이 좋은 모둠이 우승한 것으로 한다.

〈권리침해의 예〉

- 취업에서 여성의 불평등 사례
- 언론, 출판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사례
- 근로 3권이 보장되지 않는 사례 등

과정 2 권리와 의무에 관한 상황극

- 모둠구성원은 ‘국민의 권리를 지나치게 강조했을 경우’라는 제목과 ‘국민의 의무만을 강조했을 경우’라는 제목 하에 상황극을 전개해 본다.
- 상황극은 권리만을 강조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으며, 의무만을 강조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는지에 초점을 둔다. 또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나쁜 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관한 내용을 넣는다.
- 상황극이 끝나면 모둠구성원이 단결이 잘되었으며, 재미있고, 시사성이 있는 내용으로 구성된 모둠을 우승으로 정한다. 시사성에 40점, 단결에는 30점, 재미 20점을 준다.

과정 3 종합토론 및 정리

-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자세에 대하여 토론해 본다.
- 국민의 의무를 다하는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본다.
- 지도자는 중요한 것이 권리를 스스로 지키고 가꾸어가려는 우리

의 의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해 준다. 또한 권리와 의무의 조화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준다.

유의사항 ▷ 지도자는 활동을 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권리를 찾는 일과 의무를 다하는 일을 익히도록 유도한다.

참 고 헌법에 나타난 국민의 권리

□ 국민의 권리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헌법 제 10 조).

□ 자유권(헌법 제12조 - 제22조)

- 여러 가지 권리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권리.
- 국가 권력으로부터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권리.
-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수반됨.
- 스스로 자유를 지키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함.

제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속, 압수, 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②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③ 체포, 구속,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 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 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 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⑥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⑦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 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제13조 ①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② 모든 국민은 소급 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 당하지 아니한다.

③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14조 모든 국민은 거주, 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제16조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9조 ①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제21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

를 가진다.

②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 통신, 방송의 시설 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 언론, 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 도덕이나 사회 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 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2조 ①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② 저작자, 발명가, 과학 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 평등권(헌법 제11조)

• 법 앞에 평등하다고 하여 누구나 똑같이 나누어 가지거나 똑같은 지위를 차지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누구에게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되, 그 결과는 각자의 능력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 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 사회권(헌법 제31조 - 제35조)

• 인간다운 생활을 누리기 위해 국가에 대해 적극적인 배려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사회보장권, 보건권이 있다.

제31조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 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 ③ 의무 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 ④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 ⑤ 국가는 평생 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 ⑥ 학교 교육 및 평생 교육을 포함한 교육 제도와 그 운영, 교육 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제32조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 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 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 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 ②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 ③ 근로 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 ④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 임금 및 근로 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⑤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 ⑥ 국가 유공자, 상이 군경 및 전몰 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 제33조 ① 근로자는 근로 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 교섭권 및 단체 행동권을 가진다.
- ②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 단체 교섭권 및 단체 행동권을 가진다.
 - ③ 법률이 정하는 주요 방위 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 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4조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사회 보장, 사회 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 신체 장애자 및 질병, 연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 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⑥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5조 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③ 국가는 주택 개발 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청구권 (헌법 제26조 - 제30조)

• 국가에 대해 일정한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로, 예를 들면 청원권, 재판청구권, 손해 배상 청구권, 형사 보상 청구권, 국가 구조 청원권이 있다.

제26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제27조 ①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 초병, 초소, 유독 음식물 공급, 포로, 군용물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 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 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③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 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 형사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⑤ 형사 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 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제28조 형사 피의자 또는 형사 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무죄 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9조 ①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 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 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② 군인, 군무원, 경찰 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 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국가 또는 공공 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 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제30조 타인의 범죄 행위로 인하여 생명, 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 참정권(헌법 제24조, 제25조)

• 국민이 주권자로서 나라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예를 들면, 공무원 선거권, 공무 담임권, 국민 투표권이 있다.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제25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 담임권을

가진다.

□ 기본권이 제한되는 경우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최대한 존중,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타인의 자유나 권리를 침해한다든지 사회 전체에 피해를 줄 때에는 제한할 수 있다. 또 꼭 필요한 경우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

헌법에 나타난 국민의 의무

□ 국방의 의무

제39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 누구든지 병역 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 납세의 의무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 교육의 의무

제31조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 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③ 의무 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④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⑤ 국가는 평생 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⑥ 학교 교육 및 평생 교육을 포함한 교육 제도와 그 운영, 교육 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근로의 의무

- 제32조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 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 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 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 ②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 ③ 근로 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 ④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 임금 및 근로 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⑤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 ⑥ 국가 유공자, 상이 군경 및 전몰 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 받는다.

□ 재산권 행사의 의무

- 제23조 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 ②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 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공공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 환경 보전의 의무

- 제35조 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 ③ 국가는 주택 개발 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자료 : 인천도덕교사모임, 아이들과 함께 하는 도덕수업, 1994.

민주주의 현장으로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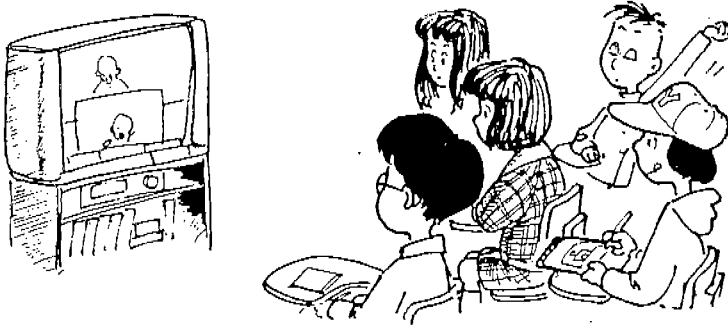
국회는 민주주의 의사결정의 핵심적인 장소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국회란 무엇이며, 어떤일을 하는가를 이해하는 것은 바른시민이 되기 위한 필수요소라 할 수 있다.

활동목표

비디오를 통해 민주적 회의 진행 과정을 이해하고 난후, 국회에 관한 기본 지식을 습득하고, 국회를 견학해 봄으로써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에 관해 이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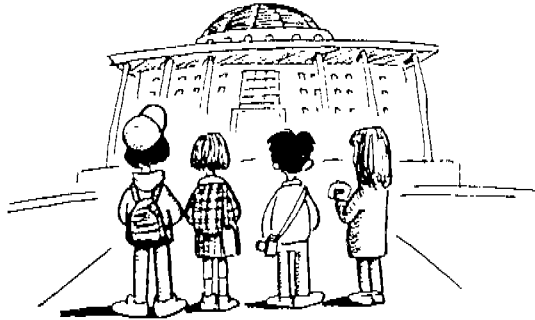
활동과정

- ▷ 민주적인 회의 진행과정을 비디오로 시청한다.



- ▷ 국회에서 하는 일을 조사해 본다.

국회에서 하는 일 첫번째: 국회에 대한 국민의 궁금증을 해결해 준다.



- ▷ 국회나 지방의회를 견학해 본다.



활동내용

과정 1 민주적인 회의과정 비디오보기

- 민주적인 회의 진행과정을 담은 비디오를 본다.
- 다음의 내용을 파악한다.
 - 회의 진행절차는 무엇인가
 - 무엇이 민주적요소인가
 - 의사전달의 바람직한 방법은 무엇인가

〈비디오 예〉

- 제목 : 민주주의 회의(한국청년회의소, 1990년 제작)
- 시간 : 60분
- 내용 : 자유, 민주주의적 회의 진행방법의 절차를 가르치고, 의견형성 및 발표력의 개발을 통해 토론 문화를 정착시키고, 민주 역량의 배양에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회의 진행을 교육시킨다.

과정 2 국회에 관한 기초조사

- 모듬을 구성한 뒤 참고자료를 통해서 국회의 성격과 하는 일을 조사한다.
- 바람직한 의사결정 과정을 이해한다.
- 국회의 구성원, 회기 등을 조사한다.

과정 3 국회 견학

- 국회 견학은 국회의 경위과에서 담당한다. 견학 시는 신분증이 필요하다.
경위과 전화번호 문의 : 788-2001
- 준비물을 갖추고, 국회의 위치 등을 조사한다.
- ‘가서 무엇을 조사할 것인가’를 확인해 둔다.

- 조사한 내용을 기록하고 궁금한 것이 있으면 질문을 한다.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중점적으로 본다.
 - 국회는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나
 - 국회에서 실제로 하는 것
 - 국회에서 시정해야 할 점
 - 국회에서 해 주었으면 하는 것
- 관람할 때는 순서에 따라 다른 사람과 보조를 맞추어 관람하고, 물건에 손을 대지 않는다.

유의사항 ▷ 국회견학시 특별히 예의를 지키도록 하고, 국회에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장을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참 고 국회에 관하여

□ 국회가 하는 일

-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법률을 만들고 고친다.
- 정부가 나라살림을 낭비없이 하도록 하기 위하여 예산안을 심의, 확정하고, 예산이 집행된 후에는 계획대로 잘 썼는지를 심사한다.
- 국회는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장, 차관 등 모든 공무원이 국민을 위하여 나라 일을 잘 처리해 나가는가를 감독한다. 이러한 국회의 권능을 유효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하여 국회는 국정감사권과 국정조사권도 가지고 있다. 또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등을 국회에 출석시켜 국정에 대한 질문을 하고 좋은 방안을 제시해 주기도 한다.
- 대통령이 대법원장, 국무총리, 헌법재판소장, 감사원장, 대법관을 임명하려면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국회는 국민의 청원을 받아 들여 이 가운데 정부가 처리함이 옳다고 보는 것은 정부에 넘겨 처리케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정당한 사유가 있는 청원은 국민의 뜻에 따라 해결해 주도록 노력하고 있다.
- 국회가 국민에게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안전을 심의할 때에는 국민의 뜻을 반영하기 위하여 이해 관계자 또는 학식, 경험이 있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열기도 한다.

□ 국회의 기구 및 조직

◎ 국회사무처

국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회에 사무처를 두고 있다.

사무처에는 국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하는 사무총장과 2인의 차장, 전문위원 그리고 일반직 및 별정직 공무원이 있다.

사무처 하부조직으로는 의사국, 입법조사국, 기록편찬국, 기획예산실, 판리국, 섭외국, 감사관, 비상계획관과 그 밑에 17과 7담당관이 있다.

◎ 국회도서관

국회의 도서 및 입법자료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국회도서관을 두고 있다. 국회도서관에는 도서관장과 기타 공무원이 있으며, 그 하부조직으로는 수서정리담당관, 참고봉사담당관, 전산담당관과 그 밑에 6과 2담당관이 있다.

◎ 국회의사당

국회의사당은 10만평의 대지에 지하 2층, 지상 6층의 석조건물로서 6년간의 공사를 거쳐 1975년에 준공되었으며, 장차 남북통일과 양원제가 채택될 경우에도 불편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특히 이 건물의 외곽에 있는 24개의 8각열주가 돌을 받들고 있는 것은 서로 다른 의견이 토론과 설득과정을 거쳐 하나의 결론에 이른다는 의회정치의 본질을 상징한다.

◎ 국회의 조직

- 국회의원 : 국회는 1948년 5월 31일 대한민국 최초의 국회의원 198인을 선출, 개원하였다. 제14대 국회는 임기 4년의 단원제로서 지역구 237인, 전국구 62인, 계 299인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 의장단 : 국회는 임기 2년의 국회의장 1인, 부의장 2인으로 의장단을 구성하며, 의장은 국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

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 본회의 : 국회의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본회의는 국회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 위원회 : 본회의 심의에 앞서 소관별로 전문적인 예비심사를 하는 상임위원회와 특별히 필요한 안건을 심사하는 특별위원회가 있다. 의장을 제외한 모든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 위원이 되며, 다만, 국회운영위원회와 정보위원회, 특별위원회는 겸임할 수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교섭단체별 감사 1인을 둔다.
- 교섭단체 : 20인 이상의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또한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 한 20인 이상의 의원으로 별도의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 국회의 기능

- 법률의 제정 및 개폐 : 법률의 제정 및 개폐를 위한 법률안은 국회의원과 정부가 제안할 수 있다. 제안된 법률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본 회의에서 심의, 의결한다.
- 예산안의 심의, 확정 : 정부에서 편성, 제출한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 확정한다. 예산안과 동일한 절차로 국회는 세입세출결산을 의결하고 예비비지출을 승인한다.
- 대정부질문, 질의 : 본회의 및 위원회는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국정전반 또는 국정의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대정부질문 또는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는다.
- 국정감사 및 조사 : 국회는 국정전반에 관하여 매년 정기국회중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감사를 행하며, 또한 국정의 특정사안에 관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
- 탄핵소추 및 해임건의 : 대통령, 국무총리 등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을 때 국회는 탄핵소추의 의결을 할 수 있으며, 또한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 임의동의 및 위원 등 선출 : 국회는 대통령의 대법원장, 국무총

리, 헌법재판소장, 대법관 및 감사원장 임명에 대한 동의권을 갖는다. 또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9인중 3인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9인중 3인을 선출한다.

- 공청회 및 청문회 :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또한 중요한 안건심사에 필요한 경우 증인, 참고인, 감정인으로부터 증언, 진술의 청취와 증거의 채택을 위하여 청문회를 열 수 있다.
- 청원처리 : 국회에 청원을 하려는 국민은 의원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접수된 청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에 이송한다. 위원회에서 채택되지 않은 청원은 의장을 거쳐 청원인에게 통지된다.

□ 국회의 회의

- 집회 및 회기 : 매년 9월 10일부터 100일 이내의 정기국회를 개최하며, 필요한 경우 30일 이내의 임시국회를 갖는다. 임시국회는 대통령 또는 재적의원 1/4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한다.
- 개의 및 산회 : 본회의는 재적의원 1/4이상, 위원회는 1/3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부의안건 심사가 끝나면 산회한다.
- 안건처리 : 발의 또는 제출된 안건은 본회의 보고, 위원회 심사, 본회의 상정, 위원회 심사보고 질의, 토론, 표결의 순서로 처리한다.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위원회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심사, 축조심사 및 찬반토론, 표결의 순서로 처리하며 축조심사는 생략할 수 있다.

* 자료 : 국회사무처, 민의의 전당 국회, 1993.

지방의회에 관하여

□ 지방의회의 정의

지방의회란 국민이 선거를 통하여 선출한 대표자로서 시, 군, 구의 지방의회를 구성해서, 그 의회가 지방정부의 의사와 주요정책을 결정하고 지방정책의 올바른 수행을 감시하는 제도이다.

중앙정부의 입법기관인 국회도 마찬가지이지만 지방의회란 기본적으로

- 국민에 의하여 선출된 국민의 대표기관이자,
- 다양한 국민의 의사를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통합하는 합의제 기관으로서,
- 국민을 대신하여 국가의 의사를 결정하고,
- 국정을 감시, 통제하는 기능을 갖는다.

□ 지방의회의 의미

지방의회의 근대적 의미는 대표의 관념에 기초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기관이다. 우리나라의 헌법과 관련 제법규에 근거해서 설치 운영되는 지방의회는 주민으로부터 공선된 의원으로 구성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그 집행기관을 감시하는,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 지방의회와 국회의 관계

- 지방의회와 국회는 그 기본적인 정신과 원리는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 나라에 따라서 그 조직이나 운영방법에 있어서 다른 경우가 없지 않지만 제도적인 차원에서 그 기본 축을 같이 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
- 다만 지방의회는 지방자치기관인데 반하여 국회는 국가통치기관인 까닭에 그 성격이나 기능면에서 적지 않은 차이점을 지닌다.
- 특히 지방의회와 국회는 다같이 입법권을 가지지만, 지방의회의 입법권은 조례제정 권에 국한되나 국회는 법률제정권을 가진다.
- 지방의회와 국회는 다같이 헌법에 근거하지만, 국회에 관해서는 기본적인 사항을 거의 망라하여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지방의회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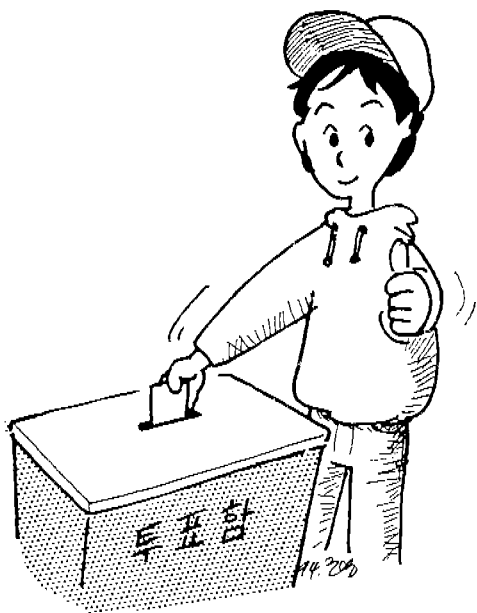
그 근거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조직, 권한, 운영 등 모든 사항을 법률에 위임하고 있다.

- 따라서 지방의회는 국회가 제정하는 법률에 의하여 구성, 운영되고 국회에 의한 입법상의 감독을 받는다.

* 자료 : 한국청소년개발원, 모의지방의회활동, 1993.

바른 시민생활 실행하기

투표권 행사



질서는 내가 먼저
나의 결정
참여하는 민주시민
우리는 세계시민

질서는 내가 먼저

개 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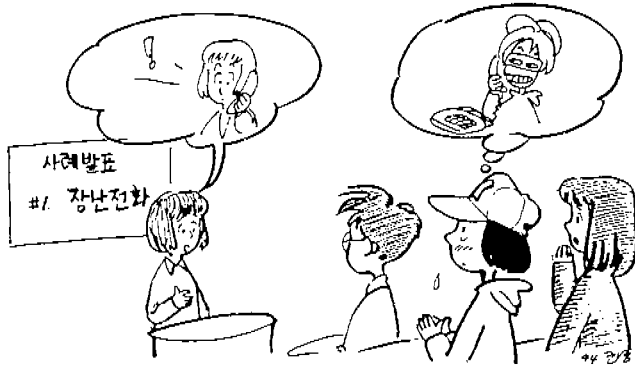
인간 사회의 공동생활을 유지하고 질서를 지켜 나가려면 모든 사람이 꼭 지켜야 하는 행위규범이 필요하다. 질서 유지를 위해 가장 큰 기능을 하고 있는 규범은 법으로서 법은 개인의 행위규범일 뿐 아니라 국가 사회 전반의 운영규범이며, 가장 기본적인 규칙을 정해 놓은 것이다. 따라서 규칙에 따라 질서를 지키는 것은 바른 시민이 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조건일 것이다. 여기에서는 기초질서에 관한 법규정을 알아 보고, 청소년활동 규칙을 만들어 본 후, 이를 어긴 사람에 대한 제재의 방안을 강구해 본다.

활동목표

우리나라의 법에 규정되어 있는 기초질서가 무엇인지 알아 보고, 청소년 활동집단의 내부규칙을 만들어 본 후에 이를 어긴 사람에 대한 제재 방안으로서 모의 즉결심판을 구상해 실연해 보도록 한다.

활동과정

▷ 질서위반에 관한 법규정을 알아 본다.



▷ 청소년 단체활동의 규칙을 만든다.



▷ 모의즉결심판을 꾸며 본다.



활동내용

과정 1 기초질서에 관한 법규정 알아보기

- 참여자를 10명 이내의 소집단으로 나누어 모둠을 구성한다. 모둠 별로 기초질서에 관한 법규정의 내용을 알아 본다.
- 기초질서에 관해 규정해 놓은 법으로는 경범죄처벌법이 있다. 먼저 경범죄처벌법에 규정되어 있는 경범죄가 무엇인지 알아 본다.
- 경범죄처벌법에 규정되어 있는 행위중에서 우리 사회에서 흔히 발생하고 있는 행위와 직접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는 행위를 골라서 적어 본다.
- 경범죄 중에서 전에 자신이 경험해 본 적이 있는 행위와 아직은 해보지 않았지만 앞으로 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골라 적어 본다.
- 각자 적은 내용을 돌려 보고 서로의 의견을 이야기한다.

〈기초질서위반표 예시〉

	기초질서의 종류
우리 사회에서 흔히 발생하고 있는 행위	• 휴지 아무 곳에나 버리기 • 호객행위 • 새치기 • 암표매매 • 자연훼손
직접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는 행위	• 단체가입 강요 • 불안감 조성 • 허위광고 • 호객행위
과거에 자신이 해본 경험이 있는 행위	• 장난전화 • 장난편지 • 노상방뇨 • 새치기 • 휴지 아무 곳에나 버리기
미래에 자신이 해볼 우려가 있는 행위	• 암표매매 • 호객행위

과정 2 청소년활동규칙 만들기

- 질서를 지키기 위한 규범에는 이상에서 알아본 바와 같은 법규범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이지만,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서는 그러한 국가의 법규범 외에도 각 기관과 단체마다 나름대로의 규칙을 마련해 질서를 유지해 나간다. 청소년들도 활동의 질서를 지켜 나갈 그들만의 규칙을 만들어 본다.
- 규칙을 만들 때는 반드시 활동 참여자 전원이 참석하여 함께 만든다.
- 규칙의 내용은 참여자들이 할 수 있는 행동의 범위안에 있어야 하고, 지나치게 많아서도 안된다. 또한 객관적인 관찰이 가능한 행동으로 표현해야 하고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
- 규칙의 표현은 무엇을 하지 말라는 부정적인 표현보다는 무엇을 하라는 긍정적인 표현을 쓰고, 간결한 문장으로 구성한다.
- 규칙이 정해지면 그 내용을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큰 종이에 적어 벽에 붙여 놓거나, 인쇄하여 나누어 봄으로써 공공적인 것이 되도록 늘 주의를 환기시켜야 한다.
- 정해진 규칙은 강제성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규칙 위반시의 벌칙은 정당한 절차와 합의를 거쳐 마련해 놓아야 한다.

과정 3 모의즉결심판

- 참여자들이 정해진 규칙을 지키지 않은 경우를 가상하여 상황극으로 꾸며 본다.
- 기초질서를 어긴 경우 보통 통고처분이나 즉결심판을 받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즉결심판을 받게 되는 경우로 시나리오를 구상해 연기해 본다.
- 먼저 몇명의 참여자가 그들이 정해 놓은 규칙을 어기는 행동을 묘사한다.
- 경찰의 역할을 맡은 참여자가 그들을 단속하여 즉결심판에 회부한다.
- 당직판사는 규칙에 정해져 있는 벌칙의 범위내에서 각각의 질서

위반자에 대해 벌칙을 선고한다.

- 질서위반자가 선고받은 벌칙을 수행하는 연기를 하면서 상황극의 막을 내린다.

유의사항 ▷ 참여자가 만드는 규칙의 내용은 너무 엄격하고 무거운 주제를 택하기 보다는 사소한 일들을 중심으로 쉽게 실천해 나갈 수 있는 것으로 구성한다.

참 고 경범죄처벌법

전개 1983년 12월 30일 법률 제3680호

개정 1988년 12월 31일 법률 제4041호

1991년 5월 31일 법률 제4369호

제 1 장 경범죄의 종류와 처벌

제 1 조(경범죄의 종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벌한다.

1. (빈집 등에서의 잠복) 다른 사람이 살고 있지 아니하고 또한 지키지 아니하는 집 또는 그 울타리 안이나 건조물·배·자동차 안에 정당한 이유없이 숨어 들어간 사람
2. (흉기의 은닉휴대) 칼·쇠몽둥이 등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해를 입히는데 사용될 연장이나 쇠톱 등 집 그 밖의 건조물에 침입하는데 사용될 연장을 정당한 이유없이 숨기어 지니고 다니는 사람
3. 삭제
4. (폭행 등 예비) 다른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해를 입힐 것을 공모하여 그 예비행위를 한 사람이 있는 경우 해를 입힐 것을 공모한 사람
5. (허위신고) 있지도 아니한 범죄 또는 재해의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
6. (시체현장변경) 죽어 태어난 태아를 감추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변사체 또는 죽어 태어난 태아가 있는 현장을 바꾸어 놓은 사람

7. (요부조자 등 신고불이행)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곳에 도움을 받아야 할 노인·어린이·불구자·다친 사람 또는 병든 사람이 있거나 시체 또는 죽어 태어난 태아가 있는 것을 알면서 빨리 이를 관계 공무원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
8. (관명사칭) 국내외의 관공직·계급·훈장·학위 그 밖에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명칭이나 칭호 등을 거짓으로 꾸며대거나 자격이 없으면서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계복·훈장·기장 그 밖의 표장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사용한 사람
9. (출판물의 부당게재 등) 올바르지 아니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사업이나 사사로운 일에 관하여 신문·잡지 그 밖의 출판물에 어떤 사항을 실거나 실지 아니할 것을 약속하고 돈이나 물건을 받은 사람
10. (물품강매·호객행위) 청하지 아니한 물품을 억지로 사라고 한 사람, 청하지 아니한 일을 해주거나 재주 등을 부리고 그 대가로 돈을 달라고 한 사람 또는 관계공무원이 말리는 데도 듣지 아니하고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떠들썩하게 손님을 부른 사람
11. (허위신고) 여러 사람에게 대하여 물품을 팔거나 나누어 주거나 또는 일을 해줌에 있어서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만한 사실을 들어 광고한 사람
12. (업무방해)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업무에 관하여 못된 장난 등으로 이를 방해한 사람
13. (광고물 무단첨부)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이나 그 밖의 공작물에 함부로 광고물 등을 붙이거나 걸거나 또는 글씨나 그림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 등을 한 사람과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간판 그 밖의 표시물 또는 공작물을 함부로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해친 사람
14. (음료수사용방해) 사람이 마시는 물을 더럽히거나 그 사용을 방해한 사람
15. (덮개 없는 음식물 판매) 껍질을 벗기거나 익히거나 씻거나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먹을 수 있는 음식물을 덮개를 덮지

- 아니하고 가게 밖이나 한데에 내놓거나 돌아다니며 관 사람
16. (오물방치) 휴지·담배꽂초·쓰레기·죽은 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곳에나 버린 사람
 17. (노상방뇨) 길이나 공원 그 밖의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킨 사람
 18. (의식방해) 공공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 또는 개인이 베푸는 행사나 의식에 대하여 못된 장난 등으로 이를 방해하거나 행사나 의식을 베푸는 자 또는 그 밖의 관계있는 사람이 말리는데도 듣지 아니하고 이를 방해할 우려가 뚜렷한 물건을 가지고 들어간 사람
 19. (단체가입강요) 싫다고 하는데도 되풀이하여 단체가입을 억지로 청한 사람
 20. (자연훼손) 공원·명승지·유원지 그 밖의 녹지구역 또는 풍치구역에서 함부로 풀·꽃·나무·돌 등을 꺾거나 깎아 사람 또는 바위·나무 등에 글씨를 새기거나 하여 자연을 해친 사람
 21. (타인의 가축·기계 등 무단조작) 함부로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소나 말 그 밖의 짐승 또는 매어 놓은 배·뗏목 등을 풀어놓거나 자동차 등의 기계를 조작한 사람
 22. (수로유통방해) 개천이나 도랑 그 밖의 물길의 흐름에 방해될 행위를 한 사람
 23. (구걸부당이익) 다른 사람을 구걸하게 하여 올바른지 아니한 이익을 얻은 사람
 24. (불안감 조성) 정당한 이유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또는 몹시 거칠거나 겁을 주는 말 또는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한 사람
 25. (음주소란 등) 공회당·극장·음식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 또는 여러 사람이 타는 기차·자동차·배 등

에서 몹시 거친 말 또는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을 한 사람

26. (인근소란) 관계공무원이 말리는데도 듣지 아니하고 악기·라디오·텔레비전·전축·중·확성기·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 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27. (위험한 불씨 사용)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고 건조물·수풀 그밖의 불붙기 쉬운 물건 가까이서 불을 피우거나 휘발유 그 밖의 불이 옮겨붙기 쉬운 물건 가까이서 불씨를 사용한 사람
28. (물건 던지기 등 위험행위) 다른 사람의 신체나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물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곳에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고 물건을 던지거나 붓거나 또는 쓴 사람
29. (공작물 등 관리소홀) 무너지거나 넘어지거나 떨어질 우려가 있는 공작물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고칠 것을 요구받고도 필요한 조치를 게을리하여 여러 사람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게 한 사람
30. (굴뚝 등 관리소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고칠 것을 문서로 요구받고도 사람의 통행에 불편을 주는 굴뚝·물받이·하수도·냉난방장치·환풍장치 등을 고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
31. (정신병자 감호 소홀) 위험한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정신병자를 돌볼 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를 제대로 돌보지 아니하여 집 밖이나 감호시설 밖으로 나돌아 다니게 한 사람
32. (위해동물 관리소홀) 사람이나 가축에 해를 끼치는 버릇이 있는 개 그 밖의 동물을 함부로 풀어 놓거나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여 나돌아 다니게 한 사람
33. (동물 등에 의한 행패 등) 소나 말을 놀라게 하여 달아나게 하거나 개 그 밖의 동물을 시켜 사람이나 가축에 달려들게 한 사람
34. (무단소등) 여러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켜놓은 등불

이나 다른 사람 또는 단체가 표시가 되기 위하여 켜놓은 등불을 함부로 끈사람

35. (공중도로 안전 관리소홀) 여러 사람이 다니는 곳에서의 위험한 사고의 발생을 막을 의무가 있는 사람이 등불을 켜놓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예방조치를 게을리 한 사람
36. (공무원 원조불응) 눈·비·바람·해일·지진 등으로 인한 재해 또는 화재·교통사고·범죄 그 밖의 급작스러운 사고가 발생한 때에 그 곳에 있으면서도 정당한 이유없이 관계공무원 또는 이를 돕는 사람의 현장출입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공무원이 도움을 청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37. (성명 등의 허위기재) 성명·주민등록번호·본적·주소·직업 등을 거짓으로 꾸며대고 배나 비행기를 탄 사람
38. (전당포장부 등 허위기재) 물건을 전당잡히거나 고물을 사고 팔거나 바꾸는데 있어서 영업자의 장부에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직업 등을 거짓으로 알려 써넣게 한 사람
39. (미신요법) 근거없이 신기하고 용한 약방문인 것처럼 내세우거나 그 밖의 미신의 방법으로 병을 진찰·치료·예방한다고 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홀리게 한 사람
40. (야간통행 제한위반) 전차·사면·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회에 위험한 일이 생길 우려가 있을 경우에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야간통행 제한을 위반한 사람
41. (과다노출) 여러사람의 눈에 띄이는 곳에서 함부로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속까지 들여다 보이는 옷을 입거나 또는 가려야 할 곳을 내어 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
42. (지문채취 불응) 범죄의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에 대하여 경찰공무원이나 검사가 지문조사 외의 다른 방법으로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없어 지문을 채취하려고 할 때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한 사람(1988. 12. 31 본호 개정)
43. (자릿세징수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쓸 수 있도록 개방

된 시설 또는 장소에서 좌석이나 차 세워둘 자리를 잡아주
기로 하거나 잡아주면서 돈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이를 위하
여 다른 사람을 귀찮게 따라다니는 사람

44. 삭제(1988. 12. 31)

45. 삭제(1988. 12. 31)

46. (비밀춤교습 및 장소제공) 공연하지 아니한 곳에서 다른 사
람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춤을 가르치거나 그 장소를 사용하
도록 한 사람

47. (암표매매) 흥행장·경기장·역·나루터 또는 정류장 그 밖
의 정해진 요금을 받고 입장권·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

48. (새치기) 흥행장·경기장·역·나루터 또는 정류장 그 밖의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곳에서 승차·승선 또는 입장하거나 표
를 사기 위하여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을 때에 새치기 하거
나 떠밀거나 하여 그 줄의 질서를 어지럽힌 사람

49. (무단출입) 출입 금지된 구역이나 시설 또는 장소에 정당한
이유없이 들어간 사람

50. (총포 등 조작장난) 여러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상
당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고 총포나 화약류 그 밖의 폭발의
우려가 있는 물건을 다루거나 이를 가지고 장난한 사람

51.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 영업용 차 또는 배 등을 타거나 다
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없이 제값을 치르
지 아니한 사람

52. (뺨 등 진열행위)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뺨
이나 끔찍한 벌레 등을 팔거나 또는 팔기 위하여 늘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준 사람

53. (장난전화 등) 정당한 이유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화 또는
편지를 여러차례 되풀이하여 괴롭힌 사람

54. (금연장소에서의 흡연)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표시된 곳
에서 담배를 피운 사람

제 2 조(형의 면제와 병과) 제 1 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람을 벌함에

있어서는 그 사정과 형편을 헤아려서 그 형을 면제하거나 또는 구류와 과료를 함께 과할 수 있다.

제 3 조(교사·방조) 제 1 조의 죄를 범하도록 시키거나 도와준 사람은 죄를 범한 사람에 준하여 벌한다.

제 4 조(납용금지)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는 국민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 법을 함부로 적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2 장 경범죄처벌의 특례

제 5 조(정의) ① 이 장에서 “범칙행위”라 함은 제 1 조 제15호·제 16호·제17호·제20호·제22호·제24호·제25호·제28호·제29호·제30호·제32호·제34호·제35호·제35호·제38호·제39호·제40호·제48호·제49호·제52호 또는 제54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988. 12. 31 본항 개정)

② 이 장에서 “범칙자”라 함은 범칙행위를 행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1. 범칙행위를 상습적으로 행하는 사람
2. 죄를 범한 동기나 수단 및 결과를 헤아려 구류처분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3. 피해자가 있는 행위를 한 사람
4. 18세미만인 사람

③ 이 장에서 “범칙금”이라 함은 범칙자가 제 6 조의 규정에 의한 통고처분에 의하여 국고에 납부하여야 할 금전을 말한다.

제 6 조(통고처분) ① 경찰서장은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이유를 명백히 나타낸 서면으로 범칙금을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삶에 대하여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통고처분서 받기를 거부한 사람

2. 주거 또는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한 사람
 3. 그 밖에 통고처분 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람
- 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고할 범칙금의 액수는 범칙행위의 종류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7 조(범칙금의 납부) ① 제 6 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고처분서를 받은 사람은 그 통고처분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주거지 외의 서울특별시·직할시·도에서 통고처분서를 받은 사람은 10일 이내)에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국고은행, 그 지점이나 대리점 또는 우체국에 범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일로 말미암아 그 기간 내에 범칙금을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득이한 일이 없어지게 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91. 5. 31)

- 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받지 아니한다.

제 8 조(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의 처리) 경찰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지체없이 즉결심판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1. 제 6 조 제 1 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
2. 제 7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간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

부칙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88. 12. 31)

-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 (다른 법률의 개정) 〈해당법률에 정리〉

개 요

민주 사회는 시민 자신이 그들에게 중요한 문제에 대해 스스로 결정하고, 그 결정을 지키며, 그 결과에 대해 책임지는 사회이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바른 시민이 되려면 장래에 그들이 당면할 문제들 중에서 중요한 문제를 가려낼 수 있는 안목을 기르고, 그러한 문제들을 현명하게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우리는 매 순간마다 무엇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그 중에는 사적인 문제도 있고 공적인 문제도 있다. 시민으로서의 결정의 문제는 공적인 부분에 관한 것으로 여기에서는 이러한 사적인 문제와 공적인 문제를 구별하고, 공적인 문제를 분석해보며, 합리적인 결정을 해 본다.

활동목표

게임을 통해 공적인 문제와 사적인 문제, 사실주장과 의견을 구분해 보고, 가치 갈등 상황의 당사자가 되는 역할극을 통해 공적인 문제에 대한 판단력을 길러보도록 한다.

활동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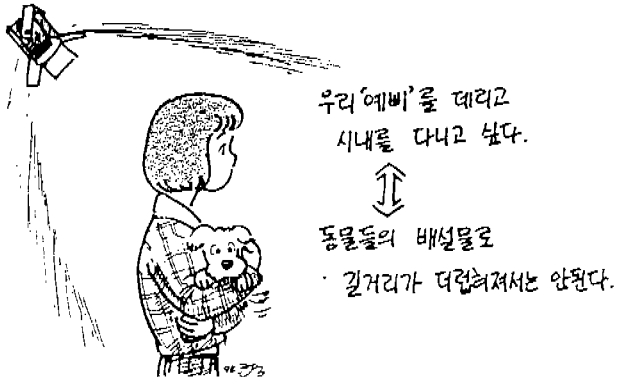
▷ 공적문제와 사적문제 구분게임을 한다.



▷ 사실과 의견 구분게임을 한다.



▷ 가치선택 역할극을 꾸며 본다.



활동내용

과정 1 공과 사 구분하기

- 참여자들은 2명씩 짝을 정하고, 마주 앉는다.
- 먼저 2명씩 짝을 이룬 각 모둠들은 각각 생각하고 싶은 주제를 하나 정한다.
- 정해진 주제를 가지고 한명은 그와 관련된 공적인 사안을, 다른 한명은 사적인 사안을 이야기한다. 이때 이야기하는 순서는 ‘가위 바위보’로 정한다.
- 상대방의 대답이 막히면 미리 정해 놓은 벌칙을 부과한다.
- 몇가지 주제에 대해 공사구분 게임을 하고 나면, 모둠별 대항을 벌인다.
- 게임이 끝나면 각 모둠은 몇가지 주제를 정해 공사 구분표를 만든다.

〈공사구분표 예시〉

주제	공적인 일	사적인 일
건강	• 생수판매를 법적으로 허용할 것인가? • 세관에서의 보건검역을 강화할 것인가?	• 생수를 먹을까, 보리차를 끓여 먹을까? • 콜레라 예방주사를 맞을 것인가?
취미	• 거리에서의 애완동물 배설행위를 단속할 것인가? • 공공체육시설의 입장료를 얼마를 받을 것인가?	• 개를 기를 것인가, 고양이 기를 것인가? • 주말에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할 것인가?

과정 2 사실주장과 의견 구분하기

- 활동장소에 커다란 동그라미와 네모를 그려 놓고, 동그라미에는

사실주장, 네모에는 의견이라고 큰 글씨로 적어 놓는다.

- 지도자가 참여자들에게 일정한 주장을 이야기 해주면, 참여자들은 자신의 판단에 따라 그 주장이 사실주장이라 생각되면 동그라미 칸으로 들어 가고, 의견이라고 생각되면 네모칸으로 들어간다.
- 틀린 사람들은 옆에서 구경하도록 하고, 맞힌 사람들에게만 다시 질문을 해 게임을 계속해 나간다.
- 마지막 한 사람이 남을 때까지 계속하여 그 사람에게 상품을 주거나 장기자랑의 기회를 준다.

〈사실주장과 의견 구분표 예시〉

사실주장	의견
• 청소년범죄자는 성인범죄자와 따로 수용하고 있다 • 우리나라 사람은 시민의식이 성숙되어 기초질서 위반자가 매우 적다 • 한국 학생들은 입시준비에 매달려 여가를 즐길 시간이 없다 • 홍길동은 어제 집에 늦게 들어가 아버지로 부터 무척 꾸중을 들었다	• 청소년은 아직 성장단계에 있으므로 청소년범죄자는 가볍게 처벌해야 한다 • 우리나라 사람은 시민의식이 부족한 것이 문제이다 • 학생들이 전인적으로 성장하려면 충분한 여가시간이 있어야 한다 • 청소년이 밤늦게 돌아다니면 부모님에게 꾸중을 들어 마땅하다

과정 3 가치선택 역할극

- 지도자는 가치갈등 상황을 제시하고, 그 상황에 대하여 참여자가 의견을 주장하도록 한다.
- 먼저 가치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공적인 문제를 제시하고 그에

대한 의견을 주장하도록 한다.

- 가치선택을 위한 토론이 무르익으면, 다시 새로운 사안으로 이번에는 사례를 중심으로 가치갈등 상황을 제시하고, 참여자에게 그 사례의 등장인물의 입장이 되어 의견주장을 하도록 함으로써 역할극을 꾸며 본다.

유의사항

- ▷ 여기에서는 시민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가지 가치갈등 상황에 직면했을 때 합리적으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결정력을 길러주는 데 중점을 둔다.

참 고

공적인 문제의 결정

□ 공적인 문제 예시문

- 수입이 많을수록 세율을 올리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 우리는 될 수 있는대로 한국 농산물을 많이 소비해야 하는가?
- 교통 법규를 자주 위반하는 운전 기사들에게는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좋은가?
- 새로운 기술을 개발했으나, 이를 제품화할 수 있는 자본이 없는 기업주에게 은행은 신용 대출을 해 주어야 하는가?
- 만약, 땅값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동네마다 대부분의 주민들이 자기네 동네에 장애인 복지시설을 신축하는 것을 반대할 경우, 정부는 그러한 복지시설의 신축을 단념해야 하는가?
- 폐수의 방류로 강물을 오염시킨 회사에 대하여, 그 오염된 물을 정화시키는 데 드는 비용을 지불하도록 해야 하는가?
- 정부는 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를 30명 이하로 줄이는 데에 재정의 사용의 우선 순위를 둘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길을 넓히는 데에 우선할 것인가?
- 어떤 법이, 비록 개인적으로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더라도 우리는 그 법을 준수하여야 하는가?
- 정부는 시민의 건강을 위하여 공공 장소에서는 금연 구역을 넓혀야 하는가?

- 정부는 시민의 전화를 엿듣거나 우편물을 검열할 수 있는가?

□ 사실적 주장의 조회 준거

- 목격자는 정확하고 타당하게 관찰하는 훈련이나 경험을 한 적이 있는가?
- 관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편견을 지니고 있는가?
- 관찰을 방해하거나 다른 영향을 줄 수 있는 감정 상태였는가?
- 목격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정확하게 보고 들은 사람인가?
- 목격자와 같은 편견을 지니지 않았으며, 목격자와 토론을 벌이지도 않았던 제3자가 목격자의 관찰과 일치하고 있는가?
- 보도하는 사람은 목격자인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목격자의 진술에 근거하여 보도하고 있는가?
- 만약, 목격자가 아니라면, 누구의 관찰에 입각하여 보도하였는가? 그리고 보도 근거는 믿을 만한 것인가?
- 보도하는 사람과 목격자가 일치하지 않을 때, 그 보도된 내용은 목격자로부터 직접 입수한 정보인가?
- 사건 발생 후 얼마나 빨리 보도가 이루어졌는가?
- 보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편견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 제3의 보도내용과 일치하고 있는가?
- 보도에 인용된 사람들은 그들이 목격한 내용을 신뢰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들인가?
- 당시의 인지구조와 감정체계, 그리고 편견 등이 보도의 내용을 해석하는데 영향을 끼치지 않았는가?
- 추론에 근거하여 주장이 이루어지고 있을 경우, 추론에 전제된 가정의 정확성 여부가 확인되었는가?

□ 공적인 문제와 가치갈등 사례

어느 읍 지역에서 읍을 가로 질러 통과하는 도로의 교통이 날로 혼잡하여, 기존 도로 외에 새로운 우회 도로를 건설하자는 의견이 심각하게 제기되었다. 그래서 주민들은 새 우회도로를 낼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막상 이 문제를 토론해 보았더

나, 도로 건설을 지지하는 주민과 반대하는 주민들로 갈라지게 되었다.

도로 건설을 지지하는 주민들의 의견은, 우회도로를 낼 경우에는 읍내 교통 소통이 원활해 지고, 교통 사고의 위험도 줄어 들어 읍 주민들의 생활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할 뿐만 아니라, 이 지역 생산품을 타 지역으로 신속히 수송할 수 있고, 또 이 지역을 통과하는 외부 차량들에게도 신속한 소통을 도와 줌으로써 국가 전체적으로 교통 체증 문제 해결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대하는 측은, 대부분이 우회 도로 예정 지역에 대대로 물려 받은 토지를 가지고있는 사람들이거나, 현재 읍내 도로변의 상점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토지 주인들은 새 길을 내기 위해서 조상 대대로 물려 받은 토지를 팔 수 없다는 것이고, 시내 상점 주인들은 우회 도로를 내 보았자 타 지역 통과 차량들이 그대로 지나쳐 버리면 그들의 영업에 도움이 될 일이 별로 없다는 것이었다.

*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 민주사회 민주시민, 1993.

참여하는 민주 시민

개 요

바른 시민으로서 적극적인 생활을 하려면 무엇보다도 정치적인 참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민으로서 정치에 참여하는 방법에는 두가지가 있다. 하나는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등 대표자를 선출하는 선거에 참여하는 방법이다. 또 하나는 공공기관의 정책결정에 시민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발언하거나 대화와 토론을 통해 공론을 형성하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선거, 회의, 시민운동 등의 활동을 통해 민주적인 절차를 체험해 봄으로써 바른 시민생활을 실행해 본다.

활동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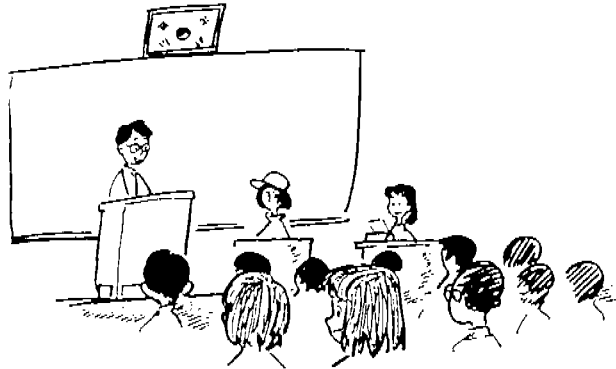
선거를 통해 청소년활동 대표자를 뽑아 보고, 대화와 토론을 통해 공론을 형성하는 회의를 진행해 보며, 회의를 통해 결정된 청소년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민운동을 전개해 보도록 한다.

활동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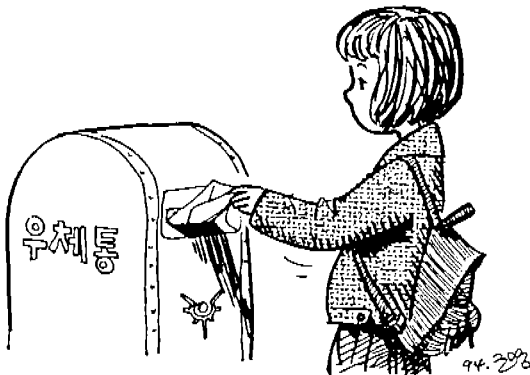
- ▷ 선거를 통해 청소년 대표자를 뽑는다.



- ▷ 대표자는 청소년회의를 진행한다.



- ▷ 회의의 의결내용으로 시민운동을 전개한다.



활동내용

과정 1 청소년활동 대표자 선거

- 청소년활동 참여자 중에서 그들의 대표를 뽑기 위하여 먼저 참여자들의 추천과 거수를 통해 선거에 출마하지 않을 사람으로 참여자 20명 : 선거관리위원 1명 정도의 비율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과 후보자 등록상황, 당선인을 공고하고, 투표자 명부를 작성하며, 후보자 등록과 선거운동 관리, 투표용지 작성, 개표관리 등의 일을 맡는다.
- 선거일을 공고하고 나면 투표자 명부와 투표용지를 작성하고, 후보자 등록을 받는다. 후보자는 일정 인원의 추천을 받도록 한다.
- 후보자 등록이 끝나고 선거를 실시할 때까지 후보자들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운동의 방법은 먼저 기간중 1회의 합동소견 발표회를 갖고, 선거운동원을 동원해 수시로 개인소견 발표를 가지며, 정해진 매수의 선전벽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 볼이도록 한다.
- 선거일이 되면 1인1표의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한 직접선거로 대표자를 뽑는다. 투표방법은 투표용지에 선거인이 선택한 후보자란에 ○표를 하도록 한다.
- 미리 별도의 개표장소를 준비하여 개표는 투표가 끝나자마자 실시한다. 개표의 진행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이 담당하고, 후보자마다 1명씩 개표참관인을 선정해 참석하도록 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가 끝나면 결과를 발표하고, 당선인을 공고한다.

과정 2 청소년회의

- 선출된 청소년활동 대표자가 의장이 되어 청소년활동을 함에 있어 당면한 문제를 안건으로 하여 청소년회의를 진행한다.
- 의사봉, 회의진행순서, 회의록, 필기도구, 참석자가 많을 경우 마이크 등을 준비하고, 회의 참석자에게 회의 날짜, 시간, 장소 및

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미리 통지한다.

- 개회 시간이 되면, 다음과 같이 회의 진행을 한다.

〈회의진행순서〉

- 의장은 “지금으로부터 제1회 청소년회의를 시작합니다”라고 개회선언을 한다.
- 국민의례를 위해 의장은 “회의장에 계신 분들은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한 후 모두 일어서면 “국기에 대하여 경례”라고 구령한다. 국민의례가 끝나면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한다.
- 의장은 회의중에 자기의견을 발표할 수 없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인사를 한다. 이때 자신이 바라는 회의의 운영 방향을 말할 수 있다.
- 의장은 회의에서 처리할 의안을 상정하고, 안건 제안자는 제안설명을 한다.
- 회원들은 질의 응답을 하고, 찬반 토론을 한 후, 표결에 붙인다.
- 표결 결과를 발표하고, 회원들로부터 회의시간을 연장하자는 동의를 없으면 의장은 폐회를 선포한다.

〈표결방법〉

- 표결방법에는 이의 유무를 묻는 방법과 거수, 기립, 투표 등이 있다. 이의 유무를 묻는 방법은 의제가 간단할 때 택하는 것으로 참석자 전원이 찬성할 때 채택하는 약식 표결 방법이다. 의장은 회원에게 “이의 없습니까”라고 물어 본 후 이의 없으면 가결을 선포한다. 거수는 찬성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을 각각 거수하도록 하게 하여 가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기립은 일어서서 찬성과 반대를 표시하는 것이다. 투표에는 기명 투표와 무기명 투표 방식이 있는데, 기명 투표는 투표용지에 자신의 이름을 적고 찬반의 의사 표시를 하는 것이고, 무기명 투표는 찬반표시만 하는 것이다.

- 표결의 순서는 제일 나중에 나온 수정안부터 표결한다. 원안과 차이가 많은 수정안부터 표결한다. 여러 안 중에서 서로 공통된 부분부터 표결하여 확정지어 나간다. 한 문제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면 동일한 문제에 대한 다른 수정안과 원안은 표결하지 않는다. 수정안이 모두 부결된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
- 표결을 할 때 가부를 표시하고 난 뒤에는 다시 고칠 수 없으며, 찬반의 의사를 물을 때에는 반드시 찬성부터 물어야 한다.
- 표결 수를 정하는 방법에는 과반수와 특별다수, 종다수에 의한 방법이 있다. 과반수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에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방법이다. 과반수는 2분의 1이 아니라 그보다 1명이라도 많아야 하는 것을 뜻한다. 특별다수는 중요한 안건을 의결할 때 사용되는 것으로 재적 회원의 3분의 2 이상 출석에 출석 회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의결할 수 있다. 종다수는 출석회원 수와 찬성 인원수에 관계없이 찬반을 비교하여 1명이라도 많은 쪽으로 결정하는 것이다.
- 표결 결과 찬성과 반대가 똑같은 경우, 의장의 표결권 없이 가부 동수인 경우에만 결정권을 행사하는 방법과, 의장도 표결권을 갖되 가부 동수인 경우에 부결로 하는 방법, 의장이 표결권과 결정권 모두를 가지는 방법의 세가지가 있다.

과정 3 청소년의 편지 — 시민운동

- 청소년회의에서 결정된 의견을 공론화할 수 있는 참여방안에 대해 이야기해 본다. 참여의 방법에는 각종 단체에 가입해 의견을 모으는 것, 일간지나 잡지 등에 의견을 투고하기, 정부기관에 편지쓰기, 시민운동단체의 구성과 참여 등 여러가지 방법이 있으나,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방법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의견의 투고나 편지쓰기일 것이다.
- 최근의 일간지나 시사잡지에 게재된 독자의 의견을 모아 읽어 보고,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분석하여 분류한다.

- 분석한 글들을 참고하여 각자 청소년회의에서 결정된 의견을 투고의 형식이나 편지의 형식으로 써본다.
- 지도자는 의결된 안건의 주장이 가장 바르게 표현된 글을 선정하여, 일간지나 시사잡지 등에 투고하거나 관련 정부기관에 보낸다.

유의사항 > 이 활동은 바른 시민생활활동 중에서 적극적인 측면의 실행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특히 정치참여를 실행해 보도록 하려는 것이므로 청소년회의의 안건은 공적인 문제를 선정하도록 한다. 공적인 문제와 사적인 문제의 구별은 앞에 이미 제시된 ‘나의 결정’ 활동을 참고한다.

참 고 선거의 기본원리와 필요한 양식

□ 선거의 기본원리

- 선거란 국민이 대표자를 선출하여 정부를 구성하는 행위로서 국민 주권사상과 기본권사상이 그 바탕이 된다.
- 선거권은 국민이 갖는 기본권의 하나인 참정권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권리인 까닭에 여기에는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자유의 5 원칙이 적용된다.
- 보통선거란 제한선거와 구별되는 선거제도로 사회적 신분이나 재산은 물론, 인종, 신앙, 성별, 교육수준 등과는 관계없이 국민으로서 일정한 연령에 달한 사람이면 원칙적으로 누구에게나 선거권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 평등선거는 차등선거에 반대되는 제도로서 1인1표의 원칙아래 선거인의 투표가치를 평등하게 인정하는 제도이다.
- 직접선거란 간접선거와 대칭되는 선거제도이며 일반 선거인이 대표자를 직접 선거하는 제도이다.
- 비밀선거는 공개선거와 상반되는 선거제도이며 선거인이 누구에게 투표하였는가를 알 수 없도록 그 비밀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 자유선거는 강제선거에 대칭되는 개념으로 선거인이 어떠한 강제나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게하는

선거제도를 말한다.

☐ 선거에 필요한 양식

☒ 선거관리위원 공고양식

공고 제 ○○ 호

위 원 공 고

19 년 월 일 실시하는 선거를 관리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 년 월 일
선거관리위원회 (인)

소속	성명	생년월일	소속모듬	주소	비고

◎ 선거일 공고 양식

선거일 공고

19 년도 청소년 대표자 선거의 일정과 입후보 자격요건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9 년 월 일
위 원 장 인

1. 선거일정

구 분	일 시	장 소	비 고
후보자등록			
합동소견발표회			
선거운동기간			
투표일			
개표일			

2. 후보자등록시 제출서류

가. 후보자 등록신청서 1부

나. 추천장 1부

3. 입후보 자격요건

가. 19 년 월 일 현재 청소년 수련활동 참가 청소년

나. 선거권자 50명 이상 70명 이내의 추천을 받은 청소년

◎ 투표자명부 서식

번 호	성 명	투표용지 수령인	번 호	성 명	투표용지 수령인

◎ 후보자 등록신청서

후보자	성명 : 한글 (한자)
확인자	청소년지도자 (인)

본인은 19 년 월 일 실시하는 청소년 대표자에 입후보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19 년 월 일
위 본인 (인)

덧붙임 : 추천장 1부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 추천장 서식

추 천 장

• 추천후보자

성 명 :

위의 사람을 19 년 월 일 실시하는 19 년도 청소년활동
대표자 선거에 있어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번호	성명	서명	번호	성명	서명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 당선인 공고양식

19 년 월 일 실시한 선거에 있어 다음의 후보자가 당선인으로
결정되었으므로 이를 공고합니다.

19 년 월 일
선거관리위원회 (인)

당선인 인적사항

소	속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비	고

(세)

* 자료 : 한국청소년개발원, 모의지방의회활동, 1993.

회의의 일반원칙과 유의사항

☐ 회의의 일반원칙

◎ 회의 공개의 원칙

- 회의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이는 회의를 공정하게 진행하여 좀 더 좋은 결론을 내기 위함이다.
- 회의를 공개한다고 함은 방청의 자유를 인정하고, 회의 모습이나 기록을 여러 사람이 알 수 있게 하는 것이다.
-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비공개로 할 수도 있다.

◎ 정족수의 원칙

- 회의에서 의안을 심의하고 의결하기 위해, 일정수 이상의 참석자 수가 필요하다. 이를 정족수의 원칙이라 하는데, 정족수에는 의사 정족수와 의결 정족수가 있다.

○ 의사 정족수

- 회의를 개최하는데 필요한 인원수를 의사 정족수라 한다.
- 회의를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일정수 이상의 회원이 참가하여야 한다.
- 우리 나라 국회의 의사정족수는 재적 의원 1/4 이상이며, 영국의 상원은 3인 이상으로 하는 것처럼 회의마다 의사 정족수가 다를 수 있다.

○ 의결 정족수

- 회의에 상정된 의안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인원수를 의결 정족수라고 한다.
- 우리나라의 국회에서는 다른 규정이 없으면,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있다.
- 특별한 의결 정족수의 규정이 있으면, 물론 그에 따라야 한다.

◎ 1의제의 원칙(1동의를 원칙)

- 회의에서는 언제나 한 가지 의제만을 상정시켜 다루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 어떠한 의제이거나 의장이 일단 상정할 것을 선언한 다음에는 이를 토의와 표결로써 결정할 때까지는 다른 의제를 상정시킬 수 없다.
- 둘 이상의 의견이 서로 관계가 있어 동시에 상정시키는 경우라도, 할 때에는 하나씩 안전을 분리하여 표결하여야 한다.

◎ 발언 자유의 원칙

- 발언은 누구에게나 간섭받지 않고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해서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 ‘발언은 자유롭게’라고 해서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 발언을 해서는 안된다.

◎ 폭력 배제의 원칙

- 회의에서는 어떠한 폭력도 금지한다는 원칙이다.
- 폭력은 민주주의의 적이다. 어떠한 경우라도 폭력을 행사해서는 아니되며, 그러한 경우 의장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평등 보장의 원칙

- 모든 회원은 누구나 똑같은 권리와 책임을 갖기 때문에 평등하게 대우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 다수결의 원칙

- 어떤 회의에서 하나의 의안이 의결되기 위해서는 다수결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 소수는 다수의 의사로 결정되면 이에 승복하여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 다수결의 방법에는 절대 다수법과 비교 다수법이 있다.

◎ 소수의견 존중의 원칙

-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소수의 의견도 존중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 소수의 의견이 존중되지 않고 다수의 의견만 존중하면, 다수의 횡포가 생길 수 있다.

◎ 일사 부재의 원칙

- 회의에서 한번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의기간중에 다시 상정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 같은 회의에서 동일한 의제를 반복하여 상정할 수 있게 하면,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고, 회의 질서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 회기 불계속의 원칙

- 어떠한 회의(또는 회기)에 상정되었던 의안이 그 회의가 끝날 때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폐기된다는 원칙이다.
- 우리 나라의 헌법에서는 이와 반대되는 [회기 계속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 한회 한사람 발언의 원칙

- 회의에서는 의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한 사람씩 발언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 의장이 알아둘 일

◎ 의장의 명칭

- 어느 회의에서나 회칙에 따로 정하지 않는 한 회의를 주체하는 사회자를 보통 ‘의장’이라고 부른다
- ‘의장’이란 명칭은 회의를 사회하는 대표자로서 권위를 표시한다.
- 일반 회원들은 회의 중에 반드시 ‘의장’이라고 부르며 그 권위를 존중해야 하나, 의장이 자신을 말할 때에는 ‘사회자’라고 부른다.
- 의장이 회의에 관한 문서에 서명할 때에는 대표의 자격으로 하는 것이므로 ‘의장’이라고 써야한다.

◎ 의장의 책임

- 의장은 회의의 대표자로서 권위를 갖추어야 하고, 회의를 성공적으로 진행시켜야 하는 책임이 있다.
- 의장은 모든 회의 규칙이 잘 지켜지도록 하면서도, 의사 처리를 신속하고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 모든 의안은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되도록 신속하게 처리한다.
 - 모든 회의 규칙과 아울러 필요한 예절을 지킨다.
 - 일반적인 회의 규칙이나 그 회의에서 마련한 여러 규칙에 대하여 잘 알아야 하며, 필요할 때에는 언제나 참고할 수 있는 참고자료를 준비하여 둔다.
 - 회의 도중에는 회원들이 아무리 흥분하더라도 냉정한 태도로 이를 진정시킨다.
 - 부드럽고 여유있게 회의를 진행시키면서, 소심한 회원에게는 용기를 주고 지나치게 발언이 많은 회원은 이를 적절히 억제한다.

◎ 의장의 의무

○ 개회선언

- 의장은 개회 시간 전에 미리 회의장에 출석하여 의사 정족수가 되면 개회를 선언한다.
- 의장은 서기 또는 총무에게 참석 회원수를 확인 보고하게 하여, 정족수에 미달인 경우에는 유회되었음을 선언하고, 정족수가 되면 회의를 진행시킨다.

○ 의장의 자세

- 의장이 큰 회의에서 발언할 때에는 일어서서 하는 것이 좋으나, 회의 규모가 작으면 앉아서 사회해도 좋다.
- 의장은 개회나 폐회 또는 표결 절차를 진행시킬 경우, 그리고 의장이 결정한 사항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어 이에 답변할 경우에는 반드시 일어나서 말한다.

○ 발언권자 지명

- 발언하고자 하는 회원은 의장으로부터 발언 허가를 받은 후, 발언하는 것이 원칙이다.
- 2인 이상이 동시에 발언권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다음과 같은 우선 순위에 따라 발언권을 준다.
 - 상정된 의안 제출자가 아직 발언하지 않았을 경우 그 제안자
 - 한번도 발언하지 않은 회원
 - 토론시 바로 전에 발언한 내용과 반대하는 의견을 가진 듯한 회원
 - 의안에 대한 질의가 끝나고 토론에 들어갔을 때에는 의안에 대한 반대 토론 참가자

○ 의장의 발언

- 의장은 불편 부당해야 하기 때문에 동의를 제안하거나 토론에 참가할 수 없다.
-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시 의장에게 사회권을 넘기고 평회원의 자격으로 사회자의 허가를 얻어 발언해야 하며, 이 경우 우선적으로 발언권이 부여되나, 그 의제가 완전히 처리되기까지는 다시 사회를 할 수 없다.

○ 그 외의 임무

－ 발언 질서 유지－

- 의장은 회의 규칙에 따라 회원들의 발언이 질서있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 발언 내용의 조정－

- 발언자의 발언 방법이 좋지 못할 경우, 의장은 다음과 같이 발언자를 도와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한다.

－ 발언이 너무 길 경우에는 적당한 때에, ‘예, 잘 알겠습니다. 발언의 요지는 이러이러한 것이지요’하는 식으로 부드럽게 내용을 요약해 준다.

－ 발언 내용이 복잡하여 잘 알 수 없을 경우에도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이러이러한 내용이지요’하고 간단히 요약해 준다.

－ 발언 형식이 애매하거나 중요한 내용을 빠뜨린 채 발언이 끝났을 경우에는 발언자를 주의시켜서 이를 보완하도록 한다.

－ 발언 이유

- 발언하지 않고 잠자코 있는 회원에게는 ‘○○○회원, 무슨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실까요’라고 발언할 것을 부드럽게 권하는 것이 좋다.

－ 불편 부당한 위치－

- 감정에 치우친 발언을 할 경우에는 의장은 곧 그 사람에게, ‘토론에 열중하시는 것은 좋습니다만, 다른 회원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말씀은 삼가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주의를 준다.

－ 선언－

- 의장은 개회, 폐회, 의안 상정, 표결 선언, 표결 결과 발표 등을 할 때에는 일어서서 모든 회원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한다.

－ 의제의 요점 파악－

- 토론이 오랫동안 계속되어 그 요점을 알기 어려울 때 의장은, ‘지금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는데, 이를 종합 정리한다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고 그 요점을 정리해 준다.

－ 이의 유무 확인 방법 이용－

- 의안마다 복잡한 찬반 표결을 하기보다는, 이의 유무 확인 방법을 잘 이용하여, 큰 이의가 없으면 자연스럽게 결정해 나감으로써 회의의 능률을 올린다.
- 의장의 직권
 - 동의를 재청을 받아서 의안으로 성립되면, 반드시 심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다음과 같은 동의는 이를 기각할 수 있다.
 - 동의의 내용이 회의의 목적이나 회칙 및 국법에 어긋나는 경우
 - 회의 진행 규칙상 우선 순위가 아닌 동의가 제출되었을 경우
- 발언 중지
 - 의장은 의제에서 벗어난 발언, 회의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발언, 발언권을 얻지 않고 하는 발언은 중지시킬 수 있다.
 - 회의 질서가 어지러우면 이를 바로잡을 때까지, 의장은 회원의 발언을 중지시킬 수 있다.
- 회의 진행 방해자의 퇴장 조치
 - 의장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회의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회의장을 소란하게 하는 회원이 있을 때에, 의장은 그 회원에게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정회 또는 폐회 선언
 - 회의장이 대단히 혼란하여 합리적 방법으로는 도저히 이를 진정시킬 수 없을 때에 의장은 부득이한 조치로서 정회 또는 폐회를 선언할 수 있다.
 - 의장의 폐회 선언 후, 어떤 결의가 있어도 이는 당연히 무효이다.
- 의사 정족수의 관리
 - 회의 진행중 의사 정족수가 부족할 때에는, 의장은 회의의 정회 또는 산회나 폐회를 선포한다.
 - 의사 정족수가 미달일 경우라도 다음 동의들은 처리할 수 있다.
 - 정회 또는 폐회 동의
 - 다음 회의의 일시와 장소를 결정하는 동의
- 가부 동수 결정권
 - 의장은 표결에 참가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나, 무기명 투표나 호명 표결 이외의 경우에는 표결에 참가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 의장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부 동수가 되었을 경우에는 의장 자신이 표결권을 행사하여 가부를 결정할 수 있으나, 일단 표결에 참가하여 가부 동수가 된 경우에는 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다.
- 결정권의 행사 여부는 의장 자신의 판단에 따른다.

□ 회원이 알아 둘 일

◎ 회원의 기본 태도

- 회원은 단체의 목적과 활동 내용을 이해하고, 단체의 정관 및 규칙과 민주적 회의의 진행 규칙을 알아야 한다.
- 자기의 의견을 분명하게 발표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하며, 자기의 발언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 어떤 의안에 대해서나 명확한 판단과 분명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

◎ 회원의 권리

- 회의를 구성하는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 동의 제출권
 - 토론 발언권
 - 결정 참여권

◎ 회원의 발언요령

○ 발언할 때 주의할 점

- ‘발언의 자유’라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침해 받지 않는 민주 회의의 기본 원칙이나 회의 질서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한을 받는다.
 - 회원이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회원의 발언 중에 발언하여서는 안된다.
 - 특별한 규칙이나 제한이 없는 한 같은 의제에 대하여 한 회원이 여러번 하거나, 발언 시간이 너무 긴 것은 좋지 않다.
- 우리 나라 국회에서는 동일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고, 발언 시간은 30분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러나 의사 진행

발언 등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고, 정당을 대표하는 발언 등은 40분까지 발언할 수 있다.

- ‘로버트식 회의법’에는, 한 동의에서 두 번까지 발언할 수 있으며, 한 번의 발언은 10분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다.

○ 제안 설명을 할 때의 요령

- 제안자가 의안에 대한 설명을 함으로써, 회원들의 지지를 얻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다음 요령에 따라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 제출한 의안이, 무엇을 어떻게 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목적을 분명히 인식시킨다.
- 현재의 불합리한 점을 제시하면서, 새 의안을 제출하게 된 동기를 설명한다.
- 자기의 제안이 채택·실행되면, 어떤 점이 어떻게 개선되리라고 예상하는 결과를 설명한다.
- 제출한 의안이 가지고 있는 단점과 이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까지 설명한다.

○ 의견을 발표할 때의 요령

- 의견을 발표할 때에는 먼저 결론을 말하고, 다음에 그 이유를 조목별로 말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즉 ‘나는 지금 제안에 반대합니다. 이유는 첫째로 ...때문이고, 둘째로는 ...때문이며, 셋째로는 ...한 까닭입니다’하는 것이 좋다. 함양하는 데 중점을 둔다.
- 발언자는 참석한 회원 전체에 대해서 발언하는 것이나, 항상 의장을 향해서 발언해야 한다.
- 남의 발언 내용에 유의하면서 요점을 잘 파악하며 들어야 한다.
- 메모를 하면서 남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 내용 파악이 쉽고, 본인이 발언할 때도 실수없이 말할 수 있다.
- 회원은 회의에서 심의될 의제에 대하여 미리 연구하는 것이 좋다.
- 회원은 자기 의견에 신념을 가지고 발언해야 하나, 반대 입장도 충분히 이해하여 줄 수 있는 아량이 있어야 한다.
- 반대 발언하는 회원이나 이를 듣는 회원은 서로 감정을 억제하

면서 감정적인 말을 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회의에서의 예의

- 모든 회원은 의장에 대하여 경의를 표시하여야 하고, 회원들끼리는 서로 존중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과 같은 예절을 지켜야 한다.

－서로 경어를 쓴다.

－남에게 실례가 되는 말이나 행동을 삼가한다.

－남의 사생활에 관하여는 말하지 않는다.

－남의 발언 중에 발언하지 않는다.

－발언 도중에 이의가 나오면, 의장의 사회에 따른다.

－너무 긴 시간 발언하지 않고, 자주 발언하지 않는다.

*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 민주사회 민주시민, 1990.

우 리 는 세 계 시 민

개 요

현대 사회는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인하여 세계를 하나의 지구촌으로 만들어 놓았고, 미래에는 세계가 하나라는 인식이 더욱 강해지게 될 것이다. 미래 사회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이 이러한 세계화의 추세에 발맞추어 나가려면 먼저 모든 인간이 더불어 살아야 한다는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국내에서조차 지역간의 화합이 이루어 지지 않고, 또 남북이 갈라져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세계시민으로서의 적극적인 자질을 쌓을 수 있도록 지역간의 갈등 해소방안을 찾아보고, 통일을 대비하며, 세계 각국의 시민들이 어떠한 생활을 하는지 살펴본다.

활동목표

우리나라 각 지방의 지역적 특성을 게임을 통해 알아보고, 남북간의 언어의 차이를 퀴즈를 통해 알아보며, 외국의 시민생활을 살펴봄으로써 지역간 국가간의 벽을 허물고 세계시민의 자질을 쌓도록 한다.

활동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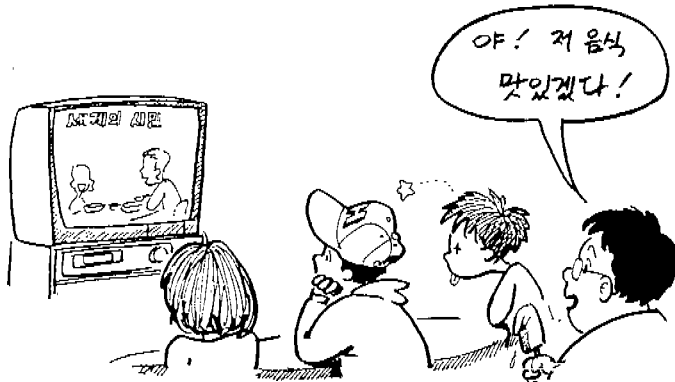
▷ 각 지방의 차이를 수용한다.



▷ 남북한 동질성 회복을 위해 노력한다.



▷ 세계 각국의 시민생활을 살펴 본다.



활동내용

과정 1 지역간의 차이 이해하기

- 참여자를 10명 이내의 소집단으로 나누어 모둠을 구성하고, 모둠별로 주제를 정해 우리나라 각 지방의 특징을 조사한다. 주제를 예를 들면, 민요, 방언, 음식, 놀이, 지형, 기후 등 다양하게 선정할 수 있다.
- 모둠별로 조사한 내용을 발표하고, 복사하여 돌려 본다.
- 참여자를 우리나라 각 지방의 숫자에 맞게 집단을 구분한 후, 각 모둠별로 지방을 정한다.
- 지도자가 한가지 주제를 정해 놓고, 각 모둠의 정해진 지방을 지적하여 그 모둠이 맡은 지방의 특징을 표현하도록 한다. 예를 들면, 음식을 주제로 정한 경우, 함경도를 지목하면 함경도 지방의 특징적인 음식과 조리법을 설명하고, 민요를 주제로 정한 경우, 전라도를 지목하면 전라도 민요를 부르는 것이다.
- 게임을 반복하면서 자연스럽게 다른 지역의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여 수용하는 자세를 기른다.

과정 2 북한말 알아맞추기

- 남한과 북한간의 이질화를 극복하는 하나의 방안으로 언어의 동질감을 형성하기 위하여 우리와는 다른 북한말을 알아맞추는 퀴즈를 한다.
- 지도자는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북한에서만 사용하는 단어를 조사하여 16절지 크기의 도화지에 한 단어씩 큰 글씨로 적어 놓는다.
- 참여자들은 2명씩 모둠을 지어 퀴즈에 도전하는 순번을 정한다.
- 각 모둠은 순서대로 나와 마주 앉고, 지도자가 한명에게만 보이도록 단어장을 한장씩 보여 주면 앞의 짝에게 이를 설명하고 알아맞추도록 유도한다.

- 시간은 1분으로 제한하고, 제한 시간동안 가장 많이 맞춘 모듬에게 상품을 수여하거나 장기자랑의 기회를 준다.

과정 3 세계시민의 생활 알아보기

- 외국의 시민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떻게 바른 시민생활을 실천하고 있는지 알아 본다.
- 알아 보는 방법은 외국에 나가 직접 그들의 생활상을 살펴 보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하겠지만, 여건이 안될 때는 그들의 생활을 담은 비디오를 이용한다.
- 세계 각국의 바른 시민생활을 담은 비디오를 구해 참여자들이 관람하도록 상영한다.
- 비디오를 보고 나서, 느낀 점과 본 받아야 할 점을 돌아가면서 이야기한다.
- 우리의 청소년들이 갖춰야 할 세계시민으로서의 자세에 대해 이야기하고, 결의를 다짐한다.

〈비디오 소개 - 세계의 시민〉

- 제목 : 낙농부국의 작은 시민들
- 제작년도 : 1992년
- 상영시간 : 60분
- 제작처 및 판매처 : MBC
- 내용 : 전통 농업국인 덴마크의 전형적인 농부인 올레 가족의 겸소한 생활, 국민소양 교육기관인 국민대학의 학장인 코브거씨를 통해 건전한 시민육성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며 헬렘즈 가족의 성실한 가정생활과 건강한 휴일 보내기 등을 조명하고 있다.

* 자료 : MBC, 프로그램 가이드, 1994.

유의사항

▷여기에서는 적극적인 바른 시민이 되기위한 세계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는 데 중점을 둔다.

참 고 북한의 언어

□ 남북한 주요 일상용어 비교

남	북	남	북	남	북
가발	덧머리	배수로	뺨물길	재생	되살이
각선미	다리매	보색	맞색	전경	온경치
감미료	단맛감	불펜	알촉	중간	사이
건조	마르기	분무기	뿌무개	추수	가을걷이
겨울	동살	브레이어	가슴띠	출입문	나들문
냉장차	얼굴차	샤워실	물맞이칸	충혈	피모음
노크	손기척	소음	쉬쉬소리	카라멜	기름사탕
농경지	부침	스파이크	못신	탈의실	옷벗는 칸
도넛	가락지빵	암송	따로외우기	투피스	동강옷
도시락	점심곽	에피소드	결애기	플래카드	친구호
레코드	소리판	오페라	노래이야기	피크닉	들모임
로션	살결물	왜곡	이그러짐	해열제	열내림약
매스게임	집단체조	운동화	형겔구두	허사	헛일
머큐로크롬	빨간약	운행표	다님표	헤드라이트	앞등
미풍	가는바람	원가	본값	호크	맞단추
반복	되풀이	육류	고기불이	홍수	큰물
일식	해가림	환기	공기같이		

□ 재미있는 북한의 이름들

- 사람 이름 : 별, 심, 솔, 불, 귀엽, 기둥, 기쁨, 곰실, 길남, 달님,
한결, 하늘, 한빛, 자람, 즐길, 세울, 세찬, 억셀이, 이뿐이, 다시
내, 두송이, 빛나리, 새구슬, 나루길 등.

- 기관이름 : 경상 단물집, 보통강 종이 공장, 평양 남새(채소) 공장, 외성 밥공장 등.
- 마을이름 : 긴마을동, 과일동, 새길동, 새날동, 꽃편동, 런못동 등.

□ 우리나라 소설, 북한 소설, 연변 조선족 소설 비교

◎ 우리나라 소설

석공은 발길을 돌렸습니다.

이번에는 산여울길을 버리고 솔밭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바람이 솔잎 사이를 지나면서 석공의 여윈 얼굴에 이슬을 뿌렸습니다.

산허리에 있는 억새풀이 석공의 키를 넘었습니다. 그 억새풀들이 석공의 손등을 그어서 상처를 내었습니다. 그러나 석공은 아픔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석공이 다시 일터로 돌아왔을 때에는 달도 어지간히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돌꽃이 노란 꽃잎을 오므리고 있는 것을 그는 한참 들여다 보았습니다.

◎ 북한의 소설

화창한 봄날, 한낮이 퍼그나 이운 때다.

쌍룡산 기슭에서 흰 옷을 입은 두 처녀가 옆구리에 바구니를 끼고 앉았다 일어났다 하며 산나물을 뜯고 있었다. 그때마다 길게 따늘린 머리카가 흔들리며 동백기름이라도 바른 것처럼 저녁 햇빛에 유난히 반짝이고 무명치마가 바람을 안고 확 부풀었다가는 다시 바로 잡히곤 하였다.

그들이 땅바닥을 이리저리 살피며 다시 산나물을 살피고 있을 때였다. 갑자기 앞쪽 감나무 숲속에서 무언가가 푸드득 날아올라 날개를 힘겹게 퍼덕이며 건너편 산으로 날아갔다.

두 처녀는 깜짝 놀라 바구니를 떨어뜨리며 그 자리에 주저앉아 두손으로 가슴을 싸쥐고 있다가 <뛰경뛰경>하는 울음소리를 듣자 그제야 안도의 숨을 내쉬며 꿍이 날아가는 쪽을 바라보았다.

<하필 코앞에서 날아갈진 뭐람! 사람을 놀래우면서>

이렇게 말한 처녀는 대장간집 한창진의 딸 언년이였다.
 〈야, 크기두 하다. 어찌나 살이 쪼는지 겨우 날아가네. 저걸 한 마리만 잡아다 아버지한테 대접했으면〉
 이렇게 말한 처녀는 술매였다.

술매는 요즘 오래간만에 온 아버지에게 별식을 대접 못하는 안타까움때문에 이래저래 속을 쓰고 있었다. 그래서 산나물을 뜯어다 생채도 만들고 국도 끓여 대접하느라고 언년이와 함께 산에 올라 산나물을 뜯고 있었던 것이다.

— 「조선의 아들」(김정호의 일생을 그린 소설)에서

◎ 연변 조선족 소설

첫날 색시의 일شم씨를 구경하느라고 그랬던지, 아니면 첫손으로 지은 밥을 맛보느라고 그랬던지, 이튿날 아침 진지를 새색시가 짓는 것은 조선족이 재래로 내려온 습관이였다. 놀군보다 일군을 먼저 퇴운 나를 놓고 보면, 더더구나 때시마다 내손 몰래 지나친 일이 없으니만큼 손끝에서 물방울이 말라본 적 없는 나를 놓고 보면, 그까짓 밥을 하는 것쯤은 대수가 아니었으나 술한 친척들의 눈길이 나를 투시한다고 생각되자 어쩐지 손이 말을 듣지 않았다. 한두 사람의 밥도 아니요, 수십 명의 밥을 지어야 하니 밥이 타거나 서는 것은 여반장인데 어떻게 하면 타지도 않고 설지도 않게, 눅지도 않고 되지도 않게 하겠는가 하는 우려가 가슴 한 구석을 누르고 있었다. 그것도 그럴것이 처음 짓는 밥이 눅으면 각시복을 받지 못하고, 되면 남편복을 받지 못하고, 설면 살림이 궁해지고, 타면 집안이 망한다는 열거지 떨어지 소리를 신조처럼 믿어오는 리씨 가문의 풍속이니 말이다. 하기가 밥이 타거나 되면 여차여차하게 복을 누리고, 눅으면 여차여차하게 자손은 잘 키운다고 왕창같은 좋은 말을 늘어놓으면서 술잔을 기울이기 마련이다. 다시 말하자면 나빠도 좋은 짐조로 돌려대면서 아침을 쓰기 마련이지만 같은 값이면 분홍치마랬다고 어쨌든 첫 밥을 몰 맞게 잘 지어야 했다. 아마 이래서 삼일전까지 색시는 기쁨 절반 시름 절반이라고들 하는 모양이다.

* 자료 : 인천도덕교사모임, 아이들과 함께 하는 도덕수업, 1994.

세계의 시민 비디오목록

- 이빠진 찻잔의 경제학(1992/60분/MBC/판매)
금전등록기 대리점 주인인 슈바베 가족의 실용적이고, 근면한 생활태도와 공학박사의 부인인 슈타크의 검소한 가정생활 및 상대를 존중하는 강한 가족관계를 소개한다.(독일)
- 스위스 타임(1992/60분/MBC/판매)
Rado 시계공장에 근무하는 두 가족의 성실하고 투철한 직업관과 몸에 밴 근면과 절약정신 등을 소개한다.(스위스)
- 집배원 에디의 의원생활(1992/60분/MBC/판매)
뉴햄프셔주의 소읍에서 집배원일을 하는 에디는 임기 3년의 도시행정위원으로도 활약하고 있다. 또 부인은 국민학교의 성적 부진아를 가르치는 보조교사로 일하고 있다. 이들의 가정과 일, 그리고 소읍의 안정된 정치행정을 소개한다.(미국)
- 구두쇠 스코틀랜드인(1992/60분/MBC/판매)
잡화상을 경영하는 수위니 가족과, 무려 5대에 걸쳐 생선가게를 경영하고 있는 커레가족을 통해 영국인들의 노동에 대한 청교도적인 태도를 소개한다.(영국)
- 유대인의 지혜(1992/60분/MBC/판매)
키브츠내에 거주하는 교사, 펄 알톤가족과 변호사 야콥의 가족을 통해 전통과 합리성, 자율을 존중하는 유대인들의 극히 실질적인 생활태도와 자녀교육관을 소개한다.(이스라엘)
- 전기공 구로미와씨의 작은 꿈(1992/60분/MBC/판매)
큐우슈우지방의 소도시 쓰꾸미에서 시멘트공장 전기공으로 일하는 구로미와씨는 이 지방 특산품인 굴 농장도 갖고있다. 노부모를 모시고 열심히 일하며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 있는 구로미와씨. 일본 소도시의 치밀한 자치행정과 지방문화를 소개한다.(일본)

- 이태리의 저력 대가족(1992/60분/MBC/판매)
80이 넘는 노모와 빙모를 함께 모시고 사는 이태리의 전형적인 대가족의 가장 파비오씨의 화목한 가정생활과, 소렌토에서 몇째 가는 부자인 프랑코베베씨의 거리행상에서 시작해 큰 가구점을 내기까지의 근검절약한 태도와 일에 대한 성실 등을 소개한다. (이태리)
- 작은 복은 네 손에 있다.(1992/60분/MBC/판매)
상해 출신으로 홍콩 정착 10년만에, 월세 50만원에서 600만원 짜리 가게로 키우며 억척스레 돈을 모은 후꾸억밍씨 가족과 주부 이자 은행원인 카레차우씨와 그의 남편인 운전기사의 외양보다 실속을 중시하는 맛벌이 부부의 생활 소개.(홍콩).
- 최초의 동양인 감리사 이관영(1992/60분/MBC/판매)
미국에서 교통사고로 하반신 불구직전까지 갈 정도로 불편한 몸의 아시아인으로는 처음으로 감리사직에 올랐으며, 세 자녀를 미국 최고의 명문고교와 대학으로 진학시키며 억척스레 사는 교포 이관영씨. 그가 목사로 재직하던 교회의 청년부 일을 보던 원자력 발전소 엔지니어인 존의 건강한 가정과 직장생활을 소개한다. (미국)
- 낙농부국의 작은 시민들(1992/60분/MBC/판매)
전통농업국인 덴마크의 전형적인 농부인 올레가족의 검소한 생활, 국민소양 교육기관인 국민대학 학장 코브거씨를 통해 건전한 시민육성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며 헬름즈 가족의 성실한 가정생활과 건강한 휴일 보내기 등을 조명.(덴마크)
- GNP 1만달러의 선택(1992/60분/MBC/판매)
부부교사로 안정된 생활을 누리고 있는 위선생의 학교 및 가정생활과 14년 경력의 경찰관 토 경사의 일과 생활을 통해 싱가포르의 공직자상을 살펴본다.(싱가폴)

* 자료 : MBC프로덕션, 프로그램 가이드, 1994.

참 고 문 헌

- 국회사무처(1993), 민의의 전당 국회, 국회사무처.
- 김국진(1987), 고교생의 준법태도에 관한 조사연구,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태곤(1990), 루소의 시민교육론 연구, 서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해성(1994), “시민사회의 도덕원칙으로서 합리적 이기주의와 그 가치-도덕 교육적 함의”,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1993), 청소년 환경수비대 일지, 대한불교청소년교화 연합회.
- 동아출판사(1989), 동아대백과사전, 동아출판사.
- 문용린(1992), 지역사회를 통한 사회의 도덕화, 서울특별시 강남교육청.
- 문용린(1993), “행동의 연습과 체험의 중요성”, 철학과 현실, 1993 가을(통권 제18호), 철학문화연구소.
- 박진상(1990), 우리나라 시민교육을 위한 사회과교육의 역할에 관한 연구, 공주 사범대학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법제처(1990), 대한민국헌행법령집, 법제처.
- 서수원(1991), 민주시민교육과 이상적 시민상의 변천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손봉호(1993), “사회윤리 정립원칙으로서의 합리적 이기주의”, 도산 학술 논총, 제 3 집, 도산 아카데미 연구원.
- 인천도덕교사모임(1994), 아이들과 함께하는 도덕수업, 내일을 여는 책.
- 장웅조(1989), 한국사회의 민주화와 시민교육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제철학원(1990), 바른가정교육, 제철학원.
- 전득주 외(1992), 현대 민주시민 교육론, 평민사.
- 정덕장(1994), 경범죄 처벌법, 법원사.
- 조성수(1990),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시민의식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인화(1992), “법교육과정의 적정성 탐색”,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한국교육개발원(1990), 민주사회 민주시민－학생용, 한국교육개발원.

_____ (1993), 고등학생용 민주시민 교육자료 민주사회 민주시민, 한국교육개발원.

_____ (1993), 고등학생용 민주시민 교육자료 민주사회 민주시민－교사용 지도서, 한국교육개발원.

_____ (1993), 국민학교 민주시민교육자료 우리와 나－1,2학년 교사용 지도서, 한국교육개발원.

_____ (1993), 국민학교 민주시민교육자료 우리와 나－1,2학년용, 한국교육개발원.

_____ (1993), 국민학교 민주시민교육자료 우리와 나－3,4학년 교사용 지도서, 한국교육개발원.

_____ (1993), 국민학교 민주시민교육자료 우리와 나－3,4학년용, 한국교육개발원.

_____ (1993), 국민학교 민주시민교육자료 우리와 나－5,6학년 교사용 지도서, 한국교육개발원.

_____ (1993), 국민학교 민주시민교육자료 우리와 나－5,6학년용, 한국교육개발원.

_____ (1993), 민주적 학생지도 민주적 학교운영,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국민윤리학회(1993), 민주시민을 위한 윤리도덕, 형설출판사.

한국사회학회·한국정치학회(1992), 한국의 국가와 시민사회, 한울.

한국청소년개발원(1993), 모의지방의회활동, 한국청소년개발원.

한국 청소년 연맹(1985), 누리활동 자료, 한국청소년연맹.

_____ (1987), 한별 활동 지도자료, 한국청소년연맹.

_____ (1993), 시청각 자료목록집, 한국청소년연맹.

한국편집기자회(1994), 기자가 본 '94 100대뉴스, 한국편집기자회.

한승석(1991), “사회과 교육의 민주시민성에 관한 지식과 태도의 비교연구”,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황경식(1991), “이기적 불신의 비합리성과 시민공동체의 유대”, 한국의 시민윤리,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

황경식(1993), “사회개혁과 시민의식”, 철학과 현실, 1993 가을(통권 제18호), 철학 문화연구소.

- 허인숙(1987), “시민성 교육으로서 사회과의 합리적 의사결정 향상을 위한 교수 전략”,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웨이시온 외 2인(1992), 김교환외 4인 역, 가치와 사회, 교육과학사.
- Chazen, B.(1985), *Contemporary Approach to Moral Education*, N.Y. : Teachers College Press.
- Baier, K.(1958), *The Moral Point of View : A Rational Basis of Ethics*, Ithaca : Cornell University Press.
- Barry, V.(1983), *Moral Issues in Business*(2nd ed.), California : Wadsworth.
- Blough, G. L. and McClure, C. H.(1946), *Fundamentals of Citizenship*, Laidlaw Brothers Inc.
- Buchanan, J. M.(1965), “Ethical Rules, Expected Values, and Large Numbers”, *Ethics*, Vol.76, No.1.
- Butts, R. F.(1988), *The Morality of Democratic Citizenship : Goals for Civic Education in the Republic’s Third Century*, California : Center for Civic Education.
- Butts, R. F.(1991), “Personal Preface”, *Civitas*, California : Center for Civic Education
- Engle, S. H., Ochoa, A.S.(1988), *Education for Democratic Citizenship*, New York : Teachers College Press.
- Famen, R. F. and Oppenheim, A. N.(1974), *The Measurement of Children’s Civic Attitudes in Different Nations*, Stockholm :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valuation of Educational Achievement(IEA).
- Frankena, W. K.(1973), *Ethics*(2nd ed.), Englewood Cliffs : Prentice-Hall.
- Gauthier, D. P.(1986), *Morals by Agreement*, Oxford University Press. / 김형철 역 (1993), *합의도덕론*, 서울 : 철학과 현실사.
- KBS영상사업단(1994), *비디오가이드*, KBS.
- Kohlberg, L.(1981), “Essays on Moral Development”, *The Philosophy of Moral Development*, Vol. 1, N.Y. : Harper and Row.
- MacIntyre, A.(1984), *After Virtue*, London : Gerald Duckworth & Co. Ltd.
- MBC프로덕션(1994), *프로그램 가이드*, MBC.
- Nawmann, F. M.(1975), *Education for Citizen Action*, Berkeley :

McCutchan Publishig, Co.

- Proctor, R. E.(1988), *Education's Great Amnesia*, Indiana University Press.
- Raths, H. and Simon(1977), *Values and Teaching*, Ohio : Charles E. Merrill.
- Rawls, J. B.(1971), *A Theory of Justice*, Harvard University Press.
- Schutz, A.(ed.),(1975), *Collected Papers II : Studies in Phenomenological Philosophy*, Martinus Nijoff.
- Tilley, J.(1991), "Altruism and the Prisoner's Dilemma", *Australasian Journal of Philosophy*, Vol.69, No.3.
- Toulmin, S. (1989), "The Logic of Moral Reasoning" in James P. Sterba (ed.), *Contemporary Ethics*, Prentice-Hall.
- Warnock, G. (1989), "The Object of Morality" in Louis P. Pojman (ed.), *Ethical Theory*, Wadsworth Publishing Co.